

www.nfsa.go.kr

2017
소방법령 Ⅲ
신임교육과정



중앙소방학교
NATIONAL FIRE SERVICE ACADEMY

2017년 신입교육과정

- | 제1편 위험물 안전관리법
- | 제2편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 제3편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
물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목 차

제1편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장 서 론	3
제1절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제정	4
제2절 위험물안전관리법의 개요	7
제2장 총 칙	15
제1절 목 적	15
제2절 정 의	17
제3절 적용제외	24
제4절 국가의 책무	24
제5절 지정수량미만인 위험물의 저장·취급	25
제6절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	26
제3장 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31
제1절 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등	33
제2절 군용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에 대한 특례	46
제3절 탱크안전성능검사	48
제4절 완공검사	52
제5절 제조소등 설치자의 지위승계	56
제6절 제조소등의 폐지	64
제7절 제조소등 설치허가의 취소와 사용정지 등	67
제8절 과징금 처분	70

목 차

제4장 위험물시설의 안전관리	73
제1절 위험물시설의 유지·관리	74
제2절 위험물안전관리자	75
제3절 탱크시험자의 등록	85
제4절 예방규정	91
제5절 정기점검 및 정기검사	94
제6절 자체소방대	98
제5장 위험물의 운반 등	101
제1절 위험물의 운반	101
제2절 위험물의 운송	102
제6장 감독 및 조치명령	106
제1절 출입·검사 등	106
제2절 위험물 누출 등의 사고 조사	111
제3절 탱크시험자에 대한 명령	112
제4절 무허가장소의 위험물에 대한 조치명령	113
제5절 제조소등에 대한 긴급 사용정지명령 등	114
제6절 저장·취급기준 준수명령 등	115
제7절 응급조치·통보 및 조치명령	116
제7장 보 칙	118
제1절 안전교육	119
제2절 청 문	123

제3절 권한의 위임·위탁	126
제4절 수수료	129
제5절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130
제8장 벌 칙	131
제9장 부 칙	140

제2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장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	151
제1절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의의	151
제2절 다중이용업소관련 소방규제의 변천과정	152
제2장 총 칙	161
제1절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목적	161
제2절 용어의 정의	162
제3장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본계획	167
제1절 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167
제2절 집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170
제4장 허가관청의 통보 등	172
제1절 관련 행정기관의 다중이용업관련사항 통보	172
제2절 다중이용업소 관계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174
제3절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	179

목 차

제5장 다중이용업주의 화재배상 책임보험의 의무가입 등	197
제1절 화재배상책임보험의 의의	199
제2절 주요내용	200
제6장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기반조성	204
제1절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안전관리	204
제2절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위험평가	204
제3절 안전관리기반구축	209
제7장 벌 칙	214
제8장 부 칙	225

제3편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장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	247
제2장 총칙	250
제3장 예방 및 대비	257
제4장 재난대응 및 지원	298
제5장 보칙	304
제6장 벌 칙	307
제7장 부 칙	311

제1편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장 서론

제2장 총칙

제3장 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제4장 위험물시설의 안전관리

제5장 위험물의 운반 등

제6장 감독 및 조치명령

제7장 보칙

제8장 벌칙

제9장 부칙



제 1 장 서 론

이 법은 위험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함을 주목적으로 한다. 위험물이란 일반적인 의미로 본다면 119의 현장대응이 필요한 모든 물질¹⁾ 즉,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 또는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화학물질과 그로부터 파생된 제품으로 특별한 관리나 규제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지만, 이 법에서 말하는 위험물이란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으로 주로 화재와 관련 있는 물품이다. 더 정확히 말하면 화재예방을 위하여²⁾ 특별한 관리가 요구됨에 따라 소방관서의 규제를 받는 물질들이다.

오늘날 사회는 수많은 위험물이 사용되고 그 양과 종류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화재·폭발·중독·환경오염 등 각종 사고의 위험성도 증가하고 있다. 위험물의 특성상 사고가 발생하면 화재진압·인명구조 등 현장 대응에 있어 고난도의 기술이 필요하고, 피해의 규모가 크고 복잡·다양하여 대형재난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으며 원상회복도 쉽지가 않아 오랜 시간과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위험물의 위험성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국가의 근본적인 과제이다³⁾. 「위험물안전관리법」은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제정되었으며, 이를 위해 국민의 자유를 일부 제한하는 다양한 규제를 담고 있다. 이러한 규제의 근거는 국가의 안전·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는 헌법적 근거⁴⁾에 의한 것이므로 이 법을 운용함에 있어서는 규제에 의해 보호되는 공공의

1) 어떠한 구체적 사고를 예상할 수 있는 화학물질에 대해 별도로 미리 정해진 다양한 명칭들이 있다. 예를 들면 위험물, 유해인자, 유해화학물질, 고압가스, 방사성 물질, 폭발물, 화약류, 농약, 마약 등이 있다.

2) 사고대응(화재진압, 인명구조 등)이 아닌 사고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3) 헌법 제34조제6항 ~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익과 제조소등의 관계인의 법익을 비교형량하여 법적용의 일반원칙⁵⁾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제1절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제정

1. 소방법의 분화

위험물안전관리의 모태인 소방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1948년 8년 15일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면서 법률이 아닌 내무부령으로 「소방조사규정」(1950.3.24. 내무부령 제10호)을 제정하여 소방업무의 근간을 두었으나 사회의 발달과 소방수요의 증가로 화재에 관한 체계적인 예방 등에 관심이 고조되어 소방법 제정의 필요성이 대두, 1950년부터 정부에서 「소방법」 초안을 작성하여 1953년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제정할 시기가 이르다고 폐기되었다. 그 후 1958년 3월 11일 법률 제485호로 제정·공포되면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체계적이고 독립적인 「소방법」이 등장하게 되었다.

제정 「소방법」에서는 화재와 관련된 사항 외에도 풍수재·설해에 대한 사항까지 규율하고 있었으나 이후 타 법령의 개정과 업무내용의 변천에 따라 27차례의 개정 과정을 거치면서 변화하였다.

하지만 「소방법」이 제정된 이후로 기본적인 체계에 대한 정비 없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른 개정으로 인하여 체계성이 미흡하고, 소방과 관련된 모든 부분이 하나의 단행법에 모두 규정됨으로 인하여 2003년 5월 29일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의 4개의 법으로 분법되었고, 그 시행일과 관련한 경과규정을 두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토록 하였다.

4) 헌법 제37조제2항 ~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5) 비례의 원칙 혹은 과잉금지의 원칙: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보호하려는 공익이 침해되는 사익보다 더 커야 한다)을 갖추어야 하며 그 어느 하나라도 저촉되면 위헌이 된다는 국가작용의 한계를 나타내는 헌법상의 원칙

그 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와 관련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 2007.3.25, 법률 제7906호, 2006.3.24, 제정)이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독립되었고,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 2008.12.6, 법률 제9094호, 2008.6.5, 제정)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시행 2011.9.9, 법률 제10442호, 2011.3.8, 제정)이 「소방기본법」에서 독립하여 과거의 소방법은 7개의 소방관계법규로 분화되었다.

표 1-1 소방법의 분화



2.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제정

기존 「소방법」에 규정⁶⁾되어 있던 위험물의 저장·취급 및 운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함으로써 산업발전과 위험물 관리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위험물의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법률 제6896호로 2003년 5월 29일 제정되었고, 그로부터 1년 후인 2004년 5월 30일 시행되었다. 또한 하위 법령으로 대통령령 제18406호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이 2004년 5월 29일에, 그리고 행정자치부령 제242호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 2004년 7월 7일 제정되었다.

이 법의 제정 당시 주요골자를 기존의 소방법에서 규정하지 않았던 새로운 규정에 대해서만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가. 위험물안전 규제사무는 시도의 사무이나, 전국적인 정책수립 등 국가 차원에서 필요한 사무를 규정하고,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규정함(법 제3조의2)
- 나. 일정한 양 이상의 위험물은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 저장하거나 제조소·저장소 또는 취급소가 아닌 장소에서 취급할 수 없도록 하고, 제조소·저장소 또는 취급소를 설치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함(법 제5조 및 제6조)
- 나. 위험물의 제조소·저장소 또는 취급소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 또는 수량을 변경하는 경우 종전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나, 이를 완화하여 앞으로는 신고하도록 함(법 제6조)
- 다. 위험물제조소등에 대한 사용정지의 처분이 그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사용정지처분 대신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법 제13조)
- 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화재예방과 화재발생시의 비상조치를 위하여 예방규정을 정한 경우 종전에는 시·도지사로부터 인가를 받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6) 제3장 위험물의 취급 제15조부터 제29조까지

- 시·도지사에게 예방규정을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관계인의 부담을 덜어줌(법 제17조)
- 마. 종전에는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대형의 위험물 운반용기는 사용이 금지되었으나, 앞으로는 행정자치부장관(소방방재청장으로 개정 05. 8. 4)이 실시하는 운반용기에 대한 검사를 받아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험물 유통량의 증가에 대비함(법 제20조)
- 바. 위험물의 누출 등의 사고발생시 국민안전처장관, 시·도지사 등의 사고조사 근거를 규정함.(법 제22조의2)
- 사.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거나 재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경우에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에 대하여 당해 제조소등의 사용을 일시정지하거나 그 사용을 제한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함(법 제25조)

제2절 위험물안전관리법의 개요

1. 위험물안전관리법의 구성

이 법 또한 대부분의 법률의 그것과 같이 전체적으로 제명·본칙·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칙은 총칙규정, 본칙규정, 보칙규정, 별칙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법률은 기존의 「소방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제3장(위험물의 취급)에 규정된 15개 조문을 근간으로 하여 16개의 조문을 신설하고 나머지 조문을 정리하여 전문 7장 39조 및 부칙 8조로 개정되어 현재는 전문 7장 39조 및 부칙 3조로 개정되어 있다.

전체의 내용은 위험물의 저장·취급 및 운반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본칙의 각 장별 제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2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장별 조문 제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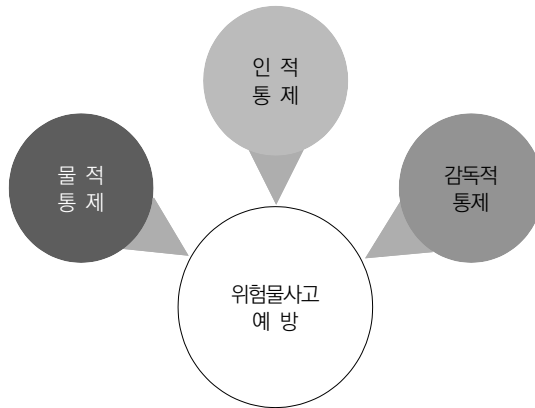
제 1 장 총칙	제 4 장 위험물의 운반 등
제1조(목적)	제20조(위험물의 운반)
제2조(정의)	제21조(위험물의 운송)
제3조(적용제외)	
제3조의2(국가책무)	제 5 장 감독 및 조치명령
제4조(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취급)	제22조(출입·검사 등)
제5조(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	제22조의2(위험물누출 등의 사고조사)
	제23조(탱크시험자에 대한 명령)
제 2 장 위험물 시설의 설치 및 변경	제24조(무허가장소의 위험물에 대한 조치명령)
제6조(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등)	제25조(제조소등에 대한 긴급 사용정지 명령 등)
제7조(군용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에 대한 특례)	제26조(저장·취급기준 준수명령 등)
제8조(탱크안전성능검사)	제27조(응급조치·통보 및 조치명령)
제9조(완공검사)	
제10조(제조소등 설치자의 지위승계)	제 6 장 보칙
제11조(제조소등의 폐지)	제28조(안전교육)
제12조(제조소등 설치허가의 취소와 사용 정지 등)	제29조(청문)
제13조(과징금 처분)	제30조(권한의 위임·위탁)
	제31조(수수료 등)
제 3 장 위험물시설의 안전관리	제32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제14조(위험물시설의 유지·관리)	
제15조(위험물안전관리자)	제 7 장 벌칙
제16조(탱크시험자의 등록 등)	제33조(벌칙) 내지 제37조(벌칙)
제17조(예방규정)	제38조(양벌규정)
제18조(정기점검 및 정기검사)	제39조(과태료)
제19조(자체소방대)	

2. 이 법에 있어 위험물에 대한 규제방식

이 법에 있어서 위험물에 대한 규제방식을 일반적으로 개괄하면 전체적으로는 하인리히(H. W. Heinrich)의 재해예방이론⁷⁾의 핵심내용인 物的통제와 人的통제를

균형 있게 사용하고 있으며,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인적(MAN), 물적(MACHINE), 감독적(MANAGEMENT) 통제방식이 사용된다.

[그림 1-1] 위험물에 대한 규제 방식



가. 인적 통제방식

위험물은 그 속성상 사람의 생활편의 등에 이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물질이라 할 수 있으며 위험물의 안전은 위험물시설의 설치당시의 구조적인 안전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으로 안전하게 유지·관리·취급하는 것 즉, 사람에 대한 통제가 가장 중요하다.

인적 통제는 안전관리에 관한 책임과 권한이 있는 조직이나 지위를 구성하는 방법과 행위자체를 직접 규제하는 방법이 있는데 전자의 예로는 위험물안전관리자, 위험물운송자, 자체소방대 등을 들 수 있으며, 후자의 예로는 저장·취급·운반·운송⁸⁾에 관한 통제 또는 정기점검의 강제 등이 있다.

나. 물적 통제방식

위험물에 있어서 물리적인 규제는 가장 일차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물적 통제 방식으로는 수량통제, 위치통제, 시설통제, 운반용기통제 등이 있다.

7) 재해를 일으키는 원인(사고의 2대 요인)은 불안정한 행동과 불안정한 상태이다.

8)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8(저장·취급), 19(운반), 21(운송)에 구체적인 기준이 나열되어 있다.

1) 수량통제

위험물의 안전관리적인 측면에서 위험물의 양에 대한 통제는 기본적으로 지정수량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외에 위험물을 허가 할 때 허가량에 대한 규제를 통해 위험물의 양에 대한 통제를 하고 있으며 각각의 제조소등에 있어서도 저장 또는 취급량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면 주유취급소의 지하에 용도별로 매설된 각각의 탱크는 최대저장용량에 대한 제한이 있다.

2) 위치통제

‘제조소등’이라는 시설이 위치하는 장소에 관한 규제와 제조소등 주변의 보호대상물과의 안전거리 또는 제조소등 자체를 보호하기 위한 보유공지 등 거리제한과 관련된 규제가 있다. 실생활과 밀접한 위험물시설은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위험성과 이와 별도로 고려하여야 하는 연관되어 있는 다양한 용도 때문에 타 법령과도 복잡하게 얽혀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건축법」·「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영유아보육법」등 타 법에서도 위험물시설의 위치·거리제한과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있다.

3) 구조 및 설비통제

이 법은 13가지의 위험물제조소등에 대한 각각의 세부적인 기술기준을 별도의 고시⁹⁾를 이용하지 않고 직접 시행규칙에 나열하고 있는데, 제조소등별로 정해진 탱크본체, 부속설비 등에 관한 구조·설비기준과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소방설비보다 더욱 강화된 소화설비, 경보설비 및 피난설비에 관하여 규정¹⁰⁾하고 있다. 또한 이와 별도로 임시 저장·취급장소의 시설기준, 지정수량 미만을 저장·취급하는 장소의 시설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다.

구조 및 설비 통제는 위치 통제와 함께 묶어 시설기준이라 하며, 시행규칙 별표 제목에서도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을 함께 기술하고 있다.

4) 운반용기통제

시설통제가 고정된 위험물시설에 대한 물적 통제라면 위험물 운반용기통제는 위험물시설 간에 혹은 위험물시설과 사용처 간의 이동과 같이 주로 위험물

9)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소방설비 등에 대한 기술기준을 별도로 모아 소방방재청 고시로 「화재안전기준」으로 독립·제정하였다.

10)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7

시설을 번어나는 경우에 있어서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물적 통제에 해당한다.

위험물운반용기는 운반하는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재질, 구조, 최대용적 또는 중량 등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다.

다. 감독적 통제방식

감독적 통제는 위험물시설의 사용자나 관계인이 아닌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의 입장에서 법 목적 달성을 위해 실시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에 대한 통제라 할 수 있다.

감독적 통제의 예로는 허가제도, 신고제도, 검사제도, 조치명령 등을 들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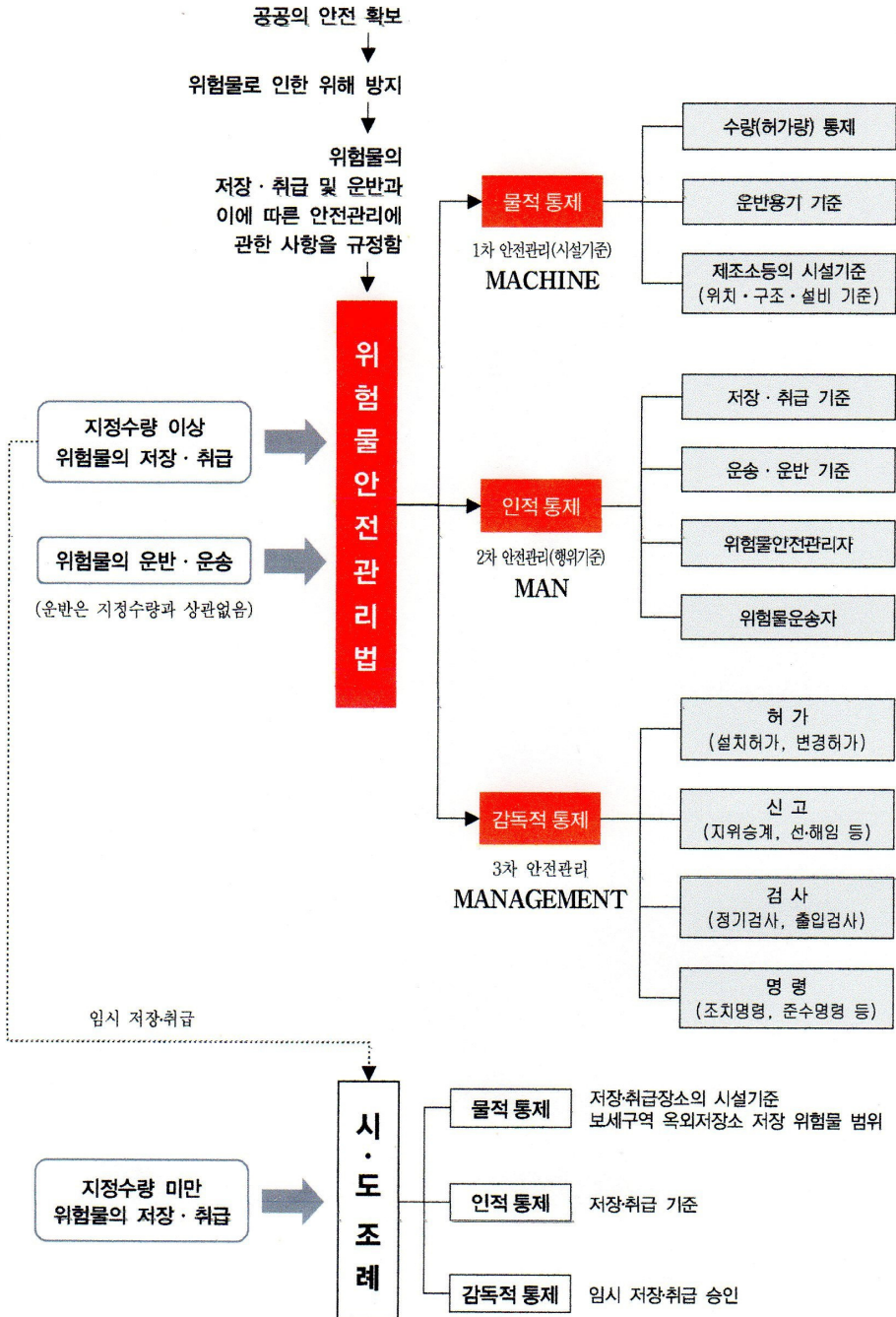
여기서 위험물 허가제이란 안전한 일정요건 충족 시 위험물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허가하는 것인데 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에 관한 허가권은 시·도지사의 권한이지만 소방서장에게 권한이 위임됨에 따라 현재로서는 소방관서가 갖는 유일한 허가권이다.

허가란 요청이 있는 경우 일반적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그 금지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자유를 회복하는 행정행위이므로 신고제도와 더불어 소극적 수단의 감독적 통제방식이라 할 수 있다. 신고제도는 품명이 변경된 경우, 설치자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 안전관리자가 변경된 경우, 제조소등의 용도가 폐지된 경우 등 그 사실을 관공서에 알리도록 강제하는 제도이다.

검사제도는 조치명령(무허가 위험물에 대한 조치명령, 제조소등에 대한 긴급사용정지명령 등)과 더불어 관의 입장에서 행하는 적극적 수단의 감독적 통제방식의 대표라 볼 수 있으며, 그 예로는 특정옥외저장탱크에 대한 정기검사와 위험물 출입·검사를 통한 관리·감독 등이 있다. 특히, 법 제22조에 의한 ‘위험물 출입·검사’는 영장주의¹¹⁾의 예외규정으로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상 가장 강력한 통제수단이라 볼 수 있다.

11) 형사절차에 있어서 강제처분을 함에는 원칙적으로 법관의 영장을 필요로 하는데 이를 ‘영장주의’라 한다. 체포·구속·압수·수색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하나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2조에서는 “화재의 예방 또는 진압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라는 전제하에 압수·수색영장 없이도 강제처분을 할 수 있다.

[그림 1-2] 위험물안전관리를 위한 규제 체계



3. 위험물안전관리법령의 체계

법령구분	법령수준	주요내용
• 위험물안전관리법	법 률	규제의 근간(의무부과 등)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규제의 대상 및 범위설정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총리령	위치·구조 및 설비, 저장·취급·운송 및 운반의 기술기준
•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국민안전처 고시	위험물 판정기준 등 세부적인 기술기준
• 위험물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기준	국민안전처 고시	GHS
• 이동탱크저장소의 위험성 경고표시에 관한 기준	국민안전처고시	이동탱크저장소에 부착하는 위험성 경고표시에 관한 사항 규정
• 위험물규제업무 처리규정	국민안전처 훈령	소방관서의 규제업무처리절차
• 위험물 안전관리조례	시·도의 조례	지정수량 미만에 대한 규제

○ 위험물업무처리지침

1. 구조안전점검 실시시기 관련 업무처리지침(예방과-675,2004.3.3.)
2. 구조안전점검의 실시에 관한 업무지침(예방과-799,2004.3.10.)
3. 위험물 데이터베이스의 운용지침(2004.7.12.)
4. 제조소등의 단위 및 저장·취급량 산정에 관한 업무지침(2004.7.12.)
5. 휘발성유기화합물(VOC) 배출방지장치 등의 설치기준(2004.7.12.)
6. 공동승계인의 지위승계신고태만에 따른 과태료부과 지침(2004.10.4.)
7. 제조소등의 휴지(休止)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2005.8.1.)
8. 컨테이너식 이동탱크저장소의 허가업무지침(2006.8.4.)
9. 알코올류의 판정기준에 관한 업무지침(2007.6.11.)
10. 예방규정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업무지침(2009.3.27.)
11. 위험물시설 안전성평가에 관한 업무지침(2009.3.27.)

12. 주유취급소 담 또는 벽의 기술기준 적용에 관한 업무지침(2010.8.16.)
13.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자격 변경에 따른 업무지침(2013.12.16.)
14. 주유취급소의 부대용도의 범위에 관한 업무지침(2014.4.21.)
15. 안전관리자의 중복선임 관련 규정 해석기준(2015.5.1.)
16.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정한 위험물의 지정수량(2015.5.1.)
17. 위험물규제 관련 소방관서의 질의에 대한 업무지침(2015.5.1.)
18. 품명.수량 또는 지정수량배수의 변경신고 관련 업무처리 기준(2016.1.27.)
19. 항만 수출입 하역장소의 위험물규제업무 처리지침(2016.4.25.)

제 2 장 총 칙

법령의 총칙은 법령 전체에 관한 원칙적·기본적인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의 구성부분으로서 일반적으로 법률 본칙의 앞부분에 두며 규정하는 내용으로는 목적 규정·용어의 정의규정·해석규정·적용범위 등이 규정되고 이 외에 이념규정이나 책무규정 등을 두기도 한다.

이 법은 위험물의 저장·취급 및 운반과 이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총칙부분에 두고 있으며, 그 내용으로는 이 법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규정, 이 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에 대한 정의규정, 이 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인 적용제외 규정, 일정량 이하의 위험물에 대한 사항인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에 대한 규정 및 위험물의 저장과 취급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제1절 목 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위험물의 저장·취급 및 운반과 이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험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의 의

목적규정은 법률의 입법목적을 간명하게 요약한 문장으로서, 이것은 제명(題名)과 함께 그 법률의 입법취지를 명확히 하며, 또한 그 법률규정의 운용·해석지침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이런 의미에서 목적규정은 법률규정의 의미 및 존재이유를 입법적으로 명확히 하는 법규적 해석의 기능을 지닌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법의 목적은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함에 있다.

2. 목적과 수단

본 조항은 이 법이 위험물의 저장·취급 및 운반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를 수단으로 위험물로 인한 화재, 폭발 등 각종 위해의 방지라는 1차적 목적과 궁극적으로 공공의 안전 확보라는 2차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임을 언급하고 있다.

3. 목적규정의 기능

가. 법률의 합헌성 확보

이 법의 목적규정은 이 법을 제정하여 시행하는 근본취지가 궁극적으로 공공의 안전 확보라는 헌법상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 법 이하의 법률은 전체적으로 헌법의 유보하에 있는 합헌성이 담보된 법률임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합헌성에 근거한 본 조의 목적규정은 그 목적인 헌법과 법률의 체계 내에서 그 정당성이 인정되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다.

나. 기본권 제한의 정당성이 유보된 법률

본 조의 목적규정은 헌법과 법률의 체계 내에서 그 정당성이 인정된 규정으로서 이는 동시에 본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절한 수단(방법의 적정성)을 통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정당성이 담보되어 있다. 즉, 헌법 제37조제2항¹²⁾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권 제한의 일반원칙에 합치되는 법률임을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12) 헌법 第37條

① 國民의 自由와 權利는 憲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輕視되지 아니한다.
 ② 國民의 모든 自由와 權利는 國家安全保障·秩序維持 또는 公共福利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法律으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自由와 權利의 本質的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다. 법규 해석의 기능

본 조는 이 법률의 입법취지 및 법률규정의 의미와 존재이유를 표현하고 있어 이하 이 법의 규정을 운용·해석하는데 있어서 지침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라. 이 법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

목적규정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위험물의 저장·취급 및 운반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라고 표현하고 있어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위험물의 저장·취급 및 운반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이 중심적 내용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법에서는 위험물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전반적으로 다루는 것이 아니다. 즉, 위험물의 판매와 같은 영업행위나 위험물로 인한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거나 직접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내용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제2절 정 의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험물”이라 함은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물품을 말한다.
2. “지정수량”이라 함은 위험물의 종류별로 위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수량으로서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등에 있어서 최저의 기준이 되는 수량을 말한다.
3. “제조소”라 함은 위험물을 제조할 목적으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기 위하여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가 면제된 경우 및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로써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제4호 및 제5호에서 같다)를 받은 장소를 말한다.
4. “저장소”라 함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대통령이 정하는 장소로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장소를 말한다.

5. “취급소”라 함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외의 목적으로 취급하기 위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로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장소를 말한다.
 6. “제조소등”이라 함은 제3호 내지 제5호의 제조소·저장소 및 취급소를 말한다.
-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소방기본법」·「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 공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의 의

정의규정이란 법률 중에 쓰이고 있는 용어의 뜻을 정하는 규정으로서 특히 해당 법률에서 쓰이는 중요한 용어이거나 일반적으로 쓰이는 용어의 의미와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특수한 용어에 대하여 법률자체에서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법률의 해석상 의문점을 없애기 위하여 사용한다.

따라서 본 조의 정의규정은 이하 법률의 해석상 논란을 예방하고,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할 뿐 아니라, 자주 사용되는 어려운 용어를 미리 한 곳에서 설명하여 됨으로써 복잡한 조문내용을 정의된 용어를 사용하여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본 조 제2항의 경우는 이 법에서 자주 쓰이지는 아니하거나 다른 소방 관련법에서 정의된 용어를 이 법에서 다시 정의하는 것은 입법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일 뿐 아니라, 불필요한 중복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 법에서 정의하지 않는 용어에 있어서는 이 법과 관련이 깊은 여타의 소방관련 법령의 정의를 준용함으로써 입법효율화를 기하고 소방관련 법률의 체계를 확보하기 위해 규정한 것이다.

2. 용어의 정의

가. 위험물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험물”이란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물질들 중에서 이를 합리적으로 적절하게 다루지 아니하면 그 위험성이 확대

되어 공중에 직·간접적인 위해를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물만을 말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이란 시행령 [별표 1]의 품명란에 규정하는 물품으로서 동표에 의한 구분에 따라 동표의 성질란에 정하는 성상을 가진 것으로 제1류 부터 제6류 까지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상에 있는 물품만이 공공의 안전을 위해할 수 있는 위험한 물질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이 외에도 현대 산업 사회에서는 수많은 다양한 위험물이 존재하고 유통되고 있으나 그 위험성의 중대성 정도, 실제 위험상황에 노출빈도, 사회경제적인 영향 등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규제대상을 정하여 놓은 것이다.

나. 지정수량

지정수량은 “위험물의 종류별로 위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으로서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이 있는 화학물질의 고유한 위험성에 비추어 해당 화학물질을 이 법령상 안전을 담보하기 위하여 통제하고 규제하는 최소의 양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위험물로 지정되었다하여 모든 양의 위험물을 법적·행정적으로 통제한다는 것은 위험물의 이용성에 대한 과도한 제재라 할 수 있으며 반면에 일정량 이상의 위험물임에도 불구하고 통제를 하지 않음은 위험물의 위험성에 대한 무책임한 방치라 할 수 있다.

이에 각각의 위험물의 고유한 위험성과 이 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두고 그 기준의 이상이면 이 법령에 따른 각종 통제를, 그 기준 미만이면 비록 위험물이라 할지라도 그 양과 속성에 비추어 이 법령에 의한 통제를 하지 않음으로써 이용성과 편의성을 도모하는 기준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이라도 모든 규제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고 시·도의 위험물안전관리조례에 의한 규제를 받게 된다.

따라서 지정수량은

- 이 법령에 따른 소방행정이 적용되는 최소의 위험물의 양이며
- 각각의 위험물의 위험성을 상대적으로 나타내는 척도이기도 하다.

다. 제조소

“제조소”란 위험물을 제조할 목적으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기 위하여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장소를 말한다. 따라서 위험물을 제조하지 않는 경우(예컨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여 비 위험물품을 제조하는 등)는 제조소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비 위험물을 사용하더라도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할 경우에는 제조소에 포함된다. 다시 말하면, 제조공정에서 원료(Input)가 되는 물질이 위험물이건 위험물이 아니건 간에 일정한 제조공정을 거쳐 생산된 최종산물(Output)이 「위험물안전관리법」상의 위험물에 해당하는 경우 그 제조시설을 제조소라 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이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한 대상 즉,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가 면제된 대상(주택난방용 저장소 또는 취급소) 및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로써 허가에 간주되는 대상(군용위험물 시설)도 이 법령에서 말하는 제조소는 물론, 저장소와 취급소의 개념에도 포함된다.

라. 저장소

“저장소”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하여 일정시설을 갖추고 이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허가를 받은 장소를 말하며 저장시설에는 전체 건물 내 또는 외부에 저장하는 시설과 위험물을 탱크에 담아서 저장하는 시설 및 지하암반에 저장하는 시설 등이 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옥내저장소, 옥외탱크저장소, 옥내탱크저장소, 지하탱크저장소, 간이탱크저장소, 이동탱크저장소, 옥외저장소, 암반탱크저장소로 구분된다.

마. 취급소

“취급소”라 함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 외의 목적으로 취급하기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로서 이 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장소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급소는 주유취급소, 판매취급소, 이송취급소, 일반취급소이며 저장취급소는 현행법에서는 삭제되었다. 각각의 취급소별 구체적인 내용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서 제시하고 있다.

바. 제조소등

“제조소등”이란 제조소·저장소 및 취급소를 약칭(略稱)¹³⁾하는 것으로 이 법에서 위험물을 규정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대표적인 개념이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것은 앞서 언급한 ‘허가 면제대상’과 ‘군용위험물로서 협의로써 허가에 간주되는 대상’도 ‘제조소등’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점이다. 즉, 각각의 목적에 따라 허가받은 장소만을 ‘제조소등’이라하는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 법에서 제조소등의 관계인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제외한다는 단서조항이 없다면 허가를 면제받은 주택난방용 저장소 또는 취급소나 협의로써 허가에 간주되는 군용위험물 시설의 관계인도 이를 지켜야할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제5조제3항에 따른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하여 중요기준 및 세부기준의 준수나 제14조에 의한 제조소등의 위치·구조·설비를 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해야하는 것 등이다.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장소와 그에 따른 저장소의 구분 (시행령 별표2)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장소	저장소의 구분
1. 옥내(지붕과 기둥 또는 벽 등에 의하여 둘러싸인 곳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저장(위험물을 저장하는 데 따르는 취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하는 장소. 다만, 제3호의 장소를 제외한다.	옥내저장소
2. 옥외에 있는 탱크(제4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에 규정된 탱크를 제외한다. 이하 제3호에서 같다)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	옥외탱크저장소
3. 옥내에 있는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	옥내탱크저장소
4. 지하에 매설한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	지하탱크저장소
5. 간이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	간이탱크저장소
6. 차량(피견인자동차에 있어서는 앞차축을 갖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당해 피견인자동차의 일부가 견인자동차에 적재되고 당해 피견인자동차와 그 적재물의 총량의 상당부분이 견인자동차에 의하여 지탱되는 구조의 것에 한한다)에 고정된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	이동탱크저장소
7. 옥외에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 다만,	옥외저장소

13) 약칭: 법문표현을 간결하게 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다른 용어를 활용하는 법제기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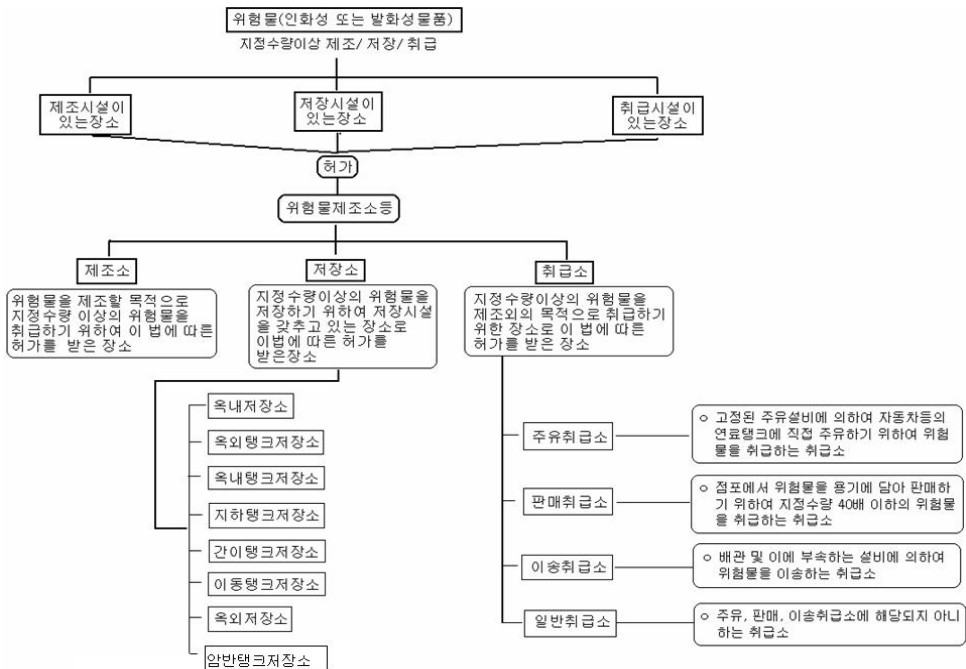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장소	저장소의 구분
<p>제2호의 장소를 제외한다.</p> <p>가. 제2류 위험물 중 유황 또는 인화성고체(인화점이 섭씨 0도 이상인 것에 한한다)</p> <p>나. 제4류 위험물 중 제1석유류(인화점이 섭씨 0도 이상인 것에 한한다)·알코올류·제2석유류·제3석유류·제4석유류 및 동식물유류</p> <p>다. 제6류 위험물</p> <p>라. 제2류 위험물 및 제4류 위험물 중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에서 정하는 위험물(「관세법」제154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구역 안에 저장하는 경우에 한한다)</p> <p>마. 「국제해사기구에 관한 협약」에 의하여 설치된 국제해사기구가 채택한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에 적합한 용기에 수납된 위험물</p>	
8. 암반 내의 공간을 이용한 탱크에 액체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	암반탱크저장소

위험물을 제조 외의 목적으로 취급하기 위한 장소와 그에 따른 취급소의 구분 (시행령 별표3)

위험물을 제조 외의 목적으로 취급하기 위한 장소	취급소의 구분
1. 고정된 주유설비(항공기에 주유하는 경우에는 차량에 설치된 주유설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자동차·항공기 또는 선박 등의 연료탱크에 직접 주유하기 위하여 위험물(「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유사석유제품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을 취급하는 장소(위험물을 용기에 채우거나 차량에 고정된 3천리터 이하의 탱크에 주입하기 위하여 고정된 급유설비를 병설한 장소를 포함한다)	주유취급소
2. 점포에서 위험물을 용기에 담아 판매하기 위하여 지정수량의 40배 이하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장소	판매취급소
3. 배관 및 이에 부속된 설비에 의하여 위험물을 이송하는 장소.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장소를 제외한다. 가. 「송유관안전관리법」에 의한 송유관에 의하여 위험물을 이송하는 경우 나. 제조소등에 관계된 시설(배관을 제외한다) 및 그 부지가 같은 사업소 안에 있고 당해 사업소 안에서만 위험물을 이송하는 경우 다. 사업소와 사업소의 사이에 도로(폭 2미터 이상의 일반교통에 이용되는 도로로서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만 있고 사업소와 사업	이송취급소

<p>소 사이의 이송배관이 그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p> <p>라. 사업소와 사업소 사이의 이송배관이 제3자(당해 사업소와 관련이 있거나 유사한 사업을 하는 자에 한한다)의 토지만을 통과하는 경우로서 당해 배관의 길이가 100미터 이하인 경우</p> <p>마. 해상구조물에 설치된 배관(이송되는 위험물이 별표 1의 제4류 위험물 중 제1석유류인 경우에는 배관의 내경이 30센티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으로서 당해 해상구조물에 설치된 배관의 길이가 30미터 이하인 경우</p> <p>바. 사업소와 사업소 사이의 이송배관이 다목 내지 마목의 규정에 의한 경우 중 2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p> <p>사.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에 따라 설치된 자가발전시설에 사용되는 위험물을 이송하는 경우</p>	
<p>4. 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장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유사석유제품에 해당하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경우의 장소를 제외한다)</p>	<p>일반취급소</p>

[그림 1-3] 제조소등의 개관



제3절 적용제외

제3조(적용제외) 이 법은 항공기·선박(선박법 제1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철도 및 궤도에 의한 위험물의 저장·취급 및 운반에 있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 조는 이 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으로 항공기, 선박, 철도 및 궤도의 경우, 이들의 안전을 관할하는 별도의 법률에 의하여 규율 받도록 함으로써 중복규제를 피하고 효율적인 법집행의 달성과 피 규제자인 국민의 부담을 줄이고자 함이다. 따라서 항공기, 선박, 철도 또는 궤도를 이용한 위험물의 저장, 취급 또는 운반은 이 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선박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해 규제되고 있다. 다만, 항공기, 선박, 기차 등에 운항, 항해, 운행을 위하여 자체 연료탱크에 주유하거나 위험물을 적재하기 위한 시설은 「위험물안전관리법」이 적용된다.

제4절 국가의 책무

제3조2(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위험물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위험물의 유통실태 분석
2. 위험물에 의한 사고 유형의 분석
3.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기술 개발
4. 전문인력 양성
5. 그 밖에 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험물에 의한 사고의 예방·대비 및 대응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본조는 신설(2016.1.27.)된 조항으로 그동안 위험물안전 규제사무는 시·도 사무로 인하여 국가에서 규제할 수 있는 조항이 없었으나 국가의 책무라는 선언적 의미

와 타 법과의 형평성을 맞추고게 되었고, 이 법의 실효성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동 법 제22조의2를 신설하여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위험물의 누출·화재·폭발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의 원인 및 피해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사고조사 의무를 부과하였다.

전국적인 정책수립 등 국가 차원에서 필요한 사무를 규정하여 시책을 수립·시행 할수 있고 또한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만들게 되었다.

제5절 지정수량미만인 위험물의 저장·취급

제4조(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취급)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술상의 기준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험물은 그 성질상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이 있는 바, 각각의 위험물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의 정도에 따라 일정수량 이상에 대하여서는 ‘지정수량’이라는 개념을 적용하여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조소등’에서 저장·취급토록 하고, 위험성은 있으나 그 양이 상대적으로 적은 위험물에 대해서는 ‘지정수량미만 위험물’ 또는 ‘소량 위험물¹⁴⁾’이라는 개념을 적용하여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시·도의 조례”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위험성이 적은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에 대해서는 시·도 조례를 적용함으로써 인하여 과도한 규제 또는 제한으로 위험물 이용·사용상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한편, 지정수량 미만 또는 소량 위험물이더라도 본질적 특성상 일정한 위해성은 가지고 있는바 이를 통제하기 위하여 「위험물안전관리법」보다는 소방업무에 대한 책임이 있는 “시·도의 조례”로 규정토록 함으로써 상대적 규제의 완화와 이용상에 있어서 현실성을 조화하고자 함에 본 조의 취지가 있다.

14) 소량위험물 : 지정수량 5분의1이상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

결론적으로 위험물의 규제는 저장·취급 규제와 운반 규제로 대별되며, 위험물의 저장·취급 규제는 그 저장 또는 취급하는 양이 지정수량 이상이면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취급은 시·도 조례에 의해 규제를 받는다. 또한 위험물의 운반은 위험물의 양에 관계없이 「위험물안전관리법」에 규제를 받는다.

제6절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

- 제5조(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 ①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서의 저장 또는 취급의 기준과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1.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아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90일 이내의 기간동안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
 2. 군부대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군사목적으로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
- ③ 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하여는 다음 각호의 중요기준 및 세부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중요기준 : 화재 등 위해의 예방과 응급조치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거나 그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직접적으로 화재를 일으킬 가능성이 큰 기준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기준
 2. 세부기준 : 화재 등 위해의 예방과 응급조치에 있어서 중요기준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영향을 미치거나 그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간접적으로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기준 및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표시와 서류·기구 등의 비치에 관한 기준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기준
-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술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⑤ 둘 이상의 위험물을 같은 장소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장소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각 위험물의 수량을 그 위험물의 지정수량으로 각각 나누어 얻은 수의 합계가 1 이상인 경우 당해 위험물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로 본다.

1. 의 의

본 조는 위험물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험물의 제조·저장·취급 등에 대하여 가장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이 법령 전체에 있어서 물적 통제와 핵심적인 조항이라 할 수 있다. 제5조제1항은 지정수량 이상인 위험물의 저장·취급에 관한 일반적 금지를 규정한 것으로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전제가 되기도 하지만 그 자체가 내포하는 의미가 매우 중요하다. 지정수량 이상인 위험물의 저장은 반드시 저장소에서만 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반대로 제조소·취급소에서는 지정수량 이상인 위험물을 저장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지정수량 이상인 위험물의 취급은 제조소·저장소·취급소에서 다 할 수 있다는 것인데 유의할 점은 저장소에서의 취급이라 함은 포괄적 의미의 취급이 아니라 저장을 위한 극히 제한적 취급을 의미한다.

위험물의 안전한 저장·취급을 위하여 관련시설을 안전하게 설치하는 것에 더하여 위험물을 다루는 행위도 안전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이에 지정수량 이상인 위험물을 저장·취급할 때에는 위험물의 성질과 상태를 고려하여 안전하게 다루도록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저장·취급기준은 중요기준과 세부기준으로 나누어지는데 중요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벌칙을 적용하고 세부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2.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는 장소

가. 위험물의 저장·취급

이 법 제5조(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에 의하면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면서 위험물의 저장·취급은 반드시 이 법령이 정한 기

준에 의한 제조소·저장소·취급소에서 해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선언함과 동시에 위험물의 저장은 반드시 저장소에서만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제조소, 취급소에서는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이 불가능해 짐에 따라 기존의 제조소, 취급소의 부속시설로 존재하던 저장시설은 별도의 위험물저장소로 분리되었다.

나. 위험물의 임시 저장·취급

이 법 제5조(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에 의하면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위험물의 취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공사장, 수·출입화물 하역장소, 보관창고업소 등과 같은 곳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그 필요에 따라 90일 이내의 기간동안 임시적으로 저장·취급하는 것을 위험물의 임시저장·취급이라 하며 이에 대해서는 이 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시·도의 조례에서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위험물 임시저장·취급소는 지정수량 이상이지만 허가대상이 아니고 관할소방서장의 승인신청대상이며 이 시설에 대한 기준은 시·도의 조례에서 정한 기술기준을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안전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위험물의 안전성을 담보하고 있다.

이와 같이 예외규정을 둔 것은 임시저장·취급대상이 고정되어 영구히 사용되는 시설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사용 또는 임시로 저장하는 곳인 관계로 이 법에 의한 규제를 완화하여 위험물의 이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함이며, 이에 대한 시·도 위험물안전관리조례의 규정은 위험물의 위험성을 방지하고자 하는 법령이 요구하는 필요 최소한의 규정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90일 이내의 기간에 대해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소방서장의 승인을 얻어 임시사용토록 하고 있는 바, 그 임시사용 기간이 90일을 초과한 경우 반복승인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90일이 초과되어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례에 의한 승인이 아니라 이 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다. 군사목적의 임시 저장 또는 취급

이 법 제7조에서는 군사목적 또는 군부대시설을 위한 제조소등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협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본 조에서는 군사목적으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의 경우 시·도 조례로 규정하도록 하여 위험물의 사용상의 편익을 도모하고, 이러한 군사목적상 사용하는 위험물의 임시저장 또는 취급은 군 조직체의 특성상 일반적인 위험물제조소등에 비하여 관리상의 안전성은 높으나, 위험물의 높은 이동성 및 유지관리상 군협조의 필요성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새롭게 분법된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이러한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3. 위험물 저장 및 취급에 관한 중요기준 및 세부기준

가. 중요기준

화재 등 위해의 예방과 응급조치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거나 그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직접적으로 화재를 일으킬 가능성이 큰 기준을 말하며 직접적으로 위험물의 위해성을 통제하기 위한 각종 기준을 말한다. 이에 대하여서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8]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중요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6조제1호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나. 세부기준

화재 등 위해의 예방과 응급조치에 있어서 중요기준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영향을 미치거나 그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간접적으로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기준 및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표시와 서류·기구 등의 비치에 관한 기준을 말하며 이러한 ‘세부기준’도 ‘중요기준’과 마찬가지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8]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세부기준 위반 시의 벌칙은 중요기준 위반과는 달리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9조제1항제2호에 의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된다.

4.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술기준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조소등에 있어서의 각종 시설 등에 대한 규정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장(제28조~제48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 규칙의 내용은 각 제조소등의 위치·구조·설비의 기준과 해당 제조소등에 설치하여야하는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의 설치기준, 그리고 이러한 기준의 적용특례로 구성 되어 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사항은 이 규칙의 [별표 4]‘제조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부터 [별표 17]‘소화설비, 경보설비 및 피난설비 기준’까지에 기술되어 있다.

5. 지정수량의 배수산정

같은 장소에서 둘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각 위험물의 저장·취급량을 해당 위험물의 지정수량으로 나누어 얻은 값의 합이 전체 위험물의 지정수량의 배수가 된다.

↳ 계산 예 하나의 옥내저장소 내에 다음과 같이 저장하는 경우



(=5배)



(=1배)



(=0.5배)

- 휘발유 ⇒ 제4류 제1석유류: 지정수량 200ℓ (수용성은 400)
 - 경유 ⇒ 제4류 제2석유류: 지정수량 1,000ℓ (수용성은 2,000)
 - 중유 ⇒ 제4류 제3석유류: 지정수량 2,000ℓ (수용성은 4,000)
- ⇒ 지정수량의 배수: $1,000/200 + 1,000/1,000 + 1,000/2,000 = 6.5$ 배

※ 저장하는 각 위험물의 수량을 해당 위험물의 지정수량으로 나누어 얻은 값의 합이 1 미만이면 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해당 시·도 조례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면 됨

제 3 장 | 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이 법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할 경우 제조소등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제조소등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험물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허가제를 두고 있다.

허가제란 국가가 사회·경제활동을 규제 또는 조정하기 위한 행정제도를 의미하며, 이 법에서는 위험물을 제조·저장 및 취급하는 장소에 대한 각종 위해를 방지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제조소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행정기관인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함으로써 허가를 하는 취지와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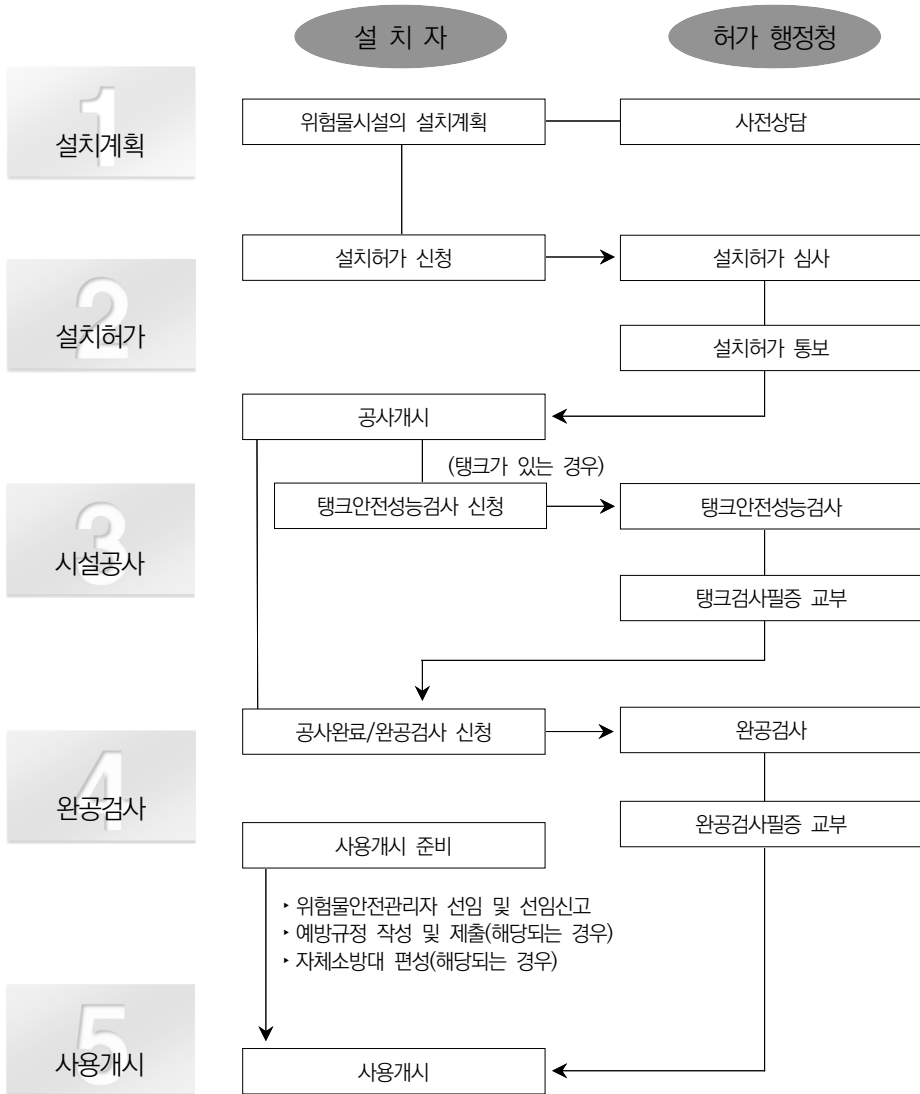
본 장에서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장의 내용(제6조~제13조)을 다룬다. 즉 위험물 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허가 또는 신고사항, 위험물탱크의 안전성능검사, 설치·변경 공사를 마친 때에 받아야하는 완공검사, 제조소등의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이 그것인데, 위험물시설에 대한 물적 통제의 전반적 내용을 다루고 있다.

한편, 본 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조소등의 허가 등에 관한 규정은 위험물의 소방상 위해로부터의 안전이라는 목적도 있지만 다른 측면으로는 위험물의 적정 관리·감독이 위험물의 누출·비산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미연에 방지하는 환경안전을 확보하는 간접적인 기능도 있다.

이 외에 군용위험물 시설 등에 대한 특례와 제조소등의 지위승계 및 이 법령과 법령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때에 적용되는 설치허가의 취소와 사용정지, 과징금처분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 위험물 설치계획에서 사용개시까지의 흐름

[그림 1-4] 위험물시설의 설치계획에서 사용개시까지의 흐름



제1절 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등

제6조(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등) ① 제조소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 가운데 총리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 없이 당해 제조소등에서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하고자하는 날의 1일 전까지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의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당해 제조소등을 설치하거나 그 위치·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할 수 있으며,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험물의 품명·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할 수 있다.

1. 주택의 난방시설(공동주택의 중앙난방시설을 제외한다)을 위한 저장소 또는 취급소
2. 농예용·축산용 또는 수산용으로 필요한 난방시설 또는 건조시설을 위한 지정수량 20배 이하의 저장소

1. 의 의

위험물은 현대 사회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물질임과 동시에 그 성질상 화재·폭발 및 누출의 위험성이 많은 관계로 그 사용의 효용성과 소방상 안전이라는 일정의 합리적인 통제가 필요하다. 본 조는 이러한 위험물에 대한 소방상의 안전 확보를 주로 하면서 그 사용상의 효용을 증대하기 위하여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제조소등에 있어서 허가제를 두어 제조소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 사전에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허가란 일반적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그 금지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행정행위이다.

본 조는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제조소등의 설치를 법률상 제한하고 이 법령이

정하는 안전기준 및 위해 방지시설이 갖추어진 경우에 한하여 그 제한을 해제하여 위험물제조소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위험물로부터의 위해 방지라는 공공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함에 그 취지가 있다.

2. 제조소등의 허가 및 타 법령

위험물제조소등의 허가에 있어서는 원칙상으로는 위험물제조소등이 이 법령에 적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가하여야함이 원칙이다. 그러나 최근 이와 관련하여 법령의 정비가 있었는데 ‘세녹스’와 같은 연료첨가제의 경우가 그 예이다.

종래 「소방법」에 의하면 주유취급소의 시설이 적합하면 「소방법」상 주유취급소의 허가는 할 수 있지만 「석유사업법」상의 규정에 맞지 않으면 주유소 영업을 할 수 없어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다. 이른바 “불법연료첨가제”와 관련하여 법적 정비를 통해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 취급소의 구분에서 종래의 「석유사업법」 제26조의 규정(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¹⁵⁾에 의한 가짜석유제품을 본 법에 의한 취급시설에서 취급할 수 없도록 하였다. 따라서 현재는 주유취급소에서 이와 같은 가짜석유제품¹⁶⁾을 취급할 수 없다.

제조소등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외에도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환경관련법 등 여러 법령과 관련되어 있어 위험물 민원업무를 수행할 때, 이 법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타 법령까지의 광범위한 검토를 통하여 제조소등이 여타의 법령에도 적합하여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실무적으로 지도할 필요성이 있다.¹⁷⁾

15)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가짜석유제품의 제조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
2. 가짜석유제품임을 알면서 사용하거나 제10조 및 제33조에 따라 등록·신고하지 아니한 자가 판매하는 가짜석유제품을 사용하는 행위
3.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석유화학제품·석유대체연료 또는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을 공급·판매·저장·운송 또는 보관하는 행위

16) 국민의 인식 전환 차원에서 ‘유사석유제품’은 ‘가짜석유제품’으로 변경됨(2012.1.26.개정)

17) 대법원 1999. 4. 23. 선고 97누14378 판결

[1] 주유소 설치허가권자는 주유소 설치허가신청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하고,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허가를 거부할 수는 없는 것이다, 심사결과 관계 법령상의 제한 이외의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또한 제조소등이 완공되고 난 후에는 이를 변경하거나 개·보수 공사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관계로(예컨대 지하탱크저장시설의 경우 담당자의 업무 미숙으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시설이 설치될 경우에 추후 검사를 통하여 발견이 어렵고 시정 조치 또한 현실적으로 많은 비용과 재시공상의 비효율성 등으로 인하여 위험물의 불안전 상태가 지속될 수 있다.) 허가 시 설계도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지도를 통하여 완공된 제조소등이 적법 적정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¹⁸⁾.

3. 설치허가

가. 신청서 제출

제조소등의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조소등 설치허가 신청서(전자문서 포함)에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나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나. 첨부서류(규칙 제6조)

1) 제조소등의 위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도면

- 가) 제조소등을 포함하는 사업소 안 및 주위의 주요 건축물과 공작물의 배치
- 나) 제조소등이 설치된 건축물 안에 제조소등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 그 부분의 배치 및 구조
- 다) 제조소등을 구성하는 건축물, 공작물 및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의 배치

[2] 주유소 설치에 관한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관계 법령에는 구 석유사업법(1995. 12. 29. 법률 제5092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구 석유사업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3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그 시행령의 위임을 받은 시·도지사의 고시뿐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건축법, 도시계획법, 소방법, 주택건설촉진법 등도 주유소 설치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주유소 허가에 있어서 입법목적, 규정사항, 적용범위 등에 비추어 석유사업법령이 건축법 등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관계에 있다고는 해석되지 아니하므로 석유사업법령에 따른 주유소 허가의 기준을 갖춘 자라 할지라도 건축법 등 다른 법령 소정의 주유소 설치 기준을 별도로 갖추지 아니하는 이상 적법한 주유소 허가를 할 수 없다.

18) 대법원 1998. 3. 27. 선고 96누19772 판결

입법목적 등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기 정하고 있는 경우 어느 법률이 다른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풀이되지 아니하는 한 그 행위에 관하여 각 법률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할 것인바, 이러한 경우 그 중 하나의 허가에 관한 관계 법령 등에서 다른 법령상의 허가에 관한 규정을 원용하고 있는 경우나 그 행위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절대적으로 금지되고 있어 그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명백한 경우 등에는 그러한 요건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경우에는 공정의 개요를 포함한다)

- 라)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건축물, 공작물 및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의 구조(주유취급소의 경우에는 별표 13 V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및 공작물의 구조를 포함한다)
- 마) 제조소등에 설치하는 전기설비, 피뢰설비, 소화설비, 경보설비 및 피난설비의 개요
- 바) 압력안전장치·누설점검장치 및 긴급차단밸브 등 긴급대책에 관계된 설비를 설치하는 제조소등의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개요
- 2) 제조소등에 관계된 구조설비명세표
 - 3) 소화설비(소화기구 제외)를 설치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 설계도서
 - 4) 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 설계도서
 - 5) 50만리터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에 있어서는 기초·지반 및 탱크본체의 설계도서, 공사계획서, 공사공정표, 지질조사자료 등 기초·지반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와 용접부에 관한 설명서 등 탱크에 관한 자료
 - 6) 암반탱크저장소에 있어서는 본체·갱도(坑道) 및 배관 그 밖의 설비의 설계도서, 공사계획서, 공사공정표 및 지질·수리(水理)조사서
 - 7) 지중탱크(저부가 지반면 아래에 있고 상부가 지반면 이상에 있으며 탱크 내 위험물의 최고액면이 지반면 아래에 있는 원통종형식의 액체위험물탱크)에 관계된 옥외탱크저장소는 해당 지중탱크의 지반 및 탱크본체의 설계도서, 공사계획서, 공사공정표 및 지질조사자료 등 지반에 관한 자료
 - 8) 해상탱크(해상의 동일장소에 정치(定置)되어, 육상에 설치된 설비와 배관 등에 의하여 접속된 위험물탱크)에 관계된 옥외탱크저장소는 해당 해상탱크의 본체 및 정치설비(해상탱크를 동일 장소에 정치하기 위한 설비), 그 밖의 설비의 설계도서, 공사계획서 및 공사공정표
 - 9) 이송취급소는 공사계획서, 공사공정표 및 규칙 별표 1에 정한 서류
 - 10)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발급한 기술검토서(영 제6조제3항에 의하여 기술원의 기술검토를 받은 경우)
- ※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다. 검토사항(영 제6조)

- 1)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가 법 제5조제4항의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 2) 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이 공공의 안전유지 또는 재해의 발생방지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될 것
- 3) 기술원 기술검토 여부확인
 - 지정수량 3000배 이상의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 구조·설비에 관한 사항
 - 50만리터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 또는 암반탱크저장소: 위험물탱크의 기초·지반, 탱크본체 및 소화설비에 관한 사항

4. 변경허가

변경허가란 변경하려는 사항이 중요하거나 그 변경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하여 행정청의 판단이 요구되는 사항에 있어서 이미 허가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미리 행정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이미 허가를 득한 위험물제조소등의 위치·구조·설비¹⁹⁾에 있어서 법령이 정하는 일정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 관할 행정기관인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득하여 변경토록 하는 제도로써, 무분별한 위험물 시설의 변경으로 인한 위험성을 배제하려는 것이다.

제조소등에 있어서의 시설 등의 변경은 해당 장소 전체의 소방상 위험성이 변화되었음을 의미하므로 이때에도 그 위험정도에 따라 위해방지를 위하여 허가라는 사전절차를 두어 적정 통제하기 위함이다.

변경허가를 득한 후에 변경시설을 설치한 제조소등에 있어서는 이 법 제9조에서 그 변경공사에 대한 완공검사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변경허가 - 시공 - 완공검사에 이르는 일련의 안전을 적정 확보하고 있다.

19) 1. 위치의 변경이란 허가 받은 제조소등의 시설을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2. 구조의 변경이란 제조소등의 시설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물, 공작물 또는 위험물탱크 저장시설의 형태를 바꾸거나 그 주요구조부를 교체하여 고치는 것을 말한다.
 3. 설비의 변경이란 제조소등의 시설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제조소등의 건축물, 공작물 또는 위험물탱크 저장시설에 부속된 시설의 형태를 바꾸어 고치는 것을 말한다.

가. 변경허가 신청시 제출할 서류(규칙 제7조)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설치허가를 한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제조소등의 완공검사필증
- 2) 제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라목부터 바목까지의 서류는 변경에 관계된 것에 한한다)
- 3) 제6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서류 중 변경에 관계된 서류
- 4) 법 제9조제1항의 단서에 의한 화재예방에 관한 조치사항을 기재한 서류(변경공사와 관계가 없는 부분을 완공검사 전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변경허가 사항(규칙 제8조)

본 조에 의하여 변경허가를 얻어야 하는 제조소등에 있어서의 각종 행위는 이 법 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1의2에서 각 제조소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조소등의 구분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1.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	가.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위치를 이전하는 경우 나. 건축물의 벽·기둥·바닥·보 또는 지붕을 증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다. 배출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라. 위험물취급탱크를 신설·교체·철거 또는 보수(탱크의 본체를 절개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경우 마. 위험물취급탱크의 노즐 또는 맨홀을 신설하는 경우(노즐 또는 맨홀의 직경이 250mm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바. 위험물취급탱크의 방유제의 높이 또는 방유제 내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 사. 위험물취급탱크의 탱크전용실을 증설 또는 교체하는 경우 아. 30m(지상에 설치하지 아니하는 배관의 경우에는 30m)를 초과하는 위험물배관을 신설·교체·철거 또는 보수(배관을 절개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경우

제조소등의 구분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p>자. 불활성기체의 봉입장치를 신설하는 경우</p> <p>차. 별표 4 XII제2호가목에 따른 누설범위를 국한하기 위한 설비를 신설하는 경우</p> <p>카. 별표 4 XII제3호다목에 따른 냉각장치 또는 보냉장치를 신설하는 경우</p> <p>타. 별표 4 XII제3호마목에 따른 탱크전용실을 증설 또는 교체하는 경우</p> <p>파. 별표 4 XII제4호나목에 따른 담 또는 토제를 신설·철거 또는 이설하는 경우</p> <p>하. 별표 4 XII제4호다목에 따른 온도 및 농도의 상승에 의한 위험한 반응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를 신설하는 경우</p> <p>거. 별표 4 XII제4호라목에 따른 철이온 등의 혼입에 의한 위험한 반응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를 신설하는 경우</p> <p>너. 방화상 유효한 담을 신설·철거 또는 이설하는 경우</p> <p>더. 위험물의 제조설비 또는 취급설비(펌프설비를 제외한다)를 증설하는 경우</p> <p>러. 옥내소화전설비·옥외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를 신설·교체(배관·밸브·압력계·소화전본체·소화약제탱크·포헤드·포방출구 등의 교체는 제외한다) 또는 철거하는 경우</p> <p>머.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신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p>
2. 옥내 저장소	<p>가. 건축물의 벽·기둥·바닥·보 또는 지붕을 증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p> <p>나. 배출설비를 신설하는 경우</p> <p>다. 별표 5 VIII제3호가목에 따른 누설범위를 국한하기 위한 설비를 신설하는 경우</p> <p>라. 별표 5 VIII제4호에 따른 온도의 상승에 의한 위험한 반응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를 신설하는 경우</p> <p>마. 별표 5 부표 1 비고 제1호 또는 같은 별표 부표 2 비고 제1호에 따른 담 또는 토제를 신설·철거 또는 이설하는 경우</p> <p>바. 옥외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를 신설·교체(배관·밸브·압력계·소화전본체·소화약제탱크·포헤드·포방출구 등의 교체는 제외한다) 또는 철거하는 경우</p> <p>사.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신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p>
3. 옥외탱크 저장소	<p>가. 옥외저장탱크의 위치를 이전하는 경우</p> <p>나. 옥외탱크저장소의 기초·지반을 정비하는 경우</p>

제조소등의 구분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p>다. 별표 6 II제5호에 따른 물분무설비를 신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p> <p>라. 주입구의 위치를 이전하거나 신설하는 경우</p> <p>마. 300m(지상에 설치하지 아니하는 배관의 경우에는 30m)를 초과하는 위험물배관을 신설·교체·철거 또는 보수(배관을 절개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경우</p> <p>바. 별표 6 VI제20호에 따른 수조를 교체하는 경우</p> <p>사. 방유제(간막이 독을 포함한다)의 높이 또는 방유제 내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p> <p>아. 옥외저장탱크의 밀판 또는 옆판을 교체하는 경우</p> <p>자. 옥외저장탱크의 노즐 또는 맨홀을 신설하는 경우(노즐 또는 맨홀의 직경이 250mm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p> <p>차. 옥외저장탱크의 밀판 또는 옆판의 표면적의 20%를 초과하는 겹침보수공사 또는 육성보수공사를 하는 경우</p> <p>카. 옥외저장탱크의 에놀러판의 겹침보수공사 또는 육성보수공사를 하는 경우</p> <p>타. 옥외저장탱크의 에놀러판 또는 밀판이 옆판과 접하는 용접이음부의 겹침보수공사 또는 육성보수공사를 하는 경우(용접길이가 300mm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p> <p>파. 옥외저장탱크의 옆판 또는 밀판(에놀러판을 포함한다)용접부의 절개보수공사를 하는 경우</p> <p>하. 옥외저장탱크의 지붕판 표면적 30% 이상을 교체하거나 구조·재질 또는 두께를 변경하는 경우</p> <p>거. 별표 6 XI제1호가목에 따른 누설범위를 국한하기 위한 설비를 신설하는 경우</p> <p>너. 별표 6 XI제2호나목에 따른 냉각장치 또는 보냉장치를 신설하는 경우</p> <p>더. 별표 6 XI제3호가목에 따른 온도의 상승에 의한 위험한 반응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를 신설하는 경우</p> <p>러. 별표 6 XI제3호나목에 따른 철이온 등의 혼입에 의한 위험한 반응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를 신설하는 경우</p> <p>머. 불활성기체의 봉입장치를 신설하는 경우</p> <p>버. 지중탱크의 누액방지판을 교체하는 경우</p> <p>서. 해상탱크의 정치설비를 교체하는 경우</p>

제조소등의 구분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p>어.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신설·교체(배관·밸브·압력계·소화전본체·소화약제탱크·포헤드·포방출구 등의 교체는 제외한다) 또는 철거하는 경우</p> <p>저.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신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p>
4. 옥내탱크 저장소	<p>가. 옥내저장탱크의 위치를 이전하는 경우</p> <p>나. 주입구의 위치를 이전하거나 신설하는 경우</p> <p>다. 300m(지상에 설치하지 아니하는 배관의 경우에는 30m)를 초과하는 위험물배관을 신설·교체·철거 또는 보수(배관을 절개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경우</p> <p>라. 옥내저장탱크를 신설·교체 또는 철거하는 경우</p> <p>마. 옥내저장탱크를 보수(탱크본체를 절개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경우</p> <p>바. 옥내저장탱크의 노즐 또는 맨홀을 신설하는 경우(노즐 또는 맨홀의 직경이 250mm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p> <p>사. 건축물의 벽·기둥·바닥·보 또는 지붕을 증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p> <p>아. 배출설비를 신설하는 경우</p> <p>자. 별표 7 II에 따른 누설범위를 국한하기 위한 설비·냉각장치·보냉장치·온도의 상승에 의한 위험한 반응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 또는 철이온 등의 혼입에 의한 위험한 반응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를 신설하는 경우</p> <p>차. 불활성기체의 봉입장치를 신설하는 경우</p> <p>카.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신설·교체(배관·밸브·압력계·소화전본체·소화약제탱크·포헤드·포방출구 등의 교체는 제외한다) 또는 철거하는 경우</p> <p>타.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신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p>
5. 지하탱크 저장소	<p>가. 지하저장탱크의 위치를 이전하는 경우</p> <p>나. 탱크전용실을 증설 또는 교체하는 경우</p> <p>다. 지하저장탱크를 신설·교체 또는 철거하는 경우</p> <p>라. 지하저장탱크를 보수(탱크본체를 절개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경우</p> <p>마. 지하저장탱크의 노즐 또는 맨홀을 신설하는 경우(노즐 또는 맨홀의 직경이 250mm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p> <p>바. 주입구의 위치를 이전하거나 신설하는 경우</p> <p>사. 300m(지상에 설치하지 아니하는 배관의 경우에는 30m)를 초과하는 위험물배관을 신설·교체·철거 또는 보수(배관을 절개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경우</p>

제조소등의 구분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아. 특수누설방지구조를 보수하는 경우 자. 별표 8 IV제2호나목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냉각장치· 보냉장치· 온도도의 상승에 의한 위험한 반응을 방지하기 위한설비 또는 철이온 등의 혼입에 의한 위험한 반응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차. 불활성기체의 봉입장치를 신설하는 경우 카.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신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타. 지하저장탱크의 내부에 탱크를 추가로 설치하거나 철판 등을 이용하여 탱크 내부를 구획하는 경우
6. 간이탱크 저장소	가. 간이저장탱크의 위치를 이전하는 경우 나. 건축물의 벽·기둥·바닥·보 또는 지붕을 증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다. 간이저장탱크를 신설·교체 또는 철거하는 경우 라. 간이저장탱크를 보수(탱크본체를 절개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경우 마. 간이저장탱크의 노즐 또는 맨홀을 신설하는 경우(노즐 또는 맨홀의 직경이 250mm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7. 이동탱크 저장소	가. 상치장소의 위치를 이전하는 경우(같은 사업장 또는 같은 울안에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이동저장탱크를 보수(탱크본체를 절개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경우 다. 이동저장탱크의 노즐 또는 맨홀을 신설하는 경우(노즐 또는 맨홀의 직경이 250mm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이동저장탱크의 내용적을 변경하기 위하여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 마. 별표 10 IV제3호에 따른 주입설비를 설치 또는 철거하는 경우 바. 펌프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8. 옥외 저장소	가. 옥외저장소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 나. 별표 11 III제1호에 따른 살수설비 등을 신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다. 옥외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를 신설·교체(배관·밸브·압력계·소화전본체·소화약제탱크·포헤드·포방출구 등의 교체는 제외한다) 또는 철거하는 경우
9. 암반탱크 저장소	가. 암반탱크저장소의 내용적을 변경하는 경우 나. 암반탱크의 내벽을 정비하는 경우 다. 배수시설·압력계 또는 안전장치를 신설하는 경우 라. 주입구의 위치를 이전하거나 신설하는 경우 마. 300m(지상에 설치하지 아니하는 배관의 경우에는 30m)를 초과하

제조소등의 구분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p>는 위험물배관을 신설·교체·철거 또는 보수(배관을 절개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경우</p> <p>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신설·교체(배관·밸브·압력계·소화전본체·소화약제탱크·포헤드·포방출구 등의 교체는 제외한다) 또는 철거하는 경우</p> <p>사.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신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p>
<p>10. 주유취급소</p>	<p>가. 지하에 매설하는 탱크의 변경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탱크의 위치를 이전하는 경우 2) 탱크전용실을 보수하는 경우 3) 탱크를 신설·교체 또는 철거하는 경우 4) 탱크를 보수(탱크본체를 절개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경우 5) 탱크의 노즐 또는 맨홀을 신설하는 경우(노즐 또는 맨홀의 직경이 250mm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6) 특수누설방지구조를 보수하는 경우 <p>나. 옥내에 설치하는 탱크의 변경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탱크의 위치를 이전하는 경우 2) 탱크를 신설·교체 또는 철거하는 경우 3) 탱크를 보수(탱크본체를 절개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경우 4) 탱크의 노즐 또는 맨홀을 신설하는 경우(노즐 또는 맨홀의 직경이 250mm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p>다. 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급유설비를 신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p> <p>라. 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급유설비의 위치를 이전하는 경우</p> <p>마. 건축물의 벽·기둥·바닥·보 또는 지붕을 증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p> <p>바. 담 또는 캐노피를 신설 또는 철거(유리를 부착하기 위하여 담의 일부를 철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p> <p>사. 주입구의 위치를 이전하거나 신설하는 경우</p> <p>아. 별표 13 V제1호 각 목에 따른 시설과 관계된 공작물(바닥면적이 4㎡ 이상인 것에 한한다)을 신설 또는 증축하는 경우</p> <p>자. 별표 13 XⅥ에 따른 개질장치(改質裝置), 압축기(壓縮機), 충전설비, 축압기(蓄壓器) 또는 수입설비(受入設備)를 신설하는 경우</p> <p>차.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신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p> <p>카. 셀프용이 아닌 고정주유설비를 셀프용 고정주유설비로 변경하는 경우</p> <p>타. 주유취급소 부지의 면적 또는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p>

제조소등의 구분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파. 300m(지상에 설치하지 않는 배관의 경우에는 30m)를 초과하는 위험물의 배관을 신설·교체·철거 또는 보수(배관을 자르는 경우만 해당한다)하는 경우 하. 탱크의 내부에 탱크를 추가로 설치하거나 철판 등을 이용하여 탱크 내부를 구획하는 경우
11. 판매 취급소	가. 건축물의 벽·기둥·바닥·보 또는 지붕을 증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나.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신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12. 이송 취급소	가. 이송취급소의 위치를 이전하는 경우 나. 300m(지상에 설치하지 아니하는 배관의 경우에는 30m)를 초과하는 위험물배관을 신설·교체·철거 또는 보수(배관을 절개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하는 경우 다. 방호구조물을 신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라. 누설확산방지조치·운전상태의 감시장치·안전제어장치·압력안전장치·누설검지장치를 신설하는 경우 마. 주입구·토출구 또는 펌프설비의 위치를 이전하거나 신설하는 경우 바. 옥내소화전설비·옥외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를 신설·교체(배관·밸브·압력계·소화전본체·소화약제탱크·포헤드·포방출구 등의 교체는 제외한다) 또는 철거하는 경우 사.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신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다. 검토사항(영 제6조 및 규칙 제7조)

- 1)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가 법 제5조제4항의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 2) 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이 공공의 안전유지 또는 재해의 발생방지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될 것
- 3) 50만리터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 또는 암반탱크저장소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위험물탱크의 기초·지반, 탱크본체 및 소화설비에 대한 기술검토결과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인정 될 것
- 4) 변경허가의 신청에 있어서 법 제9조제1항 단서의 화재예방에 관한 조치사항을 기재한 서류가 적합하다고 인정될 것

5. 신고사항

본 조 제2항은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 없이 해당 제조소에서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 사전(1일전)에 신고토록 하고 있다. 이는 그 사항이 법의 취지상 경미하거나, 행정지도 등이 필요한 사항인 관계로 사전에 신고토록 하여 제조소등에 있어서 안전에 철저를 기하기 위함에 그 취지가 있다.

일반적으로 신고란 사인의 공법행위의 하나로서 “사인이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사실·관념을 통지함으로써 공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행위”를 말하며 신고는 원칙적으로 행정청에 대한 사인의 일방적 통지행위로서 접수된 때에 관계법이 정하는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며, 별도의 수리행위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6. 허가 및 신고제외 대상

가. 의 의

본 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지정수량 이상인 위험물을 취급하는 관계로 이 법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에서 저장 및 취급하여야 하나 허가 및 신고를 하지 않고 취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허가 및 신고사항은 아니지만 위험물을 저장 및 취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 법령이 규정한 제조소등의 설치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러한 유형의 위험물 사용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형태로서 각종 시설기준에 적합토록 하여 위험물의 위해로부터 안전을 담보하되 허가 및 신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를 없애고 그 이용의 편의성을 극대화 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다.

나. 허가 및 신고제외 대상의 제조소등

- 1) 주택의 난방시설(공동주택의 중앙난방시설을 제외한다)을 위한 저장소 또는 취급소
- 2) 농예용·축산용 또는 수산용으로 필요한 난방시설 또는 건조시설을 위한 지정 수량 20배 이하의 저장소

제2절 군용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에 대한 특례

제7조(군용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에 대한 특례) ① 군사목적 또는 군부대시설을 위한 제조소등을 설치하거나 그 위치·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하고자 하는 군부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제조소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군부대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조소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협의한 경우에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군부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한 제조소등에 대하여는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탱크안전성능검사와 완공검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완공검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한 군부대의 장은 지체 없이 총리령이 정하는 사항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의 의

본 조는 군용시설의 제조소등에 대한 특례로서 법 제6조에 의한 제조소등의 설치 및 변경 시 허가가 아닌 사전협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군용위험물에 대한 이 법의 규정은 이 법 제5조와 본 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제5조는 군용위험물의 임시저장 및 취급에 관한 규정이며 본 조는 임시저장 및 취급이 아닌 군사 목적 또는 군부대시설을 위한 제조소등에 대한 규정이다.

본 조에서 특례를 두는 이유는 군사목적 또는 군부대시설을 위한 제조소등은 일반적인 위험물제조소등에 비하여 위해성이 상대적으로 적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군부대의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법적인 시설기준 준수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는 현실적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군사목적 또는 군부대시설을 위한 위험물 또한 화재·폭발 및 누출 등 각종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는 바 이를 법령에서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협의절차를 두어 설치되는 제조소등의 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본 조에서 명확히 이를 규정하고 있다.

2. 일반대상과 군용대상 위험물 시설의 특례 비교

구 분	일 반 대 상	군 용 대 상	기 타
제조소등의 설치, 변경	소방서장 허가	설계도등 소방서장에게 제출 → 심사 후 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용대상의 경과규정 (부칙 제3조) 이 법 시행 전에 설치된 군용제조소등은 이 법 시행후 6월 이내에 당해 제조소등의 현황을 군부대장이 관할 소방서장에게 보고할 경우 이 법에 의하여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아 적법대상으로 양성화
탱크안전 성능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뢰시험 - 소방서 - 탱크성능시험자 - 기술원 	자체검사 후 결과서 제출	
완공검사	소방서장	자체실시 후 결과서 제출	
임시저장·취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조례에서 규정 (관할소방서장승인) ○ 기간 : 90일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조례에서 규정 ○ 기간제한 없음 	

3. 군용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시 특례 절차(영 제7조)

군부대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사목적 또는 군부대시설을 위한 제조소등을 설치하거나 그 위치·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조소등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그 공사의 설계도서와 군사목적 또는 군부대시설을 위한 제조소등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에 관한 서류²⁰⁾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보상 중요하거나 국가기밀에 속하는 제조소등을 설치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설계도서와 관계서류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해당 군부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검토결과를 통지하기 전에 설계도서와 관계서류의 보완요청을 할 수 있고, 보완요청을 받은 군부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0)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설치허가 신청서류) 및 제7조(변경허가 신청서류)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말함.

4. 탱크안전성능검사와 완공검사 자체 실시 후 통보사항

군부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와 협의한 제조소등에 대하여는 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탱크안전성능검사와 완공검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완공검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한 군부대의 장은 지체 없이 총리령(규칙 제11조)이 정하는 다음의 사항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가. 제조소등의 완공일 및 사용개시일

나. 탱크안전성능검사의 결과(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탱크안전성능검사의 대상이 되는 위험물탱크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다. 완공검사의 결과

라. 안전관리자 선임계획

마. 예방규정(영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의 경우에 한한다)

제3절 탱크안전성능검사

제8조(탱크안전성능검사) ①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탱크(이하 “위험물탱크”라 한다)가 있는 제조소등의 설치 또는 그 위치·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에 관하여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위험물탱크의 설치 또는 그 위치·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공사를 하는 때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완공검사를 받기 전에 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탱크안전성능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탱크안전성능시험자 또는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이하“기술원”이라 한다)로부터 탱크안전성능시험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탱크안전성능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탱크안전성능검사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탱크안전성능검사의 실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1. 의 의

탱크안전성능검사란 위험물저장탱크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하며 검사의 종류는 기초·지반검사, 충수·수압검사, 용접부검사 및 암반탱크검사로 구분된다. 위험물을 저장하는 용기인 탱크의 성능에 대한 검사는 안전 확보를 위한 시설 규제적 차원에서는 가장 중요하며 가장 1차적인 사항이라 할 수 있다. 위험물을 저장하는 용기에 대한 안전이 확보되지 않으면 여타의 모든 안전사항들이 무의미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법은 제조소등에 설치되는 위험물 탱크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조소등의 허가를 득한 자가 위험물 탱크를 설치하거나 탱크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공사를 한 경우에도 해당 탱크의 안전성능검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탱크안전성능검사와 구별하여야 하는 개념으로 탱크안전성능시험이 있다. 탱크 안전성능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는 위 법상 특정되어 있으며, 탱크의 안전성능을 확인하는 의미로서 탱크안전성능시험은 원칙적으로 누구든지 할 수 있다. 다만 탱크안전성능시험자 또는 기술원으로부터 탱크안전성능시험을 받은 경우에는 탱크안전성능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탱크안전성능시험은 탱크안전성능검사를 대체하는 효과가 있다.

2. 안전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는 탱크저장시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8조에서 탱크안전성능검사별로 해당이 되는 탱크를 구분하고 있으며, 그 검사의 내용은 다음 표 [시행령 별표 4]와 같다.

구 분	검사내용
1. 기초·지반검사	가. 제8조제1항제1호에 의한 탱크 중 나목 외의 탱크: 탱크의 기초 및 지반에 관한 공사에 있어서 해당 탱크의 기초 및 지반이 총리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함
	나. 제8조제1항제1호에 의한 탱크 중 총리령이 정하는 탱크: 탱크의 기초 및 지반에 관한 공사에 상당한 것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공사에 있어서 해당 탱크의 기초 및 지반에 상당하는 부분이 총리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함
2. 충수·수압 검사	탱크에 배관 그 밖의 부속설비를 부착하기 전에 해당 탱크 본체의 누설 및 변형에 대한 안전성이 총리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함
3. 용접부 검사	탱크에 배관 그 밖의 부속설비를 부착하기 전에 행하는 탱크의 본체에 관한 공사에 있어서 탱크의 용접부가 총리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함
4. 암반탱크 검사	탱크의 본체에 관한 공사에 있어서 탱크의 구조가 총리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함

3. 탱크안전성능 시험기관

탱크안전성능검사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시·도지사이다. 그러나 권한의 위임·위탁규정(영 제21조 및 제22조)에 의해 소방서장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탱크안전성능시험자로 등록한 자로부터 성능시험을 받은 경우 일부에 대해 해당 시험결과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탱크안전성능검사를 받아야하는 자는 규칙 별지20호서식의 신청서를 소방서장,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탱크성능시험자에게 제출할 수 있다.

한편, 위탁규정에 의해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실시하는 성능검사 대상이 되는 탱크는 용량이 100만리터 이상인 액체위험물을 저장하는 탱크, 암반탱크, 지하탱크저장소의 위험물탱크 중 이중벽탱크이다.

4. 위험물탱크안전성능검사의 구분과 검사신청시기

가. 기초·지반검사

- 1) 내용: 위험물탱크의 기초 및 지반에 관한 사항에 대한 탱크안전성능검사
- 2) 검사 신청 시기: 위험물탱크의 기초 및 지반에 관한 공사의 개시 전
- 3) 검사결과: 검사결과 검사신청자에게 통지(서면)
- 4) 해당탱크: 옥외탱크저장소의 액체위험물탱크 중 그 용량이 100만리터 이상인 탱크

나. 충수·수압검사

- 1) 내용: 위험물탱크의 누설·변형에 관한 탱크안전성능검사
- 2) 검사 신청 시기: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탱크에 배관 기타의 부속설비를 부착하기 전
- 3) 검사결과: 신청자에게 탱크검사필증교부
- 4) 해당탱크: 액체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탱크를 제외한다.
 -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 설치된 탱크로서 용량이 지정수량 미만인 것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제1항21)에 의한 특정설비에 관한 검사에 합격한 탱크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22)에 의한 성능검사에 합격한 탱크

다. 용접부검사

21)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7조(용기 등의 검사)

① 용기 등을 제조·수리 또는 수입한 자(외국용기 등 제조자를 포함한다)는 그 용기 등을 판매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지식경제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기 등에 대하여는 그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22)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②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으로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이라 한다)을 제조(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및 의무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 등을 설치하거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4까지의 규정에서 같다)하는 자는 의무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 등이 안전인증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중고품인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가 안전인증을 받을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계·기구 및 설비를 사용하는 자는 그 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 1) 내용: 위험물탱크의 용접부에 관한 사항에 대한 탱크안전성능검사
- 2) 검사 신청시기: 탱크본체에 관한 공사개시 전
- 3) 검사결과: 신청자에게 탱크검사필증교부
- 4) 해당탱크: 옥외탱크저장소의 액체위험물탱크 중 그 용량이 100만리터 이상인 탱크 다만, 탱크의 저부에 관계된 변경공사(탱크의 옆판과 관련되는 공사를 포함하는 것을 제외한다)시에 행하여진 법 제18조제2항에 의한 정기검사에 의하여 용접부에 관한 사항이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탱크를 제외한다.

라. 암반탱크검사

- 1) 내용: 암반탱크의 구조에 관한 사항에 대한 탱크안전성능검사
- 2) 검사 신청시기: 암반탱크의 본체에 관한 공사의 개시 전
- 3) 검사결과: 검사결과 검사신청자에게 통지(서면)
- 4) 해당탱크: 액체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암반 내의 공간을 이용한 탱크

제4절 완공검사

제9조(완공검사) 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제조소등의 설치를 마쳤거나 그 위치·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을 마친 때에는 당해 제조소 등마다 시·도지사가 행하는 완공검사를 받아 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받은 후가 아니면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함에 있어서 제6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때에 화재예방에 관한 조치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변경공사와 관계가 없는 부분은 완공검사를 받기 전에 미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완공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가 제조소등의 일부에 대한 설치 또는 변경을 마친 후 그 일부를 미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조소등의 일부에 대하여 완공검사를 받을 수 있다.

1. 의 의

완공검사란 제조소등이 이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사항 및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관할행정기관인 시·도지사가 확인·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등의 공사를 마친 때에,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의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소방시설 공사를 마친 때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그 공사의 적정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와 동일한 제도이며 또한 「건축법」에 있어서의 사용승인제도²³⁾와 유사하다.

본 조에서의 완공검사는 설치되는 제조소등의 적법·적정여부의 확인 외에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점검·확인한다는 의미에서 이 법의 실효성을 간접적으로 담보하는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다.

완공검사는 위험물에 있어서 인적인 통제(설치된 제조소등에 있어서의 안전관리 등)를 제외한 물적 통제의 마지막 확인과정이라 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위험물 시설 등은 설치 시에 적법·적정하게 설치하여 두면 그 이후에는 달리 위반사항이 발생할 여지가 거의 없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허가 시 및 완공검사 시에 시설의 적정·여부에 대한 면밀한 확인이 필요하다. 특히 지하시설의 경우에는 지하에 묻혀버리면 완공검사 시에 지하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바 완공검사 전에 중간지도 등을 통하여 탱크가 지하에 묻히기 전에 지하시설의 적정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2. 완공검사의 예외

본 조 제1항에서는 제조소등의 설치를 마쳤거나 또는 기존의 제조소등에 있어 변경허가를 득하고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완공검사 확인, 즉 완공검사 후 적합 판정이 있어야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동항의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변경허가의 경우 가사용 승인을 인정하고 있는 바, 기존의 제조소등에 있어서 변경허가신

23) 건축법 제22조 (건축물의 사용승인)

① 건축주가 제11조·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棟)별 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제25조제5항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만 해당된다)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청을 할 때 화재예방에 관한 조치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는 변경공사와 관계가 없는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서는 미리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제2항은 부분완공검사를 인정하여 제조소등의 일부에 대한 설치 또는 변경을 마친 후 그 일부를 미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제조소등의 일부에 대하여 완공검사를 받은 후 사용토록 하고 있다.

3. 완공검사의 신청(영 제10조 및 규칙 제19조)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에 대한 완공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이 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²⁴⁾ 또는 제23호서식²⁵⁾에 아래 “가”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소방서장 또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완공검사 신청서를 접수한 시·도지사, 소방서장 또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제조소등에 대하여 완공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가 법 제5조제4항에 의한 기술기준(탱크안전성능검사에 관련된 것을 제외한다)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완공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2호²⁶⁾에 따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완공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완공검사결과서를 소방서장에게 송부하고, 검사대상명·접수일시·검사일·검사번호·검사자·검사결과 및 검사결과서 발송일 등을 기재한 완공검사업무대장을 작성하여 1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가. 완공검사의 신청에 필요한 서류(규칙 제19조)

- 1) 배관에 관한 내압시험, 비파괴시험 등에 합격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내압 시험 등을 하여야 하는 배관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 2) 소방서장, 기술원 또는 탱크시험자가 교부한 탱크검사필증 또는 탱크시험필증(해당 위험물탱크의 설치장소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이 탱크안전성능검사를 실시한 경우를 제외한다)
- 3) 재료의 성능을 증명하는 서류(이중벽탱크에 한한다)

24) 위험물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전부, 부분) 완공검사신청서

25) 이송취급소 완공검사신청서

26) 가. 지정수량의 3,0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설치·변경에 따른 완공검사
나. 50만 리터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 또는 암반탱크저장소의 설치·변경에 따른 완공검사

나. 완공검사 신청시기

완공검사는 원칙적으로 제조소등의 공사를 완료한 후 각각의 제조소등마다 신청하여야한다. 그러나 몇몇 제조소등은 공사를 완료하게 되면 완공검사의 행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으므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 20조에서 다음과 같은 완공검사 신청시기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 1) 지하탱크가 있는 제조소등에 있어서는 해당 지하탱크를 매설하기 전
- 2) 이동탱크저장소에 대한 완공검사는 이동저장탱크를 완공하고 상치장소를 확보한 후
- 3) 이송취급소에 대한 완공검사는 이송배관 공사의 전체 또는 일부를 완료한 후에 시설별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지하·하천 등에 매설하는 이송배관의 공사에 대한 검사의 신청은 매설하기 전에 이를 하여야 한다.
- 4) 다음의 위험물시설 중 전체공사가 완료된 후에는 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한 것에 있어서는 다음에 정하는 시기에 완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 가) 위험물설비 또는 배관의 설치가 완료되어 기밀시험 또는 내압시험을 할 수 있는 상태의 공정
 - 나) 배관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시도지사, 소방서장 또는 기술원이 지정하는 부분을 매몰하기 직전의 공정
 - 다) 기술원이 지정하는 부분의 비파괴시험을 하는 공정

다. 완공검사 신청절차

- 1) 지정수량의 3,0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완공검사, 50만리터 이상 옥외탱크저장소 또는 암반탱크저장소
 - 제조소등 완공 →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게 신청(완공검사신청서 및 관련 서류첨부) → 검사실시 → 완공검사필증 교부(신청인에게) → 완공검사결과서 송부
- 2) 일반 제조소등에 있어서는 완공검사
 - 제조소등 완공 → 소방서장에게 신청(완공검사신청서 및 관련 서류첨부) → 검사실시 → 완공검사필증 교부

제5절 제조소등 설치자의 지위승계

제10조(제조소등 설치자의 지위승계) ① 제조소등의 설치자(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 제조소등을 설치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사망하거나 그 제조소등을 양도·인도한 때 또는 법인인 제조소등의 설치자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상속인, 제조소등을 양수·인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제조소등의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조소등의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1. 의 의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조소등의 허가는 행정법상 대물적 허가²⁷⁾에 해당하여 매매, 상속 등 대상물의 권리이전이 비교적 자유롭다. 제조소등의 지위승계라 함은 제조소등의 설치자로서 지위를 승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조소등의 설치자는 최초 설치허가를 받은 자는 물론 적법한 절차에 의거 그 지위를 승계한 자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설치자로서 그 시설을 안전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할 의무자 및 허가청의 행정행위 대상, 즉 「행정행위 객체」로서의 지위를 이어 받는 것을 말한다. 재산적 가치면에서 투자와 거래의 대상인 제조소등은 자본주의의 사적자치의 원리에 의해 매우 다양한 형태로 그 권리가 이전되면서 지위승계가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된다.

제조소등의 허가는 행정법상 대물적 허가에 해당되어 행정행위 효과는 위험물시설 뿐만 아니라 그 시설을 인수 또는 양수한 자에게도 미친다. 따라서 양도인의 중요한 위법행위를 이유로 양수인에게 행정제재를 가하는 것도 가능하다 할 것이

27) 對物的許可: 물건의 상태, 내용 등 객관적 요소를 대상으로 하는 허가로서 권리의 이전이 가능하다.

다.28) 지위승계의 신고는 거래 당사자 간 자유로운 의사표시에 의하여 거래를 완료하고 그 사실을 허가관청에 알리는 것으로서 행정법상 사인의 공법행위에 해당한다. 지위승계의 신고는 전형적인 자기완결적 신고²⁹⁾로서 신고행위 그 자체로 법적 효과를 완성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행정청의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신청과 다른 의미이며, 법적 효과를 수반하지 않는 통보와도 구별된다. 지위승계 신고는 형식상 요건을 갖추어 신고하면 행정청에 도달한 시점에 일정한 법적 효과를 발생하고 따로 행정청의 수리 여부가 문제되지 않는다.

2. 지위승계 원인 및 요건

이 법 제10조제1항제2항에서 지위승계의 원인 및 요건으로서 설치자의 사망, 양도, 인도, 법인의 합병,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파산법에 의한 환가, 압류재산의 매각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 열거된 사항은 지위승계의 원인 및 요건으로서 대표적인 것들이며, 보다 많은 지위승계의 원인 및 요건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사망과 유사한 인정사망, 실종선고, 유언에 의한 증여, 증여계약에 의한 증여, 재판에 의한 소유권 변동 등이 그것이다. 따라서 보다 근본적인 지위승계의 원인 및 요건은 바로 소유권 이전 또는 점유이전 이라는 법률효과의 발생을 말한다. 그것이 명칭이야 어떠하던 간에 그것으로 인하여 소유권 이전 또는 점유이전 이라는 법률효과가 발생하면 제조소등의 설치자로서의 지위도 승계된다는 것이다.

가. 설치자의 사망(死亡)

제조소등의 설치자가 사망하여 권리능력을 상실하게 되면 제조소등의 설치자로서 지위는 그 상속인에게 곧 바로 승계된다. 이때 소유권 이전 등기여부 및 상속권자의 확정여부에 관계없이 설치자의 사망과 동시에 지위승계는 확정되며,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공동으로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하게 된다. 법에 명시되지 않았지만 유증³⁰⁾, 인정사망³¹⁾, 실종선고³²⁾ 등 사망 유사개념들도 사망과

28)【判】79누190(1970.10.30.大判): 건축허가는 대물적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그 허가의 효과는 허가대상 건축물에 대한 권리변동에 수반하여 이전되고 별도의 승인처분에 의하여 이전되는 것이 아니다.

29) 강태주, 행정법, 현암사, 425면: 자기완결적 신고란 특정의 사실·법률관계에 관하여 행정청에게 단순히 알림으로서 그 의무를 다하는 보통의 신고(예:혼인신고, 사망신고, 출생신고, 건축신고 등)

동일한 지위승계의 효력이 인정된다.

나. 양도(讓渡)

제조소등의 양도란 매매, 증여 등 민법상 채권계약에 의한 권리의 이전을 의미하며, 제조소등의 소유권 이전을 말한다. 양도의 사전적 의미는 권리, 재산 따위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것을 말하지만 뒤에 언급되는 인도(引渡)와 구별하기 위해 민법상 채권계약에 의한 제조소등의 권리이전을 양도에 의한 지위승계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매매계약에 의한 양도에 의해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소유권만 이전되고 제조소등의 실질적 지배권(설치자의 지위)은 전소유자에게 남아 있는 경우는 지위승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³³⁾

다. 인도(引渡)

인도란 물건의 사실상의 지배인 점유를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그 점유가 정당한 권리관계에 의한 것이냐 아니냐에 관계없이 계약의 준부에 관계없이 점유의 이전과 함께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만으로 지위승계의 효과는 발생한다. 이는 양도와 같이 채권계약에 의한 소유권의 이전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으로서 지위승계의 요건을 많이 완화하여 사적 자치에 의한 보다 자유로운 지위승계가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빈번한 지위승계는 위험물시설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저해할 수 있고, 아울러 행정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있다는 단점이 있다. 인도를 사유로 한 제조소등의 지위승계 신고를 할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양해각서 등에 제조소등의 설치자로서 지위승계에 관해 언급이 없거나 의사표시가 불명확한 경우 지위승계합의서³⁴⁾를 별도로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30) 遺贈: 유언에 의하여 유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으로 타인에게 주는 행위

31) 認定死亡: 수난, 화재 기타 사변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가 있는 경우에 그를 조사한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의하여 사망을 인정하는 제도로서 시체가 발견되지 않아 사망의 신고가 곤란할 때 실익이 있다.

32) 失蹤宣告: 부재자의 생사불명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 법원이 실종선고를 하면 사망으로 간주되어 사망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한다.

33) 위험물규제업무처리규정(소방방재청 훈령 제208호) 제5조제1항

34) 위험물규제업무 처리규정(소방방재청 훈령 제208호) 별지 제6호 서식 참조

라. 법인의 합병(合併)

법인의 합병은 2개 이상의 법인이 하나의 법인으로 합쳐지는 것을 말하는데 보통은 기업의 확장, 경영합리화 등 경제적 목적을 위해 이루어진다. 합병에는 2개 이상의 법인이 통합되어 새로운 법인으로 만들어지는 설립합병(신설합병)과 하나의 법인이 다른 법인에 흡수되는 흡수합병이 있다.

법인의 합병에 의해 설치자의 지위가 변경되는 경우 합병등기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여 합병 후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대표자가 설치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마.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競買)

경매란 「민사집행법」에 의해 법원이 담보목적물로 제공된 제조소등을 담보권 실행을 위해 경매에 의한 방법으로 매각하고, 최고의 금액으로 낙찰을 받은 낙찰자는 경매 대금을 완납함과 동시에 그 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획득하게 된다. 따라서 제조소등의 지위도 이때에 새로운 낙찰자(승계자)에게 승계된다.

실제 실무에서 경매에 의한 지위승계 사유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경매제도의 특성상 전소유자와 낙찰자의 분쟁으로 인하여 낙찰자가 소유권은 있으나 점유권을 행사하지 못해 지위승계가 지연되는 사례가 많았다. 이 경우 예외를 인정하여 경매뿐만 아니라 소유권의 이전과 관련하여 전소유자의 인도거부 등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승계인이 설치자의 지위를 취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정이 소멸한 날을 지위승계일로 보도록 하고 있다.³⁵⁾

바. 파산법³⁶⁾에 의한 환가(換價)

파산제도는 채무자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제적 파탄에 대한 구제제도로서 채무자 스스로 자신을 파산자로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다. 파산신청이 되면 법원이 심리를 하여 파산선고 및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게 된다. 채무자에게 환가 분배할 재산이 있는 경우 재산을 금전적 가치로 변경하는 환가(換價)절

35) 위험물규제업무 처리규정(소방방재청 훈령 제208호) 제5조제2항 참조.

36) 「채권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차를 거치면서 소유권이 변경된다. 이때 그 환가 목적물이 위험물제조소등인 경우 설치자의 지위가 새로운 소유자에게 승계되면서 지위승계 사유가 발생하게 된다.

사. 압류재산(押留財産)의 매각(賣却)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 등에 각 개별법의 과세요건으로 인하여 징수 결정된 조세채권(세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이 조세채권을 확보할 목적으로 독촉절차를 거쳐 강제징수 절차인 체납처분 절차에 이르게 된다. 체납처분 절차는 채납자의 재산(동산, 부동산, 채권 등)을 강제적으로 압류하고, 공매(경매, 입찰)절차를 압류재산을 매각하게 되는데 이때에 그 목적물이 위험물제조소등인 경우 소유권의 변동이 있게 되므로 지위승계 사유가 발생하게 된다.

3. 지위승계 신고와 과태료 부과

가. 지위승계 신고의무자

- 1) 설치자의 사망: 상속인
- 2) 양도, 인도: 양수자 및 인수자
- 3) 법인의 합병: 합병에 의해 설립된 법인 또는 존속하는 법인
- 4) 경매, 환가, 압류재산의 매각: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

지위승계 신고의 의무자는 행정행위의 객체로서 의무를 태만히 하거나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부과처분 대상이 된다. 지위승계 신고의무자는 의사능력이 요구되며, 신고행위의 성질상 일신전속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리자에 의한 신고가 인정될 수 있다. 우편에 의한 신고도 가능하지만 신고행위의 존재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도달주의³⁷⁾가 원칙이다.

설치자의 사망으로 인한 지위승계에 있어서 상속인이 승계인이 되며,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그 개개인 모두가 의무자이지만 그 중 1인이 대표해서 신고 의무를 이행하면 다른 사람의 의무는 이행한 것으로 간주된다.

37) 到達主義: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는 주의, 受信主義, 受領主義

나. 지위승계일

- 1) 사망에 의한 상속: 사망일
- 2) 양도(매매, 증여, 교환 등): 등기접수일
- 3) 인도(임대차, 사용대차, 점유이전): 계약서상의 이전일 또는 의사표시로 이전을 합의한 날(지위승계합의서)
- 4) 합병: 등기접수일
- 5) 경매, 환가, 압류재산의 매각: 대금완납일
- 6) 이동탱크저장소: 자동차등록일

일반적으로 등기부등재가 곧 소유권의 이전 시점이라고 판단하는 상식 때문에 실무에서 등기부등재일을 지위승계의 기준시점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 상속, 경매, 판결, 환가, 압류재산의 매각 등은 등기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민법」 규정³⁸⁾에 의거 지위승계 시점이 사망일 또는 대금완납일이 되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특히 사망에 의한 지위승계에 있어서 피상속인의 사망 후 슬픔과 장례절차 등으로 경황이 없고, 상속인이 결정되지 않는 점, 한국인의 정서상 재산의 처분 및 등기절차가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는 점 등으로 기간 내 지위승계 신고가 잘 이행되지 않고 있다.

다. 지위승계 신고기한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는 지위승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라고 규정하고 있어 초일을 산입하여 처리하는 것 같지만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의 제23조 과태료 부과기준과 관련하여 [별표 9]의 과태료 부과기준에서 신고기한을 「지위승계일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30일이 되는 날」로 명시하고 있다.

라. 과태료 부과

- 1) 부과권자: 시·도지사 또는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 2) 지위승계신고 태만
 - 가)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30일 이내 신고: 30만원

38) 민법 제187조: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나)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31일 이후 신고: 70만원

3)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미신고): 200만원

4) 허위로 신고한 경우: 200만원

과태료 부과절차는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과태료부과처분예고서」를 발부하면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고, 위법사항 증명할 자료(관련서류, 자인서 등)를 첨부하여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적발보고를 한다. 과태료 징수결정과 부과처분에 의해 과태료가 부과되게 된다.

지위승계 사유 여하에 관계없이 동일한 대상에 수차례 지위승계가 이루어져 지위승계 신고 의무를 위반한 사람이 여러 명일 경우 그 위반한 사람 모두에 대하여 각각 과태료 부과처분을 해야 한다.

실제로 지위승계 신고 태만으로 보아야 할지 미신고로 보아야 할지 애매한 경우도 있고, 인도에 의한 지위승계의 경우 제출된 사문서(계약서 또는 지위승계합의서 등)의 진의(眞意)여부 및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도 있다.

4. 지위승계 절차

가. 구비서류

1) 지위승계신고서(규칙 별지28호 서식)

2) 제조소등의 완공검사필증

3)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가) 사망에 의한 상속: 사망진단서, 제적등본, 호적등본 등

나) 양도: 계약서, 등기부등본, 등기필증 사본 등

다) 인도: 계약서, 합의서, 지위승계합의서 등

라) 경매, 환가, 압류재산의 매각 등: 대금완납증명서, 납입영수증, 등기부등본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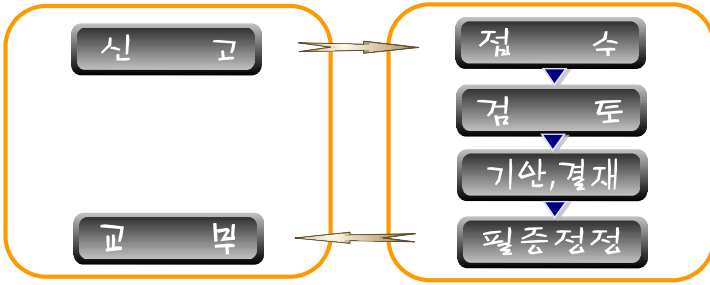
마) 합병: 등기부등본, 양해각서 등

4) 지위승계합의서(설치자의 지위를 이전한다는 의사표시가 불분명할 경우)

만일 제조소등의 완공검사필증을 분실하여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하며, 전 설치자의 비협조로 완공검사필증을 재발급 받을 수 없는 경우

이미 지위승계에 의해 설치자의 지위를 확보하였으므로 승계자의 명의로 완공검사필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다고 본다.

나. 처리절차



※ 관계기관(시장, 군수, 구청장 등)지위승계사실 통보

다. 허가청의 직권에 의한 지위승계³⁹⁾

허가청은 지위승계 신고 태만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등 지위승계 사실이 명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고의무자의 신고 없이 직권으로 제조소등의 관리대장 및 허가대장을 정리할 수 있다.

라. 이동탱크저장소의 지위승계

- 1) 상치장소 없는 지위승계⁴⁰⁾
 - 가) 지위승계신고서에 수리사실을 표시하여 신고자에게 교부
 - 나) 완공검사 전 위험물을 저장·취급할 수 없음을 통보
 - 다) 완공검사필증은 상치장소를 확보하여 완공검사를 받은 후 교부
- 2) 상치장소 관할 외로 변경(구허가청 → 신허가청)⁴¹⁾
 - 가) 지위승계 신고를 먼저 이행
 - 나) 신허가청이 수리한 경우 관할변경통지서에 의거 구허가청에 통보

39) 「위험물규제업무 처리규정」 제5조제2항
 40) 「위험물규제업무 처리규정」 제5조제5항
 41) 「위험물규제업무 처리규정」 제5조제6항

제6절 제조소등의 폐지

제11조(제조소등의 폐지) 제조소등의 관계인(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당해 제조소등의 용도를 폐지(장래에 대하여 위험물시설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시키는 것을 말한다)한 때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소등의 용도를 폐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의 의

위험물제조소등은 그 장소에서 취급하고 있는 물질이 화재·폭발·유출 등 소방안전상의 장애뿐만 아니라 환경 및 인체에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규제를 하고 있다. 용도폐지란 더 이상 위험물시설로서 존치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 그 시설물을 철거 또는 효용성을 없애는 절차를 말한다. 즉 장래에 대하여 위험물시설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자칫 위험물시설이 방치됨으로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과 유해성을 미리 방지하고자 하는 절차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는 용도폐지 절차에 대한 이행의무와 신고의무를 제조소등의 관계인에게 두고 있으며, 허가청은 관계인의 의무이행을 확인·감독하고, 불이행시 과태료 처분 규정이 있다.

위험물시설의 용도를 폐지하면 위험물시설에 대한 허가효력이 상실하는 동시에 그 허가로 발생하였던 각종 의무로부터도 해방된다. 용도폐지는 일시적 위험물시설의 사용 중지가 아니라 장래 완전히 제조등으로써 기능을 잃게 되는 것을 말한다. 용도폐지 신고의 법적성격은 지위승계 신고와 마찬가지로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행위 그 자체로 법적효과를 완성시키는 자기완결적 신고이다.

2. 용도폐지 관계인

지위승계 의무자인 설치자란 개념과 달리 용도폐지 의무자는 관계인이다. 관계인이란 「소방기본법」 제2조에서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로 규정하고 있다. 제조소

등에 있어서 관리권, 소유권, 점유권 등 그 권원이 다양하여 구체적으로 권리관계를 구분하기가 곤란하다. 따라서 용도폐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행위 객체로서 구체적 행정처분의 대상이 애매할 수가 있으므로 의무의 주체를 좀 더 특정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관계인이라고 명시한 것은 의무이행 주체를 넓게 보아 책임전가 등으로 인하여 위험물시설이 방치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관계인이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등으로 다수인 관계로 행정행위 객체로서 우선 순위가 적용될 필요가 있다. 우선순위 없이 동일한 의무이행 책임이 있다면 오히려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고 또한 하나의 위반사항을 여러 명이 동시에 행정처분을 받아야 하는 불합리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관계자의 의무이행 우선순위는 그 위험물시설에 대한 관계인의 권리의 성격과 종류에 따라 처분권과 배타적 지배권을 가진 소유자를 1차적 의무이행자로 보고, 관리자 및 점유자를 2차적 의무이행자로 봄이 타당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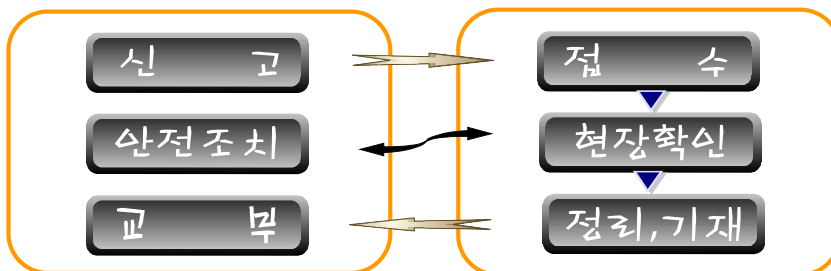
3. 용도폐지 절차

가. 구비서류

- 1) 위험물제조소등 용도폐지신고서
- 2) 제조소등 완공검사필증

나. 신고기한: 용도를 폐지한 날부터 14일 이내

다. 용도폐지 절차



※ 관계기관(시장, 군수, 구청장 등) 용도폐지 사실 통보

라. 현장확인

용도폐지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적합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 다만, 용도 폐지된 위험물시설 다른 용도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위험물 저장·취급시설의 위험물 및 가연성 증기를 완전히 제거하는 조치
- 2) 위험물 저장·취급시설을 해체·철거하거나 해당 시설을 위험물의 저장·취급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

용도폐지 된 현장을 확인할 때에는 관계자의 입회하에 확인하고, 용도폐지 사실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청의 직권으로 제조소등 관리대장 및 허가대장을 정리할 수 있다.

4. 과태료 부과

가. 부과권자: 시·도지사 또는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나. 용도폐지 신고 태만

- 1)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30일 이내 신고: 30만원
- 2)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31일 이후 신고: 70만원

다. 용도폐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미신고): 200만원

라. 허위로 신고한 경우: 200만원

과태료 부과절차는 지위승계에서와 같다.

5. 특수한 용도폐지

지위승계 절차와 용도폐지 절차가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용도폐지 절차로 일괄하여 처리하되,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기간 경과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과 같이 확인해야 한다.

가. 승계일로부터 30일 이내 용도폐지 → 용도폐지 신고기한 확인

나. 승계일로부터 30일 초과 용도폐지 → 지위승계 및 용도폐지 신고기한 확인

만일 지위승계 신고기한과 용도폐지 신고기한 모두를 초과한 경우 각각의 건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해야 한다.

제7절 제조소등 설치허가의 취소와 사용정지 등

제12조(제조소등 설치허가의 취소와 사용정지 등) 시·도지사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조소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한 때
2.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완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을 사용한 때
3.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수리·개조 또는 이전의 명령을 위반한 때
4.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때
5. 제15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
6.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기점검을 하지 아니한 때
7.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
8.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저장·취급기준 준수명령에 위반한 때

1. 의 의

이 법은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완공검사 및 각종 안전관리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는 위험물의 위해로부터의 안전을 확보하고 공공안전을 달성하고자하는 이 법의 목적에 의하여 그 정당성과 합법성이 확보된다고 할 수 있다.

본 조는 제조소등 관계인이 이 법령이 정하고 있는 일정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허가취소·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통하여 제재하는 것에 대한 규정이며, 일반

적으로 이러한 제재조치는 다른 제재수단으로도 위반상태를 시정할 방법이 없을 때 행하는 가장 강력한 최종적인 조치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제재는 위반에 대한 직접적인 조치라는 제재의 수단과 동시에 평상시에 위반을 하지 아니하고 관련법령을 준수토록 하는 간접적인 기능도 가지고 있다.

본 조에서는 제재조치의 방법으로 위험물 허가의 취소(강학상의 개념으로는 철회입)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한 위험물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사용의 정지를 행정명령으로 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허가의 취소

강학상 철회에 해당하는 시·도지사의 본 조에 의한 허가취소라는 행정처분은 가장 강력하고 최종적인 것이므로 그 요건은 명확하게 법률로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청의 무분별한 처분으로 인한 관계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처분의 적정성 및 공정성을 한 번 더 담보하기 위하여 법 제29조에서는 제조소등 설치허가 취소 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 청문⁴²⁾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취소처분 사유로 열거된 8개 항목에 해당되더라도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처분을 하도록 한 바, 그 구체적 기준은 이 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야한다. 즉 취소처분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3차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되는 제재이다.

3. 사용 정지

처분으로 인한 상대방의 이익보장 및 처분의 공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 취소 처분을 할 경우 반드시 청문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한편, 사용정지 처분과 관련하여서는 이 법 제13조에서 과징금 제도를 두고 있다.

위반행위에 따른 사용정지의 기간은 이 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가중하거나 경감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42)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9조 및 행정절차법 제27조~제37조

4. 허가의 취소 및 사용정지의 기준(규칙 별표 2)

- 가. 위반행위가 2 이상인 때에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중한 처분기준이 동일한 때에는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의하되, 2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사용정지이거나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중한 처분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분 할 수 있다.
- 나. 사용정지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 기간 중에 사용정지 또는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새로운 위반행위가 있는 때에는 종전의 처분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새로운 위반행위에 따른 사용정지 또는 업무정지의 행정처분을 한다.
- 다.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적용일은 최근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에 같은 위반행위를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라. 사용정지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기간이 완료될 때까지 위반행위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사용정지 또는 업무정지의 행정처분을 다시 한다.
- 마. 사용정지 또는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로서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또는 그 결과 등을 고려할 때 제2호 각목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기간까지 경감하여 처분할 수 있다.

5. 제조소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규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1) 법 제6조제1항의 후단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한 때	법 제12조	경고 또는 사용정지 15일	사용정지 60일	허가취소

위반사항	근거 법규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2) 법 제9조에 의한 완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을 사용한 때	법 제12조	사용정지 15일	사용정지 60일	허가취소
(3) 법 제14조제2항에 의한 수리·개조 또는 이전의 명령에 위반한 때	법 제12조	사용정지 30일	사용정지 90일	허가취소
(4)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때	법 제12조	사용정지 15일	사용정지 60일	허가취소
(5) 법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	법 제12조	사용정지 10일	사용정지 30일	허가취소
(6) 법 제18조제1항에 의한 정기점검을 하지 아니한 때	법 제12조	사용정지 10일	사용정지 30일	허가취소
(7) 법 제18조제2항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	법 제12조	사용정지 10일	사용정지 30일	허가취소
(8) 법 제26조에 의한 저장·취급기준 준수 명령을 위반한 때	법 제12조	사용정지 30일	사용정지 60일	허가취소

제8절 과징금 처분

제13조(과징금 처분) ① 시·도지사 제12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조소등에 대한 사용의 정지가 그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사용정지처분에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1. 의 의

과징금이란 일정한 행정법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행

정청이 그 의무자에게 부담시키는 제재금을 의미한다. 과징금은 본래 경제법상 의무위반자의 위반행위로 인한 불법적인 이익을 박탈하기 위한 행정 제재금을 의미하는 것이었으나 오늘날에는 행정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를 의미하는 변형된 형태로 사용되고 있다. 예컨대 다수 국민이 이용하는 사업이나 공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행정법규의 위반으로 인한 영업정지 처분으로 영업을 할 수 없다면 국민의 생활에 불편이나 공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하는 금전상의 제재로 과하는 별이라 할 수 있다.

본 조 또한 제조소등 관계인에 대한 사용정지 처분으로 인하여 해당 제조소등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대규모 저유소 또는 정유소에 대한 사용정지처분 등으로 인하여 공익에 불편을 초래하는 등의 우려가 있을 때에 사용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위반행위 중별·위반정도에 따른 과징금액의 범위 등을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 기준은 이 법 시행규칙 [별표3]에서 규정하고 있다.

2. 과징금의 부과 기준

가.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시행규칙 제25조 및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사용정지의 기간에 아래 나목과 다목에 의하여 산정한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을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

나.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은 제조소등의 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시행규칙 [별표 3]의 제2호 가목의 기준(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과징금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연간 매출액은 전년도 1년간의 총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되, 신규사업·휴업 등으로 인하여 1년간의 총 매출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월별 또는 일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연간 매출액을 환산한다.

다. 연간 매출액이 없거나 연간 매출액의 산출이 곤란한 제조소등의 경우에는 저

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허가수량(지정수량의 배수)을 기준으로 하여 시행규칙 [별표3]의 제2호 나목의 기준(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허가수량을 기준으로 한 과징금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3. 과징금의 징수절차

과징금의 징수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하여 징수결정, 납입고지, 수납 등의 절차에 따라 징수하고,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징금을 체납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 매각, 청산 등의 절차에 따라 강제로 징수할 수 있다.

제 4 장 | 위험물시설의 안전관리

본 장은 설치된 위험물제조소등에 있어서 안전관리에 관한 인적(人的) 통제를 중점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험물은 생활의 편익을 위하여 만들어진 물질이며 한 곳에 정지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의하여 끊임없이 이용·사용되어지는 물질인 관계로 일차적인 시설적 안전 확보와 함께 실제 위험물을 취급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관리의 개념 또한 중요하다 할 수 있다.

본 교재의 제3장은 위험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조소등이라는 저장시설 및 각종 시설을 설치하여 시설적인 측면에서의 구조적인 안전을 확보하고 있으며, 본 장은 설치된 시설에 대하여 위험물을 실제로 저장 및 취급의 업무를 행하는 사람에게 지속적인 유지 관리를 하도록 함으로써 위험물 안전의 항상성을 담보하여 위험성을 적정 통제하고자 각종 규정을 두고 있다.

본 장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장 위험물시설의 안전관리(제14조~제19조)를 다룬다. 전체적으로 제조소등의 관계인에 대한 시설유지·관리의무를 두고 있으며 위험물 안전에 관한 전문지식 및 기능을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제조소등을 관리토록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에 관한 사항과, 안전관리의 전반에 대한 제조소등의 내부규정인 예방규정에 관한사항, 설치된 위험물 시설의 적정여부를 확인 점검하는 정기점검 및 정기검사 및 다량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제조소등이 갖추어야 하는 자체소방대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1절 위험물시설의 유지·관리

제14조(위험물시설의 유지·관리) ①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당해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가 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지·관리의 상황이 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수리·개조 또는 이전을 명할 수 있다.

본 조는 설치된 제조소등에 있어서의 관계인에 대한 안전 유지·관리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제5조에서 위험물의 저장·취급은 제조소등에서 하도록 하고, 제6조에서 제조소등의 설치(변경)시 허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9조에서 설치를 마친 후 완공검사에 대한 규정을 두어 위험물의 시설과 물적인 구조안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본 조에서는 위험물제조소등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위험물을 취급하는 관계인에 대하여 설치된 위험물시설 등에 대하여 유지·관리의 의무를 둬으로써 적정·적법하게 설치되어 있는 각종 위험물 시설 등이 항상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조소등 관계인은 위험유발자이기 때문에 원인유발자 책임원칙에 의하여 관계인에게 각종 의무를 두고 있음은 당연하다 할 것이며 관계인에 대한 이러한 의무규정은 이 법 전체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사항을 적정 준수토록 하는 간접강제 기능과 이 법의 실질적인 실효성을 확보하는 기능이 있다.

제2항은 제조소등에 있어서 각종 기술기준에 부적합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할 소방행정기관에게 수리, 개조 및 이전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직접적인 위해방지 조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안전을 확보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1항의 관계인의 의무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하다.

제2절 위험물안전관리자

제15조(위험물안전관리자) ① 제조소등[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제조소등과 이동탱크저장소(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저장소를 말한다)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관계인은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제조소등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자격이 있는 자(이하 “위험물취급자격자”라 한다)를 위험물안전관리자(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소등에서 저장·취급하는 위험물이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유독물에 해당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조소등을 설치한 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안전관리업무를 하는 자로 선임된 자 가운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그 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때에는 해임하거나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③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경우 그 관계인 또는 안전관리자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 해임되거나 퇴직한 사실을 확인받을 수 있다.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안전관리자가 여행·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안전관리자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자격취득자 또는 위험물안전에 관한 기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자를 대리자(代理者)로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자가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⑥ 안전관리자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때에는 작업자에게 안전관리에 관한 필요한 지시를 하는 등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안전관리와 감독을 하여야 하고, 제조소등의 관계인과 그 종사자는 안전관리자의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의견을 존중하고 그 권고에 따라야 한다.

- ⑦ 제조소등에 있어서 위험물취급자격자가 아닌 자는 안전관리자 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대리자가 참여한 상태에서 위험물을 취급하여야 한다.
- ⑧ 다수의 제조소등을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계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인의 안전관리자를 중복하여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대리자의 자격이 있는 자를 각 제조소등별로 지정하여 안전관리자를 보조하게 하여야 한다.
- ⑨ 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은 대통령령⁴³⁾으로 정한다.

1. 의 의

본 조는 제14조와 함께 위험물제조소등에 있어서의 관계인의 안전관리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위험물은 그 성질상 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어 그 취급은 고도의 주의와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로서 사고 발생 시 그에 따른 피해가 크므로 위험물에 대한 유자격자로 하여금 업무를 감독케 함으로써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이며 위험물관련 사고에 있어서 신속하고 적절한 초동조치를 할 수 있는 관련 전문가로 하여금 업무토록 하여 사고발생시의 적절 대처를 확보하는 기능도 함께 가지고 있다.

이러한 '안전관리자제도'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방안전관리자제도'와 유사하나 위험물의 위험성에 비추어 소방안전관리자제도보다는 한층 강화된 자격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외에 가스, 전기 등의 안전관련법령에서도 이와 유사한 제도를 두는 경우가 많다. 이는 안전관리를 통하여 각종 위해를 미리 예방하고 나아가 위해 발생 시 적절한 대처를 통하여 공공안전에 기여하고자 함이다.

본 조는 자격부여규정으로서 일정한 업무 또는 행위를 하거나 특별한 지식이나 기능·기술이 요구되는 직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법률이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다.

43)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6].

2. 안전관리자

가.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

- 1) 위험물취급자격자
 -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취급자격자
 -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 나) 한국소방안전협회에서 실시하는 안전관리자 교육을 이수한 자
 - 다) 3년 이상의 소방공무원 근무경력이 있는 자
- 2) 다른 법률에 의한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자
 - 가) 저장·취급하는 위험물이 「화학물질 관리법」⁴⁴⁾에 의한 유독물질에 해당하는 경우
 - 제조소등의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선임된 자로서 법 제28조, 「화학물질 관리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해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은 자
 - 나)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속된 위험물시설(난방·비상발전 또는 자가발전에 필요한 위험물을 저장·취급하기 위하여 설치된 저장소 또는 일반취급소)이 당해 특정소방대상물 안에 있거나 인접하여 있는 경우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공공기관의 소방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로서 법 제15조제8항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자격이 있는 자
- 3) 대리자에 의한 안전관리자
 - 가) 요건
 - (1)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여행·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 (2) 안전관리자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못하는 경우
 - 나) 대리자 선임기간: 30일 이하
 - 다) 대리자 자격(규칙 제54조)

44) 2015년부터는 「화학물질관리법」으로 전면 개정되어 시행됨

- 「국가기술택격법」에 의한 위험물취급에 관한 자격취득자
- 법 제28조제1항에 의한 안전교육을 받은 자
- 제조소등의 위험물 안전관리업무에 있어서 안전관리자를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자

나. 1인의 안전관리자의 중복선임(영 제12조)

제조소등을 설치한 경우에 원칙적으로는 각각의 제조소등마다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이는 1인의 안전관리자만으로 다수의 제조소등을 관리함은 안전관리상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관계로 이러한 안전관리상의 장애를 배제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다수의 제조소등을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에는 제조소등의 규모와 위치·거리 등을 감안하여 1인의 안전관리자를 중복하여 선임할 수 있으며 중복 선임할 수 있는 제조소등은 다음과 같다.

- 1) 보일러·버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위험물을 소비하는 장치로 이루어진 7개 이하의 일반취급소와 그 일반취급소에 공급하기 위한 위험물을 저장하는 저장소[일반취급소 및 저장소가 모두 같은 건물 안 또는 같은 울 안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를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
- 2) 위험물을 차량에 고정된 탱크 또는 운반용기에 옮겨 담기 위한 5개 이하의 일반취급소[일반취급소간의 거리(보행거리를 말한다)가 300 m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와 그 일반취급소에 공급하기 위한 위험물을 저장하는 저장소를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
- 3) 동일구내에 있거나 상호 100 m 이내의 거리에 있는 저장소로서 저장소의 규모, 저장하는 위험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저장소를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
 - 10개 이하의 옥내저장소
 - 30개 이하의 옥외탱크저장소
 - 옥내탱크저장소
 - 지하탱크저장소
 - 간이탱크저장소

- 10개 이하의 옥외저장소
 - 10개 이하의 암반탱크저장소
- 4) 다음의 기준에 모두 적합한 5개 이하의 제조소등을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
- 각 제조소등이 동일구내에 위치하거나 상호 100 m 이내의 거리에 있을 것
 - 각 제조소등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이 지정수량의 3천배 미만일 것. 다만 저장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5) 그 밖에 (1) 또는 (2)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과 비슷한 것으로서 선박주유취급소의 고정주유설비에 공급하기 위한 위험물을 저장하는 저장소와 선박주유취급소를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 그러나 다음의 제조소등에 있어서는 1인의 안전관리자를 중복하여 선임한 경우에는 대리자의 자격이 있는 자를 각각의 제조소등별로 지정하여 안전관리자를 보조하게 하여야 한다.
- 제조소
 - 이송취급소
 - 일반취급소. 다만, 인화점이 38 ℃ 이상인 제4류 위험물만을 지정수량의 30배 이하로 취급하는 일반취급소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일반취급소를 제외한다.
 - 보일러·버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위험물을 소비하는 장치로 이어진 일반취급소
 - 위험물을 용기에 다시 채워 넣거나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주입하는 일반취급소

3. 안전관리자 선임 및 신고

본 조는 안전관리자의 선임 등에 대하여 신고의 의무를 두고 있는 바 신고의 의무는 위험물이 가지고 있는 공공의 위해성에 비추어 볼 때 관계인에 대한 신고의 부담을 주어 안전관리의 철저를 기한다는 점과 관할 행정관청의 관리·감독의 효율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적정성이 확보되어 있다.

가. 안전관리자 선임 및 신고의 기한

1) 해임 또는 퇴직시 재 선임: 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

2) 선임 시 신고: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 안전관리자를 해임한 때에는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선임해야하며, 선임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소방서장에게 선임신고를 한다.

나. 선임 등의 신고 시 제출 서류(규칙 제53조)

- 1) 국가기술자격증(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국가기술자격자에 한한다)
- 2) 국가기술자격증(「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가기술자격자에 한한다) 및 위험물안전관리업무대행계약서(제57조제1항에 의한 안전관리대행기관에 한한다)
- 3) 위험물안전관리교육수료증(제78조제1항 및 별표 24에 따른 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받은 자에 한한다)
- 4) 위험물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있는 관련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제1항제1호 부터 제3호 및 제3항의 해당하는 안전관리자 또는 영 제1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국가기술자격자가 아닌 자에 한한다)
- 5) 소방공무원 경력증명서(소방공무원경력자에 한한다)

4. 안전관리자의 책무(규칙 제55조)

안전관리자는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안전관리와 감독에 관한 다음 각호의 업무를 성실하게 행하여야 한다.

- 1) 위험물의 취급작업에 참여하여 당해 작업이 법령에 의한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술기준과 예방규정에 적합하도록 당해 작업자(작업에 참여하는 위험물취급자격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지시 및 감독하는 업무
- 2) 화재 등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응급조치 및 소방관서 등에 대한 연락업무
- 3) 위험물시설의 안전을 담당하는 자를 따로 두는 제조소등의 경우에는 그 담당

자에게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지시, 그 밖의 제조소등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업무

- 가)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를 법 제5조제4항의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기 위한 점검과 점검상황의 기록·보존
 - 나) 제조소등의 구조 또는 설비의 이상을 발견한 경우 관계자에 대한 연락 및 응급조치
 - 다) 화재가 발생하거나 화재발생의 위험성이 현저한 경우 소방관서 등에 대한 연락 및 응급조치
 - 라) 제조소등의 계측장치·제어장치 및 안전장치 등의 적정한 유지·관리
 - 마)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에 관한 설계도서 등의 정비·보존 및 제조소 등의 구조 및 설비의 안전에 관한 사무의 관리
- 4) 화재 등의 재해의 방지와 응급조치에 관하여 인접하는 제조소등과 그 밖의 관련되는 시설의 관계자와 협조체제의 유지
- 5)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일지의 작성·기록
- 6) 그 밖에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를 차량에 적재하는 작업, 위험물설비를 보수하는 작업 등 위험물의 취급과 관련된 작업의 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감독의 수행

5. 안전관리대행기관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규제완화 차원에서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는 대행기관을 지정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는 민간자율의 취지와 함께 최근 들어 기업들이 핵심적 영역을 제외하고는 많은 업무영역들을 이른바 아웃소싱(out-sourcing)하는 추세에 부응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가 있다.

가.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자격(규칙 제57조)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⁴⁵⁾에 의하여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업

45)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 (안전관리 등의 외부위탁)

①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업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3.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

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관리대행기관(이하 “안전관리대행기관”이라 한다)은 다음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시행규칙 [별표 22]의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 기준을 갖추어 국민안전처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 1)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6조제2항에 의한 탱크시험자로 등록한 법인
- 2) 다른 법령에 의하여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으로 지정·승인 등을 받은 법인

나.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규칙 제57조)

국민안전처장관은 자격요건·기술인력 및 시설·장비보유현황 등을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험물안전관리대행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에는 그 자격자가 안전관리대행기관의 기술인력자임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하며 안전관리대행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대행기관 지정 기준

가) 기술인력

- 위험물기능장 또는 위험물산업기사 1인 이상
-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2인 이상
-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소방설비기사 1인 이상
- ※ 기술인력은 위 사항에 정하는 것의 2이상의 인력을 동일인이 겸할 수 없다.

나) 시 설: 전용 사무실을 갖출 것

다) 장 비

- 절연저항계
- 접지저항 측정기(최소눈금 0.1Ω 이하)
- 가스농도측정기
- 정전기 전위측정기
- 토크렌치
- 진동시험기
- 안전밸브 시험기
- 표면온도계 (-10~300 ℃)

-
- ② 제1항에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2.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의 업무를 수탁하는 관리대행기관의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
 - 2의2.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의 업무를 수탁하는 관리대행기관의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대행기관의 지정요건·지정신청절차·지정의 취소·업무의 정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해당 부령으로 정한다.
2.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의 업무를 수탁하는 관리대행기관에 관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

- 두께측정기(1.5mm~99.9mm) ○ 유량계, 압력계
 - 안전용구(안전모, 안전화, 손전등, 안전로프 등)
 - 소화설비점검기구(소화전밸브압력계, 방수압력측정계, 포콜렉터, 헤드렌치, 포콘테이너)
- 2) 등록신청 및 처리
- 가) 등록신청자: 안전관리대행기관으로 등록하려는 법인
- 나) 신청서: 시행규칙 별지 제33호 서식
- 다) 첨부서류
- 기술인력 연명부 및 기술자격증
 - 사무실의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장비보유 명세서
- 라) 제출처: 국민안전처
- 마) 등록처리: 자격요건·기술인력 및 시설·장비보유현황이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위험물안전관리대행기관 지정서 발급(시행규칙 별지 제34호 서식) 및 기술자격증에 안전관리대행기관의 기술인력자임을 기재하여 교부
- 3) 변경 및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 변경사항은 14일 이내에, 휴업·재개업, 폐업은 14일 전에 신고 [신고서: 시행규칙 별지 제35호 서식(전자문서 포함)]

다.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취소(규칙 제58조)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은 안전관리대행기관이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정하게 할 수 있다. 또한 국민안전처장관은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를 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하며,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정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1)부터 3)까지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안전관리대행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시행규칙 별표 2)

위 반 사 항	근거 법규	행정처분 기준		
		1차	2차	3차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제58조	지정취소		
2) 탱크시험자의 등록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의 지정·승인 등이 취소된 때	제58조	지정취소		
3) 다른 사람에게 지정서를 대여한 때	제58조	지정취소		
4)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때	제58조	업무정지 30일	업무정지 60일	지정취소
5) 국민안전처장관의 지도·감독에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는 때	제58조	업무정지 30일	업무정지 60일	지정취소
6) 변경·휴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를 연간 2회 이상 하지 아니한 때	제58조	업무정지 30일	업무정지 90일	지정취소
7) 안전관리대행기관의 기술인력이 안전관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때	제58조	경고	업무정지 90일	지정취소

라.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업무(규칙 제59조)

안전관리대행기관은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받는 경우에는 영 제13조 및 영 [별표 6]의 규정에 적합한 기술인력을 안전관리자로 지정하여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하게 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자로 지정된 안전관리대행기관의 기술인력은 위험물의 취급작업에 참여하여 법 제15조 및 이 규칙 제55조(안전관리자의 책무)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기술인력을 안전관리자로 지정함에 있어서 1인의 기술인력을 다수의 제조소등의 안전관리자로 중복하여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험물안전관리자 중복선임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제조소등의 수가 25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제조소등(지정수량의 20배 이하를 저장하는 저장소는 제외한다)의 관계인은 제조소등마다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국가기술자격자 또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은 자를 안전관리원으로 지정하여 대행기관이 지정한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보조하게 하여야 한다.

제3절 탱크시험자의 등록

제16조(탱크시험자의 등록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안전관리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탱크안전성능시험자(이하 “탱크시험자”라 한다)로 하여금 이 법에 의한 검사 또는 점검의 일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탱크시험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사항 가운데 총리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탱크시험자로 등록하거나 탱크시험자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삭제(2006. 9. 22)
3. 이 법, 「소방기본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소방시설 공사업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 「소방기본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소방시설 공사업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탱크시험자의 등록이 취소(제1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법인으로서 그 대표자가 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⑤ 시·도지사는 탱크시험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4항 각호의 1의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경우
4.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5. 탱크안전성능시험 또는 점검을 허위로 하거나 이 법에 의한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탱크안전성능시험 또는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등 탱크시험자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⑥ 탱크시험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따라 탱크안전성능시험 또는 점검에 관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의 의

위험물 시설에 있어서 위험물을 저장하는 용기에 대한 안전성은 가장 일차적으로 확보되어야 할 사항이며 저장용기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탱크에 있어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적 기술능력과 시설 및 장비를 갖춘 자로 하여금 탱크안전시험을 하도록 하고, 또한 제조소등의 안전관리업무인 검사 또는 점검 등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탱크의 안전을 확보 및 제조소등에 있어 관리상의 안전을 확보하고자함이 이 법의 가장 중요한 존재이유이다.

이 법 제8조는 위험물탱크의 안전을 위하여 제조소등에 설치되거나 설치된 탱크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8조에는 제조소등에 있어 정기점검 및 정기검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본 조에서는 탱크안전시험 및 제조소등의 점검·검사를 하기 위하여서는 일정한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를 갖춘 사람으로 하여금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로 등록하여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조소등에 있어서의 안전을 확보토록 하고 있다.

2. 탱크시험자의 업무

본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탱크시험자의 업무범위는 이 법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탱크안전성능시험과 이 법 제1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점검 및 검사업무의 일부이다.

특히 제조소등에 있어서 탱크의 안전여부를 점검하는 비파괴시험 등은 관계인이 쉽게 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며 기술능력과 장비 등이 필요함에 따라 대규모이며 전문성이 요구되는 제조소등에 있어서는 탱크시험자가 검사 또는 점검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등록기준(영 제14조 및 별표 7)

탱크시험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시·도 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가. 기술능력

1) 필수인력

- 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1인 이상
- 비파괴검사기술사 1인 이상 또는 방사선비파괴검사·초음파비파괴검사·자기비파괴검사 및 침투비파괴검사별로 기사 또는 산업기사 각 1명 이상

2) 필요한 경우에 두는 인력

- 충·수압시험, 진공시험, 기밀시험 또는 내압시험의 경우: 누설비파괴검사 기사, 산업기사 또는 기능사
- 수직·수평도시험의 경우: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또는 측량기능사
- 필수 인력의 보조: 방사선비파괴검사·초음파비파괴검사·자기비파괴검사 또는 침투비파괴검사 기능사

나. 시설: 전용사무실

다. 장비

- 1). 필수장비 : 자기탐상시험기, 초음파두께측정기 및 가) 또는 나)중 어느 하나
 - 가) 영상초음파탐상시험기
 - 나) 방사선투과시험기 및 초음파탐상시험기
- 2) 필요한 경우에 두는 장비
 - 가) 충·수압시험, 진공시험, 기밀시험 또는 내압시험의 경우
 - 진공능력 53 kPa 이상의 진공누설시험기
 - 기밀시험장치(안전장치가 부착된 것으로서 가압능력 200 kPa 이상, 감압의 경우에는 감압능력 10 kPa 이상·감도 10 Pa 이하의 것으로서 각

각의 압력 변화를 스스로 기록할 수 있는 것)

나) 수직·수평도 시험의 경우: 수직·수평도 측정기

※ 비고: 둘 이상의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는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각각의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4. 등록신청 및 처리(규칙 제60조)

탱크시험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 별지 제36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받는 것에 같음하여 그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 기술능력자 연명부 및 기술자격증

나. 안전성능시험장비의 명세서

다. 보유장비 및 시험방법에 대한 기술검토를 기술원으로부터 받은 경우에는 그에 대한 자료

라. 「원자력안전법」에 의한 방사성동위원소이동사용허가증 또는 방사선발생장치 이동사용 허가증의 사본 1부

마. 사무실의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도지사는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그 신청이 영 제14조제1항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등록증을 교부하고, 제출된 기술인력자의 기술자격증에 그 기술인력자가 해당 탱크시험기관의 기술인력자임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5. 등록사항 변경신고(규칙 제61조)

본 조는 등록된 탱크시험자가 등록된 사항 중 중요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이를 30일 이내에 신고토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관할 행정기관에서 변경으로 인한 등록기준의 적정여부의 확인 및 변경으로 인한 각종 사항을 정리함으로써 실질적인 감독권 행사의 효율성을 기하고 간접적으로 탱크시험자에게 부담을 주어 관련 업무의 적정기준 준수를 담보하고 있다.

변경사항의 신고는 규칙 별지 제38호 서식(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 변경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러한 신고서를 수리한 때에는 등록증을 새로 교부하거나 제출된 등록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고, 기술자격증에는 그 변경된 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가. 영업소 소재지의 변경

- 사무소의 사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등록증

나. 기술능력의 변경

- 변경하는 기술인력의 자격증과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등록증

다. 대표자의 변경

-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등록증

라. 상호 또는 명칭의 변경

-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등록증

6.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관할 행정기관인 시·도지사가 법률이 정한 일정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탱크시험자에 대하여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통하여 그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것을 말하여 이는 위반에 대한 직접적인 조치라는 제재의 수단과 동시에 평상시에 위반을 하지 아니하고 관련 법령을 준수토록 하는 간접적인 기능(일반 예

방적 기능)도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제재조치는 다른 제재수단으로도 위반상태를 시정할 방법이 없을 때 내리는 가장 강력하며, 최종적인 조치라 할 수 있는 바 이는 바로 행정객체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처분이므로 그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법률적인 근거를 두어야 하며 처분 시에도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행정관련 법상 대부분의 취소는 행정기관이 국민에게 이익을 주기로운 행위 즉 허가·인가·등록·면허·인증 등의 효과를 장래에 향하여 배제하는 것으로 강학상의 철회에 해당하는 개념이며 본 조에서도 등록의 취소는 강학상 철회에 해당한다.

시·도지사의 본 조에 의한 등록취소라는 행정처분은 가장 강력하고 최종적인 것이므로 그 요건은 명확하게 법률로써 규정하여 행정청의 무분별한 행정권의 행사를 방지하고 있으며 이 법 제29조에서는 탱크시험자의 등록취소 시 청문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취소 처분 시 한 번 더 신중과 공정을 기하도록 하고 있다.

탱크시험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규칙 별표 2)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법 제16조 제5항	등록취소		
(2) 법 제16조제4항 각호의 1의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법 제16조 제5항	등록취소		
(3) 다른 자에게 등록증을 빌려 준 경우	법 제16조 제5항	등록취소		
(4) 법 제16조제2항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 제16조 제5항	업무정지30일	업무정지60일	등록취소
(5) 탱크안전성능시험 또는 점검을 허위로 하거나 이 법에 의한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탱크안전성능시험 또는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등 탱크시험자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16조 제5항	업무정지30일	업무정지90일	등록취소

제4절 예방규정

- 제17조(예방규정)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당해 제조소등의 화재예방과 화재 등 재해발생시의 비상조치를 위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방규정을 정하여 당해 제조소등의 사용을 시작하기 전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예방규정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예방규정이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화재예방이나 재해발생시의 비상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려하거나 그 변경을 명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관계인과 그 종업원은 예방규정을 충분히 잘 익히고 준수하여야 한다.

1. 의 의

예방규정은 위험물시설에 있어서 위험물을 제조·저장·취급과 운반방법 및 위험물의 누출·화재·폭발 등으로 인한 각종 위해의 예방과 유사시 비상조치계획을 수립, 위험물제조소 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각종 위해의 사전예방 및 체계적인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장 내부규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예방규정은 일정규모 이상의 제조소등에 있어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감독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해당 위험물제조소등에 합치되는 실질적인 규정인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나아가 변경조치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반 모든 비상대응계획이 그러하듯이 준수되지 아니하고 실현가능성이 없는 비상계획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만 못하므로 예방규정의 준수 의무를 관계인뿐만 아니라 그 종업원에게까지 두고 있어 실현가능성과 실질적인 예방규정이 되도록 담보하고 있다. 이를 통해 위험물의 위해성으로 인한 제조소등의 일차적인 안전, 나아가 주변 또는 불특정 다수의 인명 및 재산의 피해로부터의 안전을 확보하고 있다.

2.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제조소등(영 제15조)

가.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인 제조소

나.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인 옥외저장소

다. 지정수량의 150배 이상인 옥내저장소

라. 지정수량의 200배 이상인 옥외탱크저장소

마. 임반탱크저장소

바. 이송취급소

사.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인 일반취급소. 다만, 제4류 위험물(특수인화물을 제외한다)만을 지정수량의 50배 이하로 취급하는 일반취급소(제1석유류·알코올류의 취급량이 지정수량의 10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1) 보일러, 버너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장치로 위험물을 소비하는 것
- 2) 위험물을 용기에 다시 옮겨 담거나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주입하는 일반취급소

3. 예방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규칙 제63조)

가. 위험물의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의 직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

나. 안전관리자가 여행·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의 대리자에 관한 사항

- 다.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소방대를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자체소방대의 편성과 화학소방자동차의 배치에 관한 사항
- 라. 위험물의 안전에 관계된 작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 마. 위험물시설 및 작업장에 대한 안전순찰에 관한 사항
- 바. 위험물시설·소방시설 그 밖의 관련시설에 대한 점검 및 정비에 관한 사항
- 사. 위험물시설의 운전 또는 조작에 관한 사항
- 아. 위험물 취급 작업의 기준에 관한 사항
- 자. 이송취급소에 있어서는 배관공사 현장책임자의 조건 등 배관공사 현장에 대한 감독체제에 관한 사항과 배관주위에 있는 이송취급소 시설 외의 공사를 하는 경우 배관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 차. 재난 그 밖의 비상시의 경우에 취하여야 하는 조치에 관한 사항
- 카. 위험물의 안전에 관한 기록에 관한 사항
- 타.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를 명시한 서류와 도면의 정비에 관한 사항
- 파. 그 밖에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5절 정기점검 및 정기검사

제18조(정기점검 및 정기검사)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그 제조소등에 대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기점검의 대상이 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 가운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부터 당해 제조소등이 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유지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의 의

이 법은 제6조에서 위험물제조소등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허가를 얻도록 하고 제14조에서는 설치된 제조소등의 관계인에게 유지·관리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본 조는 일정규모 이상의 제조소등에 있어서 관계인의 유지·관리업무의 적정행위를 담보하기 위하여 일차적으로 관계인에게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규정하고 나아가 점검의 적정여부 및 유지관리상태의 확인 등의 차원에서 실질적인 책임기관인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정기적인 검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위험물제조소의 시공-완공-사용-폐지 등 전반에 걸쳐서 일련의 안전을 확보하고 있다.

본 조에서 제조소등의 관계인에게 각종 시설의 유지 및 관리의 의무와 점검의 의무를 두고 있는 것은 위험물의 위해성을 미리 예방하기 위하여 제조소등이 평상시에도 항상 적정·유지 관리되도록 하기 위함이며, 관할 소방행정기관에의 검사는 제조소등에 있어서의 안전을 한 번 더 확보하여 2차, 3차의 안전장치를 두어 위험물의 위해로부터의 안전이라는 이 법의 목적을 실현코자 하는 것이다.

2. 정기점검

“점검”이란 관계인이 제조소등에 대하여 이 법령이 정하는 각종 기술기준에 적합

여부를 확인·검사하는 관계인 등에 의한 자체점검을 말한다.

가. 정기점검 대상 제조소등(영 제16조)

- 1) 제4절의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제조소등
- 2) 지하탱크저장소
- 3) 이동탱크저장소
- 4) 위험물을 취급하는 탱크로서 지하에 매설된 탱크가 있는 제조소·주유취급소 또는 일반취급소

나. 점검구분과 점검횟수

위의 정기점검 대상의 제조소등은 연 1회 이상의 정기점검을 실시한다. 그러나 그 탱크 중 특정옥외탱크저장소(옥외탱크저장소 중 저장 또는 취급하는 액체 위험물의 최대수량이 100만리터 이상인 것)의 탱크는 추가로 구조안전점검을 실시해야한다.

점검구분	점검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 검 내 용	횟수
일반 점검	○ 정기점검 대상	○ 위험물안전관리자 ○ 안전관리대행기관, 탱크시험자(안전관리자의 입회) ○ 위험물운송자(이동탱크저장소)	○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 연 1회 이상
구조 안전 점검	○ 일반점검 대상 중 100만 리터 이상의 액체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옥외탱크저장소	○ 탱크시험자(안전관리자 입회) ※구조안전점검을 위험물안전관리자가 실시하는 경우에는 점검 내용에 대한 지식, 기능 및 인력과 장비를 갖추어야한다.	○ 점검내용·방법상 기준 ⇒ 국민안전처 장관이 고시(위험물안전 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제8장)	○ 완공검사필증 교부일로부터 12년 이내에 1회 이상 ○ 최근 정기 검사 받은날로부터 11년(연장신청시는 13년)이내에 1회 이상

3. 정기검사

검사라 함은 관할행정기관인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관계인의 유지·관리의 무 및 시설 등에 대한 적정·적법여부를 확인 검사하는 ‘행정기관에 의한 검사행위’를 말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정기검사는 업무의 위탁규정(영 제22조)에 의해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실시하고 있다.

가. 정기검사 대상 제조소

액체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100만 리터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가 그 대상이며 이를 ‘특정옥외탱크저장소’라 한다.

나. 정기검사의 시기(규칙 제70조)

- 1) 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설치허가에 따른 완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12년 또는 최근의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11년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난 그 밖의 비상사태의 발생, 안전유지상의 필요 또는 사용상황 등의 변경으로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방서장의 직권 또는 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소방서장이 따로 지정하는 시기에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다.
- 2) 법 제18조제2항에 의하여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관계인은 위 1)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기검사를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때에 함께 받을 수 있다.

다. 정기검사의 신청(규칙 제71조)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관계인은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술원에 제출하고 수수료를 기술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 1) 정기검사 신청서
- 2) 별지 제5호서식의 구조설비명세표
- 3)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에 관한 도면
- 4) 완공검사필증 및 최근의 정기검사필증 사본

5) 밀판, 옆판, 지붕판 및 개구부의 보수이력에 관한 서류

소방산업기술원은 정기검사를 실시한 결과 특정옥외저장탱크의 수직도·수평도에 관한 사항(지중탱크에 대한 것을 제외한다), 특정옥외저장탱크의 밀판(지중탱크에 있어서는 누액방지판)의 두께에 관한 사항, 특정옥외저장탱크의 용접부에 관한 사항 및 특정옥외저장탱크의 지붕·옆판·부속설비의 외관이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검사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46호서식의 정기검사필증을 관계인에게 교부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정기검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하여야 하는 사항을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개선할 사항을 통보받은 관계인은 개선을 완료한 후 정기검사신청서를 기술원에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라. 정기검사의 방법 등(규칙 제72조)

- 1) 정기검사는 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특성을 감안하여 안전성 확인에 적합한 검사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2) 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관계인이 구조안전점검시에 특정옥외저장탱크의 수직도·수평도에 관한 사항(지중탱크에 대한 것을 제외한다), 특정옥외저장탱크의 밀판(지중탱크에 있어서는 누액방지판)의 두께에 관한 사항, 특정옥외저장탱크의 용접부에 관한 사항 및 특정옥외저장탱크의 지붕·옆판·부속설비의 외관 등의 사항을 미리 점검한 후에 정기검사를 신청하는 때에는 그 사항에 대한 정기검사는 전체의 검사범위 중 임의로 부위를 발취하여 검사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 3) 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변경허가에 따른 탱크안전성능검사의 기회에 정기검사를 같이 실시하는 경우에 있어서 검사범위가 중복되는 때에는 해당 검사범위에 대한 어느 하나의 검사를 생략한다.

제6절 자체소방대

제19조(자체소방대) 다량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제조소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이 있는 동일한 사업소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 당해 사업소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소에 자체소방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의 의

“자체소방대”란 제조소등의 관계인에 의하여 제조소등의 화재·폭발 및 유출 등의 각종 위험물의 사고로부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인력과 장비를 갖춘 소방조직을 말한다.

본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험물제조소등은 그 규모가 크며 또한 취급하고 있는 위험물이 성질상 화재 등 유사시 즉각적인 초동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폭발, 주변탱크의 연소 등 2차, 3차의 피해로 순식간에 전이될 수 있는 대상인 바, 자체적으로 소방대를 두어 유사시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고 한편으로는 소방관서의 소방력이 미처 대처하지 못하는 공백부분을 보충하도록 하고 있다.

2. 자체소방대를 두어야 하는 제조소등(영 제18조 및 규칙 제73조)

가. 제조소: 제4류 위험물을 지정수량 3천배 이상 취급하는 제조소

나. 일반취급소: 제4류 위험물을 지정수량 3천배 이상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다만, 다음의 일반취급소는 제외한다.

- 1) 보일러, 버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치로 위험물을 소비하는 일반취급소
- 2) 이동저장탱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위험물을 주입하는 일반취급소
- 3) 용기에 위험물을 옮겨 담은 일반취급소
- 4) 유압장치, 윤활유순환장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치로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5) 「광산보안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취급소

3. 자체소방대 편성기준(영 제18조 및 별표8)

자체소방대 편성에 필요한 화학소방차와 최소인원은 다음의 표와 같다.

자체소방대에 두는 화학소방자동차 및 인원

사업소의 구분	화학소방자동차	자체소방대원의 수
1.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 수량의 합이 지정수량의 12만배 미만인 사업소	1대	5인
2.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 수량의 합이 지정수량의 12만배 이상 24만배 미만인 사업소	2대	10인
3.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 수량의 합이 지정수량의 24만배 이상 48만배 미만인 사업소	3대	15인
4.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 수량의 합이 지정수량의 48만배 이상인 사업소	4대	20인

※ 비교: 화학소방자동차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소화능력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하고, 소화활동에 필요한 소화약제 및 기구(방열복 등 개인장구를 포함한다)를 비치하여야 한다.

가. 자체소방대 편성의 특례(규칙 제74조)

둘 이상의 사업소가 상호응원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소를 하나의 사업소로 보고 제조소 또는 취급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을 합산한 양을 하나의 사업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으로 간주하여 동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화학소방자동차의 대수 및 자체소방대원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호응원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각 사업소의 자체소방대에는 위의 표에 의한 화학소방차 대수의 2분의 1 이상의 대수와 화학소방자동차마다 5인 이상의 자체소방대원을 두어야 한다.

나. 화학소방차의 기준(규칙 제75조 및 별표23)

화학소방자동차(내폭화학차 및 제독차를 포함한다)에 갖추어야 하는 소화능력 및 설비의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이 중에 포수용액을 방사하는 화학소방자동차의 대수는 영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화학소방자동차의 대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화학소방자동차에 갖추어야하는 소화능력 및 설비의 기준

화학소방 자동차의 구분	소화능력 및 설비의 기준
포수용액 방사차	포수용액의 방사능력이 매분 2,000ℓ 이상일 것
	소화약액탱크 및 소화약액혼합장치를 비치할 것
	10만ℓ 이상의 포수용액을 방사할 수 있는 양의 소화약제를 비치할 것
분말 방사차	분말의 방사능력이 매초 35kg 이상일 것
	분말탱크 및 가압용가스설비를 비치할 것
	1,400kg 이상의 분말을 비치할 것
할로겐화합물 방사차	할로겐화합물의 방사능력이 매초 40kg 이상일 것
	할로겐화합물탱크 및 가압용가스설비를 비치할 것
	1,000kg 이상의 할로겐화합물을 비치할 것
이산화탄소 방사차	이산화탄소의 방사능력이 매초 40kg 이상일 것
	이산화탄소저장용기를 비치할 것
	3,000kg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비치할 것
제독차	가성소오다 및 규조토를 각각 50kg 이상 비치할 것

제 5 장 | 위험물의 운반 등

위험물은 사용하는 것이 목적인 관계로 일반적으로 정지 또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유동적이고 이동성이 많다. 고정된 위험물의 경우에는 유지·관리 및 점검으로 그 위험성을 통제할 수 있지만 유동적이며 유통·이동되고 있는 위험물의 경우에는 예상치 못한 사고나 누출이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많아 운반 및 취급에 있어서 특히 주의가 요구된다 할 것이다.

이 장은 이러한 위험물의 운반·운송 등에 있어서의 시설 및 취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험물의 저장·취급, 운반·운송·유통에 따르는 사용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안전을 담보하여 위험물의 목적에 부합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1절 위험물의 운반

제20조 (위험물의 운반) ① 위험물의 운반은 그 용기·적재방법 및 운반방법에 관한 다음 각호의 중요기준과 세부기준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1. 중요기준 : 화재 등 위해의 예방과 응급조치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거나 그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직접적으로 화재를 일으킬 가능성이 큰 기준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기준
2. 세부기준 : 화재 등 위해의 예방과 응급조치에 있어서 중요기준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영향을 미치거나 그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간접적으로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기준 및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표시와 서류기구 등의 비치에 관한 기준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기준

② 시도지사는 운반용기를 제작하거나 수입한 자 등의 신청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운반용기를 검사할 수 있다. 다만,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대형의 운반용기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을 제작하거나 수입한 자 등은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용기를 사용하거나 유통시키기 전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운반용기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위험물의 운반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일정구역 내에서 위험물의 사용 또는 취급을 위하여 위험물을 용기에 담아 이동시키는 것을 말한다. 본 조는 위험물의 운반에 대한 용기·적재방법 및 운반방법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위험물을 이용하면서 발생될 수 있는 각종 위해를 방지코자 하는 것이다.

이 법 제5조에서는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 있어서 중요기준과 세부기준으로 구분하여 적정하게 저장 및 취급하도록 규정한 것과 같이 본 조에서도 위험물의 운반 등과 관련하여 중요기준과 세부기준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이를 적정 준수토록 하고 있다. 운반에 있어 가장 일차적인 안전요소가 되는 운반용기에 있어서는 제작 또는 수입할 경우 그 적정여부를 검사하도록 하고, 운반용기를 사용할 때에는 검사를 받은 후에 사용하도록 하여 위험물의 운반과 관련한 안전을 확보하고 있다.

제2절 위험물의 운송

제21조 (위험물의 운송) ① 이동탱크저장소에 의하여 위험물을 운송하는 자(운송책임자 및 이동탱크저장소운전자를 말하며, 이하 “위험물운송자”라 한다)는 당해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자 또는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험물의 운송에 있어서는 운송책임자(위험물 운송의 감독 또는 지원을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감독 또는 지원을 받아 이를 운송하여야 한다. 운송책임자의 범위, 감독 또는 지원의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③ 위험물운송자는 이동탱크저장소에 의하여 위험물을 운송하는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는 등 당해 위험물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1. 의 의

운반, 운송, 이송은 모두 위험물을 이동시킨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이동시키는 수단에 따라 그 의미가 구분된다. 위험물을 이동탱크저장소를 이용하여 이동시키는

경우는 “운송”이라고 하고, 이동탱크 외의 차량이나 용기에 의하여 위험물을 옮기는 경우는 “운반”이라고 한다. “이송”은 이송취급소의 정의(영 별표3)에서 보듯 배관 및 이에 부착된 설비에 의하여 위험물을 이동시키는 것이다.

허가 받은 이동탱크를 이용하여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운송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자격(위험물운송자증)이 필요하지만, 이동탱크가 아닌 일반 차량이나 수레 등을 이용하여 운반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자격이 필요 없이 운반 기준만 준수하면 된다. 이송의 경우에는 이송취급소로 허가를 받은 제조소등이므로 위험물안전관리자가 필요하다.

위험물의 운송은 주로 장거리인 관계로 전복과 같은 예기치 못한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며 운송 중 누출·화재 등은 소방상의 위해뿐만 아니라 토양오염 등의 환경상의 위해와 유독가스의 발생 등 불특정 다수인의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특히 위험물사고에 있어서의 조치는 해당 위험물의 성상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관계로 본 조는 먼저 운송하는 위험물에 있어서의 안전확보를 일차로 하고 나아가 사고 등의 발생 시 적정조치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격자 또는 위험물과 관련한 일정의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운송토록 하고 있으며 일정규모 이상 또는 특정의 위험물을 운송할 때에는 위험물운송책임자의 감독 또는 지원하에 운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위험물 운송자

가. 위험물 운송책임자(규칙 제52조)

- 1) 정의: 위험물 운송에 있어서 운송의 감독 또는 지원하는 자
- 2) 자격요건: 해당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고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안전처장관(한국소방안전협회)이 실시하는 위험물의 운송에 관한 안전교육을 수료하고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나. 이동탱크저장소에 의하여 위험물을 운송하는 운전자

- 1) 자격요건: 위험물 취급에 관한 국가기술자격자 또는 한국소방안전협회에서

실시하는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은 자

2) 의무: 위험물 운송 시 운송 기준을 준수하는 등 당해위험물의 안전확보

다. 운송책임자의 감독 또는 지원을 받아 운송하여야 하는 위험물(영 제19조)

알킬알루미늄, 알킬리튬 또는 이들 중 하나 이상을 함유한 위험물을 운송하는 경우에는 운송책임자의 감독 또는 지원을 받아 운송하여야 한다.

위험물 운송책임자의 감독 또는 지원의 방법과 위험물의 운송시에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⁴⁶⁾

1. 운송책임자의 감독 또는 지원의 방법은 다음 각목의 1과 같다.

가. 운송책임자가 이동탱크저장소에 동승하여 운송 중인 위험물의 안전확보에 관하여 운전자에게 필요한 감독 또는 지원을 하는 방법. 다만, 운전자가 운반책임자의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운반책임자의 자격이 없는 자가 동승할 수 있다.

나. 운송의 감독 또는 지원을 위하여 마련한 별도의 사무실에 운송책임자가 대기하면서 다음의 사항을 이행하는 방법

- 1) 운송경로를 미리 파악하고 관할 소방관서 또는 관련 업체(비상대응에 관한 협력을 얻을 수 있는 업체를 말한다)에 대한 연락체계를 갖추는 것
- 2) 이동탱크저장소의 운전자에 대하여 수시로 안전확보 상황을 확인하는 것
- 3) 비상시의 응급처치에 관하여 조언을 하는 것
- 4) 그 밖에 위험물의 운송중 안전확보에 관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감독 또는 지원하는 것

2. 이동탱크저장소에 의한 위험물의 운송시에 준수하여야 하는 기준은 다음 각목과 같다.

가. 위험물운송자는 운송의 개시전에 이동저장탱크의 배출밸브 등의 밸브와

46)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

폐쇄장치, 맨홀 및 주입구의 뚜껑, 소화기 등의 점검을 충분히 실시할 것
 나. 위험물운송자는 장거리(고속국도에 있어서는 340km 이상, 그 밖의 도로에 있어서는 200km 이상을 말한다)에 걸치는 운송을 하는 때에는 2명 이상의 운전자로 할 것. 다만,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운송책임자를 동승시킨 경우
- 2) 운송하는 위험물이 제2류 위험물·제3류 위험물(칼슘 또는 알루미늄의 탄화물과 이것만을 함유한 것에 한한다) 또는 제4류 위험물(특수인화물을 제외한다)인 경우
- 3) 운송도중에 2시간 이내마다 20분 이상씩 휴식하는 경우

다. 위험물운송자는 이동탱크저장소를 휴식·고장 등으로 일시 정차시킬 때에는 안전한 장소를 택하고 해당 이동탱크저장소의 안전을 위한 감시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등 운송하는 위험물의 안전확보에 주의할 것

라. 위험물운송자는 이동저장탱크로부터 위험물이 현저하게 새는 등 재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재난을 방지하기 위한 응급조치를 강구하는 동시에 소방관서 그 밖의 관계기관에 통보할 것

마. 위험물(제4류 위험물에 있어서는 특수인화물 및 제1석유류에 한한다)을 운송하게 하는 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위험물안전카드를 위험물운송자로 하여금 휴대하게 할 것

바. 위험물운송자는 위험물안전카드를 휴대하고 당해 카드에 기재된 내용에 따를 것. 다만, 재난 그 밖의 불가피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기재된 내용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장 | 감독 및 조치명령

모든 법은 그 실효성이 확보될 때 비로소 그 의미가 있으며 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끊임없는 적절한 감독과 관리 및 위반사항이 발견되었을 때는 합리적이며 비례적이고 단호한 시정조치 등이 즉각적으로 취하여야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본 법에서는 관할행정기관에 감독 및 조치명령권을 부여하고 규정함으로써 상대방에 대한 적법한 법의 준수 및 의무이행의 부담을 가지도록 하여 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관할 행정기관의 위험물제조소등 및 관련사항에 대한 각종 명령 및 처분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으로는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및 관계인에 대한 출입·검사에 관한 사항, 탱크시험자에 대한 감독권의 행사, 무허가위험물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제조소등에 대한 긴급조치권, 저장·취급기준 준수명령, 위험물의 유출시 응급조치·통보 및 조치명령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1절 출입·검사 등

제22조(출입·검사 등) ① 국민안전처장관(중앙119구조본부장 및 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제22조의2에서 같다)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따른 화재의 예방 또는 진압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의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장소에 출입하여 그 장소의 위치·구조·설비 및 위험물의 저장·취급상황에 대하여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하고 시험에 필요한 최소한의 위험물 또는 위험물로 의심되는 물품을 수거하게 할 수 있

다. 다만, 개인의 주거는 관계인의 승낙을 얻은 경우 또는 화재발생의 우려가 커서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출입할 수 없다.

② 소방공무원 또는 국가경찰공무원은 제21조 제1항에 따른 위험물의 운송 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행 중의 이동탱크 저장소를 정지시켜 당해 이동탱크저장소에 승차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교육수료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교육수료증을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신원확인을 위한 증명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거나 신원확인을 위한 질문을 할 수 있다. 이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있어서 소방공무원과 국가경찰공무원은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출입·검사 등은 그 장소의 공개시간이나 근무시간 내 또는 해가 뜬 후부터 해가 지기 전까지의 시간 내에 행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관계인의 승낙을 얻은 경우 또는 화재발생의 우려가 커서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 등을 행하는 관계공무원은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출입·검사 등을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탱크시험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사무소에 출입하여 업무의 상황·시험기구·장부·서류와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출입·검사 등을 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1. 의 의

출입·검사는 위험물과 관련한 화재예방 또는 진압대책을 위하여 관할 행정기관인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위험물취급 인정장소의 위치·구조·설비 및 위험물의 저장·취급사항에 대하여 이 법령에의 적법여부 및 안전관리 상태 등을 파악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화재위험요인의 제거와 법령위반 및 불량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및 보완대책을 수립하고 나아가 관련자료 등을 기록 관리함으로써, 각종 위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위험물의 위해로부터 공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관할 행정관청의 일련의 행위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출입·검사는 관할 행정관청이 화재예방상 안전을 도모 또는 진압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해당 관련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작위하명-자료제출명령) 직접 대상물에 출입하여 그 장소의 위치·구조·설비 및 위험물의 저장·취급상황에 대하여 질문하는 행위(즉시강제) 및 위험물로 의심되는 물품의 일부를 수거하는(즉시강제) 등의 행정형식을 통하여 행하는 일련의 법 집행행위이다.

이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하여야 할 점은 출입·검사를 받게 되는 관계인의 입장과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행정서비스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통상적이고 예정된 출입·검사라 할지라도 민원인에게는 정상적인 영업활동 및 생산활동에 유·무형의 직접적인 또는 간접적인 불이익과 손해를 끼칠 수 있으며, 갑작스런 방문이나 검사 등은 정당한 법집행과정이라도 관계인에게는 더욱 강한 부담을 줄 여지가 많은 만큼 방문횟수의 최소화와 불필요한 시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본 조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방특별조사 제도’와 그 취지와 기능이 유사하며 이 법에서는 위험물과 관련된 사항이란 점에서, 물품을 수거하는 즉시강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차이가 있다.

2. 출입·검사의 수단

가.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

이는 소방검사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소방상 관계사항에 대하여 설명·해명·자료를 요구하는 행위이다.

- 1) 명령의 주체: 국민안전처장관(중앙119구조본부장 및 그 소속 기관의 장 포함),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 2) 명령의 성격: 행정상 작위하명
- 3) 명령의 객체: 위험물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의 관계인 및 탱크시험자
- 4) 명령의 요건: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따른 화재의 예방 또는 진압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때

이때의 필요성은 명령권자 즉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재량에 의존한다고 할 수 있으며 그 필요성의 정도는 구체적이고 개연성에 있어 엄격히 강화된 필요성이 아닌 명령권자의 합리적인 판단 및 경험상에 비추어 화재의 위험성이 존재하여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나 본 조에서의 출입·검사 대상이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고 있다고 인정이 되는 장소”라고 하여 인정이 되는 장소의 판단에 있어서는 합리성이 뒷받침 되어야할 것이다.

- 5) 보고 또는 자료제출 사항: “화재의 예방 및 진압대책상 필요한” 관계 자료를 말하며 이때 자료라 함은 당해 장소에 있어서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과 관련한 사항에 있어 화재예방 및 진압대책상의 필요한 자료를 말하며 관계인의 하명에 대한 수인 정도를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자료의 요청은 화재와 또는 진압대책과 관련한 사항이어야 한다.

나. 출입검사

출입·검사란 행정기관이 그 감독 하에 있는 사업자와 해당 법률의 집행에 관계있는 자 등에게 사업이나 영업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이들이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장부, 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조사)하는 것을 말하며, 이 법의 목적을 이행하기 위하여 화재의 예방 또는 진압대책상 필요한 때 관계 공무원이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 직접 출입하여 각종 사항을 검사·질문 및 필요한 물품을 수거함으로써 위험물과 관련한 화재 등의 각종 위해를 최소화하고 화재진압의 효율성을 기하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일련의 소방행정 활동을 말한다.

1) 출입검사의 제한

가) 시간적 제한

- 해당 장소의 공개 또는 근무 시간 내
- 주간(해뜨은 후부터 해지기 전)

예외: 관계인의 승낙 또는 화재발생우려가 커서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 공개시간이라 함은 영업시설의 경우는 영업의 종료·전시시설의 경우는 실제 전시시간을 말하고, 유흥시설 등은 밤늦게 영업을 하므로 이때도 공개시간으로 볼 수 있다.

나) 개인주거에 있어서 제한

○ 개인의 주거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예외: 관계인의 승낙 또는 화재발생우려가 커서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2) 출입검사와 물품수거

본 조는 위험물 또는 위험물로 의심되는 물품에 대하여 시험에 필요한 최소한의 양을 수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입검사 자체가 강제처분(행정상 즉시강제)의 형식으로 행하여지므로 이러한 강제처분인 출입검사를 할 때에도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상대방에게 최소한의 침해가 가는 방법을 선택하여 행하여야 할 것이며 나아가 필요한 물품을 수거할 때에는 특히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잉금지 원칙을 준수하여 필요한 최소한에 한하여야 할 것이며 수거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사후통보 또는 반환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

다. 질 문

소방행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행정의 주체가 관계 장소 위치·구조·설비 및 위험물의 저장·취급상황에 관하여 관계인에게 설명을 구하는 행위로서 검사를 위한 보충적인 개념으로 이해된다.

라. 출입·검사의 결과조치

출입·검사 등을 행하는 관계공무원은 법 또는 법에 근거한 명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그 내용을 기재한 규칙 별지 제 47호 서식(위험물제조소등 소방검사서)의 사본을 검사현장에서 제조소등의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상에서 주행 중인 이동탱크저장소를 정지시켜 검사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출입·검사자의 의무

가.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의 제시의무

이때의 증표는 출입검사행위의 실체요건이 아니며 절차적인 요건이라 할 수

있다. 즉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한 출입검사 행위라도 유효한 행위가 된다. 하지만 증표 제시를 하지 않음을 이유로 관계인이 출입검사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방해금지의 의무

다. 출입검사 수행 시 업무상 알게 된 비밀누설금지 의무

라. 개인의 주거에 있어서는 승낙을 받을 의무

4. 이동탱크 운송자에 대한 강제처분

이 법이 제정되면서 위험물의 운반 및 운송에 관한 사항에 대한 조치가 강화되었으며 제2항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가장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이동탱크저장소에 의한 위험물 운송의 경우 화재 또는 사고에 따른 위험의 대부분이 도로상의 주행 중인 차량에서 발생하고 있는 바, 도로상의 운행 중인 위험물운송 차량에 대해서도 화재 등에 의한 위험물 폭발 또는 누출사고로 인한 인명·재산상의 피해 방지를 위해 경찰공무원 또는 소방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험물 운송차량을 일시 정지시켜서 위험물 취급자격 구비여부에 대해 확인·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제2절 위험물 누출 등의 사고 조사

제22조의2(위험물 누출 등의 사고 조사) ①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위험물의 누출·화재·폭발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의 원인 및 피해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에 관하여는 제22조제1항·제3항·제4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 ③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사고 조사에 필요한 경우 자문을 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된 사고조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방기본법 제5장과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에 의하여 화재조사 규정은 마련되어 있었으나 위험물 누출관련 조사규정이 없었는데 본 규정이 신설 되면서 누출사고 등에 대한 조사권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고, ④항에 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데 아직 세부 사항은 마련되지 않고 있으나 곧 마련될 것으로 생각 합니다.

사고조사 방법은 법 제22조를 준용하여 출입검사의 방법에 준하여 실시하고, 사고조사와 관련하여 자료제출명령이나, 사고조사 등에 불응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할 수 있다.

☞ 누출사고사례 : 2014년 4월 울산에 위치한 원 저장탱크에서 내부 기름을 썰어 주는 장치인 믹서기 축이 이탈하면서 균열이 발생해 원유 15만4000배럴의 원유가 유출되는 사고로 인하여 인근 토양 11제곱미터가 오염됐으며, 사고방제에 나섰던 공장직원 243명과 소방관219명, 인근주민 16명 등이 폭발 등의 위험에 노출됐고, 초지정화 비용 50억원, 원유 유출비용 102억원 등 총 152억원 상당의 재산패해가 발생됐다.

제3절 탱크시험자에 대한 명령

제23조(탱크시험자에 대한 명령)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탱크 시험자에 대하여 당해 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본 조는 제22조제5항의 탱크시험자에 대한 출입·검사와 함께 탱크시험자의 이 법에 따른 업무수행 및 적정업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감독권 행사에 관한 규정이다.

이 법에서 탱크시험자에 대한 자격부여규정을 둔 목적은 위험물제조소등에 있어서 위험물의 위험성을 가장 일차적으로 방호하는 탱크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과 제조소등의 정기검사 및 점검의 일부를 담당토록 하여 설치된 위험물의 안전 관리·유지를 통하여 위험물의 위해로부터 공공안전을 확보하고자 함이다.

공익의 목적을 위하여 특정인으로 하여금 이 법이 정한 일정한 업무를 하도록 하고 있는 바, 본 조에서 탱크시험자의 업무수행이 적정하지 않는 경우 또는 감독상 필요할 경우 관할행정기관에서 부적정함을 바로잡고 필요한 사항에 대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탱크시험자의 적정업무,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의 적정 이행을 담보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다.

이 규정 외에도 이 법 제16조제6항에서는 탱크시험자에게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따라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의무지우고 있다.

제4절 무허가장소의 위험물에 대한 조치명령

제24조(무허가장소의 위험물에 대한 조치명령)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위험물에 의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자(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위험물 및 시설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의 의

이 법 제5조에서는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조소등에서 저장·취급토록 하고 있으며 제6조에서는 제조소등의 설치 또는 변경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의 사전 허가를 받

도록 규정 하고 있는바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함에 있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지않고 저장 또는 취급하는 모든 위험물을 무허가장소의 위험물 이라 하며 본 조는 이에 대한 조치권을 됴으로서 적정·적법하게 설치·유지·관리되지 않는 위험물을 제거토록 하여 무허가 위허물로 인한 각종 위해를 방지하고자 하고 있으며 또한 이법 제6조의 위험물제조소의 설치시에는 허가를 받도록 간접적으로 강제하고 있다

2.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할 수 있는 자

가. 주택의 난방시설(공동주택의 중앙난방시설을 제외한다)을 위한 저장소 또는 취급소를 설치한 자

나. 농예용·축산용 또는 수산용으로 필요한 난방시설 또는 건조시설을 위한 지정수량 20배 이하의 저장소를 설치한 자

제5절 제조소등에 대한 긴급 사용정지명령 등

제25조(제조소등에 대한 긴급 사용정지명령 등)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거나 재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에 대하여 당해 제조소등의 사용을 일시정지하거나 그 사용을 제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위험물 제조소등에 있어서의 화재·폭발·누출 등은 해당 시설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따라 사회·환경적인 재난으로 확대될 수 있다. 이러한 관계로 위험물 시설 등은 필요시에 적정 통제될 필요가 있으며 또한 화재현장 및 각종 재난·재해현장에 있어서 위험물의 사용 및 공급 등은 자칫 상황을 더욱 악화 시킬 수 있으며, 각종 재난 등의 소방상황이 아니더라도 유독가스의 발생, 누출 등으로 인한

확산 등의 상황에 있어서도 관할 행정기관이 위험물 제조소등에 대하여 필요시 사정정지 또는 제한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재해의 예방과 위기 상황 등을 적정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본 조의 관계인에 대한 처분은 관계인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중대한 제한에 해당됨으로 공공의 안전유지, 긴급성등을 그 처분의 요건으로 규정하여 제한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다.

제6절 저장·취급기준 준수명령 등

제26조(저장·취급기준 준수명령 등) ①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이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제조소등의 관계인에 대하여 동항의 기준에 따라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관할하는 구역에 있는 이동탱크저장소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이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이동탱크저장소의 관계인에 대하여 동항의 기준에 따라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동탱크저장소의 관계인에 대하여 명령을 한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이동탱크저장소의 허가를 한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속히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본 조는 이 법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준 준수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다.

제5조제3항은 제조소등이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함에 있어서 그 기준의 위반 시 화재발생 위험정도 및 해당 기준이 화재의 예방과 응급조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따라 중요기준과 세부기준으로 구분하여 제조소등 관계인이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할 때 준수토록 하고 있으며, 본 조는 이를 위반한 제조소등의 관계인에 대하여 위반사항을 시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있어서

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이동탱크의 경우 이동성이 있는 저장소라는 특성상 ‘허가청’과 본 조에 의하여 처분을 한 ‘처분청’이 다른 경우가 많은 데 이때 이 법에 의하여 처분청이 허가청에 다음의 사항을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적정 관리·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 명령을 한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 명령을 받은 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 명령에 관계된 이동탱크저장소의 설치자, 상치장소 및 설치 또는 변경의 허가번호
- 위반내용
- 명령의 내용 및 그 이행사항
- 그 밖에 명령을 한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통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절 응급조치·통보 및 조치명령

제27조(응급조치·통보 및 조치명령) ①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당해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의 유출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그리고 지속적으로 위험물의 유출 및 확산의 방지, 유출된 위험물의 제거 그 밖에 재해의 발생방지를 위한 응급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태를 발견한 자는 즉시 그 사실을 소방서, 경찰서 또는 그 밖의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제1항의 응급조치를 강구하지 아니 하였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응급조치를 강구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그 관할하는 구역에 있는 이동탱크저장소의 관계인에 대하여 제3항의 규정의 예에 따라 제1항의 응급조치를 강구하도록 명할 수 있다.

본 조는 제조소등 관계인에게 유출 등 각종 사고의 발생 시 사고확대 방지 및 재

해로의 확대 방지 등을 위하여 응급조치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규정이다. 유출된 위험물은 급속히 확산 또는 유증기 등을 통하여 위해성이 증대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2차 위험인 폭발 또는 대규모 재해로의 확대가 급속하게 이루어지는 속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위험물의 사고에 있어서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이 신속·적정한 응급조치이다.

이러한 응급조치 및 사고수습의 일차적인 책임은 제조소등의 시설주 즉 관계인에게 있으며(자기책임원칙) 본 조는 이러한 관계인의 의무를 분명하고 명확하게 함으로써 유사시 관계인의 위험회피를 방지하고 적극적인 응급조치 및 필요조치를 확보하고자 함에 있다.

위험물제조소등에 있어서 관계인의 응급조치 의무는 위해유발 시설의 관계인이라는 지위 때문이기도 하지만 실제 화재, 폭발, 유출 등의 위험물 사고 발생시 물리적으로 가장 근접하여 있는 사람이 관계인이라 할 수 있는바 이들로 하여금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응급조치의 신속성 또한 확보할 수 있다.

본 조의 제2항 통보의무는 「소방기본법」 제19조⁴⁷⁾와 유사한 규정으로 의무강제 규정이라기보다는 건전한 시민으로서 이행하여야 할 사항을 언급한 훈시적 규정이라 할 수 있다.

47) 제19조 (화재 등의 통지)

① 화재현장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사고현장을 발견한 사람은 그 현장의 상황을 소방본부·소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제 7 장 | 보 칙

총칙이 법령의 본체를 이루는 실제 규정의 전제로서 그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이라면, 총칙으로 규정하기에는 적합하지 아니한 절차적,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규정을 법제상 보칙 규정이라 한다.

이러한 보칙 규정은 “별칙” 바로 앞부분에 두게 되는데, 장의 구분이 있는 경우에는 “보칙”이라는 장을 둔다. 일반적으로 보칙에 규정되는 내용으로는, 보고의무(자료제출의 요청), 출입·검사 또는 조사, 청문, 행정심판·행정소송, 손실보상, 수수료, 권한의 위임·위탁, 별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조·조정 등이 있다.

이 법에서는 제28조부터 제32조에 걸쳐 위험물의 안전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받아야하는 안전교육, 상대방의 법률적인 권한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코자하는 처분을 할 시에 거치도록 하는 청문, 적정한 업무의 분배 및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업무수행을 위한 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근거하여 관할 행정기관이 민원인에게 일정한 업무를 한 금전적 대가로서의 수수료, 이 법이 정하고 있는 특정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있어 업무수행의 적법·적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별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 의제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1절 안전교육

- 제28조(안전교육) ① 안전관리자·탱크시험자·위험물운송자 등 위험물의 안전 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해당 업무에 관한 능력의 습득 또는 향상을 위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②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대상자에 대하여 필요한 안전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의 과정 및 기간과 그 밖에 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④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그 교육대상자가 교육을 받을 때까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그 자격으로 행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1. 의 의

각종 위험물 유지·관리·저장·취급 등을 함에 있어서는 일반 물품보다 세밀한 관리와 주의가 요구될 뿐만 아니라 일정수준의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능이 요구되고 있다.

본 조는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위험물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로 하여금 해당업무에 관한 새로운 기술의 습득,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일정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교육이수 의무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교육이수를 지원토록 하는 규정을 두고 또한 교육대상자가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할 때에는 관할 행정기관이 그 교육대상자의 자격업무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안전교육의 실시주체는 국민안전처장관이다. 그러나 권한의 위탁 규정인 이 법 제30조 및 영 제22조에 의거하여 한국소방안전협회 또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그 업무를 위탁하고 있다.

2.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 자(영 제20조)

가. 강습교육

- 1) 안전교육을 받아 안전관리자가 되고자 하는 자
- 2) 위험물운송자가 되고자 하는 자

나. 실무교육

- 1)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 2) 탱크시험자의 기술인력으로 종사하는 자
- 3) 위험물운송자로 종사하는 자

3.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규칙 제78조)

가. 국민안전처장관은 안전교육을 강습교육과 실무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안전교육의 과정·기간과 그 밖의 교육의 실시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시행규칙 [별표 24]에서 규정하고 있다.

나. 기술원 또는 한국소방안전협회는 교육을 실시하는 해의 전년도 말까지 강습교육 및 실무교육의 대상자별 및 지역별로 다음 연도의 교육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소방본부장은 매년 10월말까지 관할구역 안의 실무교육대상자 현황을 협회에 통보하고 관할구역 안에서 협회가 실시하는 안전교육에 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안전교육의 과정·기간과 그 밖의 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 등⁴⁸⁾

1. 교육과정·교육대상자·교육시간·교육시기 및 교육기관

교육과정	교육대상자	교육시간	교육시기	교육기관
강습 교육	안전관리자가 되고자 하는 자	24시간	신규 종사전	협회
	위험물운송자가 되고자 하는 자	16시간		
실무 교육	안전관리자	8시간 이내	신규 종사 후 2년마다 1회	협회
	위험물운송자		신규 종사 후 3년마다 1회	협회
	탱크시험자의 기술인력		가. 신규 종사 후 6개월 이내 나. 가목에 따른 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1회	기술원

※ 비교

- ① 안전관리자 강습교육 및 위험물운송사 강습교육의 공통과목에 대하여 둘 중 어느 하나의 강습교육 과정에서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나머지 강습교육 과정에서도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 ② 안전관리자 실무교육 및 위험물운송사 실무교육의 공통과목에 대하여 둘 중 어느 하나의 실무교육 과정에서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나머지 실무교육 과정에서도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 ③ 안전관리자 및 위험물운송사의 실무교육 시간 중 일부(4시간 이내)를 사이버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교육대상자가 사이버교육의 방법으로 수강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교육계획의 공고 등

- 가. 협회의 회장은 강습교육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매년 1월 5일까지 일시, 장소, 그 밖의 강습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공고할 것
- 나. 기술원 또는 협회는 실무교육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육실시 10일 전까지 교육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 것

48)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4]

3. 교육신청

가. 강습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협회가 지정하는 교육일정 전에 교육수강을 신청할 것

나. 실무교육 대상자는 교육일정 전까지 교육수강을 신청할 것

4. 교육일시 통보

기술원 또는 협회는 제3호에 따라 교육신청이 있는 때에는 교육실시 전까지 교육대상자에게 교육장소와 교육일시를 통보하여야 한다.

5. 기타

기술원 또는 협회는 교육대상자별 교육의 과목·시간, 강사의 자격, 교육의 신청·접수, 교육수료증의 교부·재교부, 교육수료증의 기재사항, 교육수료자명부의 작성·보관 등 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자 강습교육 및 위험물운송자 강습교육의 과목에는 각 강습교육별로 다음 표에 정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교육과정	교육와목	
안전관리자 강습교육	○ 제4류 위험물의 품명별 일반 성질, 화재예방 및 소화의 방법	○ 연소 및 소화에 관한 기초이론 ○ 모든 위험물의 유별 공통성질과 화 재예방 및 소화의 방법
위험물운송자 강습교육	○ 이동탱크저장소의 구조 및 설 비 작동법 ○ 위험물운송에 관한 안전 기준	○ 위험물안전관리법령 및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관계된 법령

제2절 청 문

제29조(청문)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 설치허가의 취소
2.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탱크시험자의 등록취소

1. 청문의 개요

가. 청문의 의의

청문이라 함은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기에 앞서 당사자 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러한 청문절차는 재판절차에 준하는 정식행정절차에 해당되는 의견청취 절차의 하나이다. 이러한 청문은 실시요건으로서 다른 법령 등에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와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다.

나. 청문주재자

청문은 행정청이 소속직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선정하는 자가 주재하고, 청문주재자는 독립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그 직무수행상의 이유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신분상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행정절차법」은 청문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청문주재자가 될 수 없는 제척사유 및 당사자 등의 기피 신청권, 주재자 자신의 회피 규정을 두고 있다.

다. 청문의 공개

청문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청문의 경우 주로 당사자의 불법 위법한 행위로 인한 불이익 처분의 실행 전에 이루어지는 절차이기 때문에 당사자 등의 프라이버시를 침해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행정절차법」 제30조에서는 ‘청문은 당사자가 공개를 신청하거나 청문 주재자

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당사자 등이 청문의 공개를 신청하여 청문일 전까지 청문주재자에게 공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출한 공개신청서를 지체 없이 검토하여 공개여부를 당사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

2. 청문의 진행 절차

가. 청문의 진행

청문진행절차는 구두변론절차를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청문주재자의 청문내용에 대한 설명과 당사자 등의 의견진술, 증거제출, 질문에 의하여 진행된다.

당사자 등이 구두진술 없이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 출석하여 진술한 것으로 본다. 청문주재자는 원활한 청문 진행을 위하여 발언권의 제한, 질서교란자에 대한 퇴장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청문을 계속할 경우 당사자 등에게 청문계속에 관한 사항을 통지한 후 계속할 수 있다.

나. 청문의 병합 분리

청문을 거쳐야 하는 수개의 처분이 유사하거나 상호 연관성이 있는 경우, 또는 병합된 청문 중에 수개의 사안에 별도의 청문이 요구되는 경우 행정청은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청문을 병합 하거나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 증거조사

증거조사란 청문 주재자가 해당 사안에 대하여 일정한 사실관계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참고인 감정인 등에게 질문하거나 관련 문건·문서·장부 등의 자료를 수집 조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청문주재자는 당사자 등이 청문주재자에게 증명할 사실과 증거조사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문서를 제출하여 신청한 경우 또는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라. 청문 조서

청문주재자는 청문을 실시한 후에 청문의 결과와 관련하여 청문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청문주재자는 청문조서를 작성한 후 지체 없이 청문조서의 열람·확인의 장소 및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청문의 종결

청문 주재자는 당사자 등의 의견진술·증거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다시 의견진술 및 증거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청문을 마칠 수 있다. 또한 당사자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청문기일에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들에게 의견진술 및 증거제출을 요구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경과한 때에 청문을 마칠 수 있다. 청문주재자는 청문을 마친 때에는 청문조서, 청문 주재자의 의견서, 그 밖의 관계서류 등을 행정청에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행정청은 처분을 함에 있어서 제출받은 청문조서, 청문주재자의 의견서, 그 밖의 관계서류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문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4. 청문절차의 법적효과

청문은 다른 법령 등에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와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 먼저 다른 법령 등에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이에 반하여 청문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해당 행정처분은 위법한 처분에 해당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청문을 거칠 것이 규정되지 아니하고 행정청의 판단에 의하여 청문을 실시하도록 한 경우 청문의 여부는 행정청의 고유 판단영역에 해당되므로 청문을 실시하지 않은 처분도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제3절 권한의 위임·위탁

제30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국민안전처장관,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기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소방안전협회(이하 “협회” 라 한다) 또는 기술원에 위탁할 수 있다.

1. 권한의 위임

권한의 위임이라 함은 행정관청이 그 권한의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에 위양(委讓)하는 것으로 권한의 위임을 받은 기관(受任機關)은 행정관청의 보조기관·하급기관임이 통례이다. 이때 위임기관은 그 위임사항을 처리할 권한을 잃고 수임기관이 그 권한을 자기의 이름과 책임으로 행사하며 이는 법이 정하는 권한을 대외적으로 변경하는 일종의 사무 재 배분이므로 법의 명시적 근거를 필요로 한다.

2. 업무의 위탁

각종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책임으로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위탁은 수탁자에게 어느 정도 자유재량의 여지가 있고 위탁을 한 자와의 사이에는 신탁관계가 성립되며 일반적으로 객관성과 경제적 능률성이 증시되는 분야 중 민간전문지식 또는 기술을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 위탁을 주로 한다. 이러한 위탁도 법적인 근거를 요구하는 바, 본 조에서 이를 규정하고 ‘한국소방산업기술원’과 ‘한국소방안전협회’를 위탁기관으로 하고 있다.

3. 권한의 위임사항(영 제21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도지사의 권한은 소방서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동일한 시·도에 있는 2 이상 소방서장의 관할구역에 걸쳐 설치되는 이송취급소에 관련된 권한을 제외한다.

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

나.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의 품명·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의 변경신고의 수리

다.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사목적 또는 군부대시설을 위한 제조소등을 설치하거나 그 위치·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에 관한 군부대장과의 협의

라.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탱크안전성능검사(용량이 100만리터 이상인 액체 위험물을 저장하는 탱크, 암반탱크, 지하탱크저장소의 위험물탱크 중 이중벽탱크의 안전성능검사 제외)

마.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완공검사(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설치 또는 변경에 따른 완공검사는 제외)

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설치자의 지위승계신고의 수리

사.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용도폐지신고의 수리

아.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설치허가의 취소와 사용정지

자.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처분

차.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예방규정의 수리·반려 및 변경명령

4. 업무의 위탁(영 제22조)

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위탁

- 1) 법 제8조제1항에 의한 시·도지사의 탱크안전성능검사 중 다음에 해당하는 탱크에 대한 탱크안전성능검사
 - 가) 용량이 100만리터 이상인 액체위험물을 저장하는 탱크
 - 나) 암반탱크
 - 다) 지하탱크저장소의 위험물탱크 중 이중벽 탱크
- 2) 법 제9조제1항에 의한 시·도지사의 완공검사에 관한 권한 중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설치 또는 변경의 완공검사 (사용중인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보수 또는 부분증설 제외) 및 50만리터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 또는 암반탱크저장소의 설치 또는 변경에 따른 완공검사
- 3)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정기검사
- 4)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안전처장관의 운반용기검사
- 5)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안전처장관의 안전교육에 관한 권한 중 탱크 시험자의 기술 인력으로 종사하는 자에 대한 안전교육

나. 한국소방안전협회에 위탁

국민안전처장관이 실시하여야하는 안전교육 중에서 영 제20조제1호에 의한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및 제3호에 의한 위험물운송자로 종사하는 자에 대한 강습교육과 실무교육 등의 안전교육(안전관리자교육이수자 및 위험물운송자를 위한 안전교육을 포함)은 한국소방안전협회에 위탁한다.

제4절 수수료

제31조(수수료 등)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인·허가·검사 또는 교육 등을 받고자 하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또는 교육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임시저장·취급의 승인
2.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 또는 변경의 허가
3.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탱크안전성능검사
4.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완공검사
5.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설치자의 지위승계신고
6.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탱크시험자의 등록
7.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탱크시험자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8. 제18조 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
9.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운반용기의 검사
10.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교육

수수료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인 행정주체가 행정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특정인을 위하여 일정한 행정행위(이 법에서의 각종허가, 승인, 검사 등)를 함에 있어 그 역무에 대한 보상 또는 비용충당으로 부과하는 금전적 요금”을 말한다.

교육비는 위험물의 안전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이 법령에 의한 교육기관에서 안전교육을 받을시 그 교육에 상응하는 비용을 말한다.

수수료 또는 교육비는 허가 등의 신청 또는 신고 시에 허가 등의 업무를 직접 행하는 기관에 납부하되,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납부하는 수수료는 시·도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5절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제32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호의 자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1. 제8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검사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원의 담당 임원 및 직원
2.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탕크시험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3.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협회 및 기술원의 담당 임원 및 직원

본 조와 같이 행정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의 임직원과 개인 등에 대하여 금품의 수수(收受) 등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형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들을 공무원과 같이 취급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법제상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라 하며, 이 법에 의하여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 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함으로써 위탁받은 업무의 적정이행과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고 있다.

제 8 장 | 별 칙

별칙이란 법률상 규정하고 있는 의무위반 또는 법령의 위반에 대하여 일반통치권(一般統治權)에 근거하여 일반사인에게 과하는 제재로서 과하는 벌을 말한다. 이러한 별칙은 법률상의 의무 위반자에게 일정한 형벌 또는 과태료에 처하게 됨을 예고함으로써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여 법률상의 의무이행을 확보하는 간접적인 기능을 동시에 하고 있다.

본 장에서 다루는 이 법의 제7장 별칙은 제33조부터 제39조로 구성되어 있다. 제33조 내지 제37조에서는 행정형벌인 징역, 금고 및 벌금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38조는 양벌규정을, 제39조에서는 행정질서별인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다.

1. 행정벌의 의의

행위자체가 반인륜적 반사회적인 행위인 ‘자연범’ 또는 ‘형사범’에 대한 벌이 “형사벌”이라면, ‘법정범’ 또는 ‘행정범’은 행위자체는 본래 반도덕적, 반사회적인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나 공공복리의 요청상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가 과하여지고 그 위반이 비로소 반사회성을 가지게 되는 범죄의 경우에 적용되는 것을 말한다.

2. 행정벌의 종류

가. 행정형벌

행정벌로서 형법에 정하여져 있는 형(사형·징역·금고·자격상실·자격정지·벌금·구류·과료 및 몰수)을 과하는 것을 행정형벌이라 한다. 이에 대해서는 원칙상 형법총칙이 적용되며 과벌절차는 형사소송절차에 의하나 예외적으로 즉결심판절차 또는 통고처분절차에 의하는 경우도 있다.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형벌의 종류는 징역, 금고, 벌금이다.

나. 행정질서벌(과태료)

과태료는 행정법규의 위반행위가 직접 행정목적에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행정목적 달성에 장애가 되는 정도의 비행인 경우에 과하는 일종의 금전벌이다. 예컨대 신고·보고·장부비치 등의 행정상의 의무의 이행을 태만히 함에 대하여 과태료를 과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과태료는 형벌과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형법총칙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과태료가 과하여져도 전과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부과·징수권자를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 하고 있다.

2008. 6. 22.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지금까지 각 개별법에 근거하여 부과되던 과태료 규정에 일반법적 근거가 마련되게 되었다. 새롭게 제정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과태료 부과요건의 엄격화·합리화

과태료의 부과요건으로 고의·과실을 필요로 함으로서 고의·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였다. 또한 14세 미만자나 심신장애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거나 감경하는 규정을 두었으며,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과태료 부과 제척기간을 마련하였다.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도록 함으로서 과태료 소멸시효도 새롭게 규정하고 있다.

2) 과태료 부과·징수절차 개선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10일 이상의 의견 제출기간을 보장해야 하며, 자진납부시에는 과태료를 20% 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하여 자진납부를 유도하도록 하고 있으며,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을 종전 30일에서 60일로 확대하였다. 또한 과태료의 금액이 많거나 경제사정 등으로 납부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 납부를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과태료 부과·징수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였다.

3) 과태료의 실효성 확보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가산금 제도를 도입하여 과태료 징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다. 납부기간 경과 시 5%의 가산금을 부과하고 이후 60개월간 매 월 1.2%의 증가산금이 부과되도록 하여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고액·상습 체납방지를 위한 보완수단으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하여 관허사업을 제한하도록 하고, 신용정보기관에 체납자의 체납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과태료 체납자에게 불이익을 주어 납부를 유도하고 있다.

아울러 과태료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과태료를 체납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법원의 재판을 통해 과태료 납부 시까지 일정기간 구금함으로써 과태료 납부를 간접적으로 강제하고 있다.

3. 양벌규정

행정법규에서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사무에 관하여 행정상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서 1억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직접적으로 행위를 한 자연인 외의 법인이나 개인 그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을 양벌규정이라 한다.

이와 같이 양벌규정을 두는 이유는 실제로 법인 또는 개인을 위하여 행위를 한 법인의 대표자, 개인의 대리인·사용인·종업원 등을 처벌하여서는 실제로 그 법인 또는 개인에 의한 범죄를 예방할 수 없기 때문에 법인이나 개인에게 일정한 형벌을 가하는 양벌규정이 필요하다. 양벌규정은 법인이나 개인 등이 이 법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직원의 관리·감독 등을 강화하는 간접적인 기능도 함께 확보하고자 함에 있다. 개정된 내용에 의하면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경우 책임을 면할 수 있는 면책의 근거가 새롭게 추가되었다.(2010.3.22개정)

4. 행정벌과 행정처분

행정벌은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이 있다.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은 행정벌이라는 동일한 제재의 성격이므로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병과할 수 없다. 그러나 이 법 제12조에 의한 취소·정지 등과 같은 행정처분과 행정벌은 병과가 가능하다.

행정벌의 적용은 행정상 의무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가하며 의무위반상태를 해소하는 기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위반에 대한 제재인 관계로 위반된 상태를 바로 잡기 위한 행정처분이 일반적으로 함께 이루어진다. 따라서 이 법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행정처분의 해당여부와 과태료처분 및 벌칙규정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병과하여야 한다.

5. 벌칙규정

제33조(벌칙) ①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을 유출·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4조(벌칙) ① 업무상 과실로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을 유출·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조(벌칙)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저장소 또는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한 자
2. 제6조제1항 전단 규정을 위반하여 제조소등의 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을 설치한 자
3.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탱크시험자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탱크시험자의 업무를 한 자
4.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기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점검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관계인으로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가 면제된 경우 및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로

- 써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제5호·제6호·제36조제6호·제7호·제10호 및 제37조제3호에서 같다)
 를 받은 자
5. 제18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관계인으로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6.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체소방대를 두지 아니한 관계인으로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7. 제20조제2항 단서의 규정을 위반하여 운반용기에 대한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반용기를 사용하거나 유통시킨 자
 8. 제22조제1항(제22조의2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 또는 수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9.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에 대한 긴급 사용정지·제한명령을 위반한 자

제37조(벌칙)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안전관리와 감독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제7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 또는 그 대리자가 참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험물을 취급한 자
3. 제17조제1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한 예방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한 관계인으로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4. 제20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중요기준에 따르지 아니한 자
5.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위험물운송자
6. 제22조제4항(제22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출입·검사 등을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제38조(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3조제1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을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같은 조 제2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을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에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4조부터 제37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조(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2. 제5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세부기준을 위반한 자
3.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품명 등의 변경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
4.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
5.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폐지신고 또는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
6. 제16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
7.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점검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자
8. 제2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세부기준을 위반한 자
9. 제21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험물의 운송에 관한 기준을 따르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③ 삭제(2014. 12. 30)

- ④ 삭제(2014. 12. 30)
- ⑤ 삭제(2014. 12. 30)
- ⑥ 제4조 및 제5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에 따른 조례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태료는 부과권자가 부과·징수한다.
- ⑦ 삭제(2014. 12. 30)

시행령 [별표 9] 과태료의 부과기준(영 제2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과태료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까지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처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해당 업종을 모범적으로 경영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4) 위반행위자가 같은 위반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과태료·벌금·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 5)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 6)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위반행위	해당법 조문	과태료 금액
가. 법 제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1) 승인가한(임시 저장 또는 취급 개시일의 전날)의 다음 날 을 기산일로 하여 30일 이내에 승인을 신청한 자 (2) 승인가한(임시 저장 또는 취급 개시일의 전날)의 다음 날 을 기산일로 하여 31일 이후에 승인을 신청한 자 (3)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법 제39조 제1항제1 호	50 100 200
나. 법 제5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 급에 관한 세부기준을 위반한 자 (1) 1차 위반시 (2) 2차 위반시 (3) 3차 이상 위반시	법 제39조 제1항제2 호	50 100 200
다.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명 등의 변경신고를 기간 이 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 (1) 신고기한(변경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날)의 다음 날을 기 산일로 하여 30일 이내에 신고한 자 (2) 신고기한(변경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날)의 다음 날을 기 산일로 하여 31일 이후에 신고한 자 (3) 허위로 신고한 자 (4)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39조 제1항제3 호	30 70 200 200
라.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위승계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 (1) 신고기한(지위승계일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30일이 되 는 날)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30일 이내에 신고한 자 (2) 신고기한(지위승계일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30일이 되 는 날)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31일 이후에 신고한 자 (3) 허위로 신고한 자 (4)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39조 제1항제4 호	30 70 200 200
마.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폐지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 하거나 허위로 한 자 (1) 신고기한(폐지일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30일 이내에 신고한 자 (2) 신고기한(폐지일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14일이 되는	법 제39조 제1항제5 호	30 70

위반행위	해당법 조문	과태료 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날)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31일 이후에 신고한 자 (3) 허위로 신고한 자 (4)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p>200</p> <p>20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바.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를 기 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 (1) 신고기한(선임한 날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14일이 되 는 날)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30일 이내에 신고한 자 (2) 신고기한(선임한 날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14일이 되 는 날)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31일 이후에 신고한 자 (3) 허위로 신고한 자 (4)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39조 제1항제5 호	<p>30</p> <p>70</p> <p>200</p> <p>20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 (1) 신고기한(변경일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30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30일 이내에 신고한 경우 (2) 신고기한(변경일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30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31일 이후에 신고한 경우 (3) 허위로 신고한 자 (4)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39조 제1항제6 호	<p>30</p> <p>70</p> <p>200</p> <p>20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점검결과를 기록·보존하 지 아니한 경우 (1) 1차 위반 시 (2) 2차 위반 시 (3) 3차 이상 위반시 	법 제39조 제1항제7 호	<p>50</p> <p>100</p> <p>20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 법 제2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세부기준을 위반한 자 (1) 1차 위반시 (2) 2차 위반시 (3) 3차 이상 위반시 	법 제39조 제1항제8 호	<p>50</p> <p>100</p> <p>20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 삭제<2015.12.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카.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험물의 운송에 관한 기준을 따르지 아니한 자 (1) 1차 위반시 (2) 2차 위반시 (3) 3차 이상 위반시 	법 제39조 제1항제9 호	<p>50</p> <p>100</p> <p>200</p>

제 9 장 | 부 칙 <제6894호, 2003. 5. 29>

부칙이란 법률의 본칙에 부수하여 그 법률의 시행일·경과조치·다른 법률의 개정·폐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부분의 총괄적 명칭이다.

일반적으로 부칙은 본칙의 규정사항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시행일·유효기간·적용례·경과조치 규정 등의 부분과 본칙의 규정사항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지만 본칙의 규정사항을 시행하는데 필요로 하는 다른 법률의 폐지, 다른 법률의 개정,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관한 규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1. 시행일

법률의 시행일이란 적법한 입법과정을 통하여 제·개정된 법률의 효력이 그 규율하려는 대상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효력을 발생하는 시기를 말한다.

법률의 시행은 시행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시행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가 중요하다. 따라서 법률을 시행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국민이 새로이 시행되는 법률을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기간을 두어야 하며, 또한 법률이 일정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때에는 하위법령이 적기에 정비될 수 있도록 법률시행의 유예기간을 둘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법률의 시행일 즉 효력발생 시기를 규정하고 있고 이 법은 제정하면서 다른 소방법령과 동일하게 법률의 시행에 따른 시간적인 여유를 1년으로 두어 하위법령의 정비에 따른 시간확보와 국민으로 하여금 이 법을 널리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경과조치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은 법률을 제·개정할 때 종전의 상태를 계속 존속시키거나 기득권을 보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구법의 효력을 신법에서 존속시키거나 구법의 상태를 신법에서 용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한다.

법률이 제·개정되면 그 법률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모든 대상에 일반적으로 효력을 미친다. 따라서 법률이 제·개정되면 그 효력은 종전의 법률이 규율하고 있는 대상에도 미치며 종전의 상태와는 다른 변화를 초래한다. 예컨대 종전에는 규제대상이 아니던 행위가 새로이 규제대상이 되거나 또는 종전의 조직이 폐지됨으로써 그 구성원의 신분관계에도 변경이 일어난다. 이러한 경우에 종전의 상태로부터 새로운 상태로의 즉시 이행에는 혼란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신·구상태의 원활한 조정을 위하여 경과적인 입법조치가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경과조치는 신·구 양법 질서 사이에서 제도의 변화와 법적 안정성의 요구를 적절히 조화시키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신·구 양 법률 사이에서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되며 이 법은 종전의 소방법과 관련하여 종전 소방법에 의한 행위, 안전관리자선임, 탱크시험자의 결격사유, 안전교육, 행정처분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예컨대, 이 법 부칙 제3조제1항에서는 군용위험물시설에 대하여서 이 법 시행 전에 제조소등을 설치하고 있는 군부대장이 해당 제조소등의 현황을 소방서장에게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현황을 제출한 제조소등에 대하여서는 이 법령에 적합한 제조소등으로 본다 고 규정하고 있다

종전의 소방법에 있어서는 군용위험물시설 등에 대하여서는 사실상 위험물과 관련한 각종 규정들을 적용할 수 없었던 바, 이 법이 제정되면서 군용위험물시설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군용위험물 시설에도 이 법의 규정이 적용됨을 명확히 하였고, 기존에 있었던 위험물제조소등을 양성화하는 절차로서 이 법 시행 후 6월 이내에 제조소등의 현황을 소방서장에게 제출하면 이 법에 따라 적정·적법한 제조소등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 다른 법령과의 관계

법률을 제·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의 규정을 인용하는 다른 법률의 규정내용을 개정하여야 한다. 특히 일정한 법률을 폐지하고 소방기본법과 같이 제명을 달리 하여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거나 법률을 전문 개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내용을 상당히 많이 개정할 필요가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 입법실무의 능률성이라는 측면에서 “다른 법률의 개정”이라는 방식으로 인용하고 있는 다른 법률의 규정을 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용하고 있는 다른 법률의 자구 또는 인용조문이 많을 경우 다른 법률의 개정이라는 방식으로 인용하고 있는 다른 법률을 개정하더라도 입법 낭비적인 면이 있다. 이러한 경우 “다른 법률과의 관계”라는 방식을 부칙에서 사용하면 다른 법률을 일률적으로 개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이 법은 부칙에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대하여 규정을 하고 있다.

부칙 <제6896호, 2003. 5.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전의 소방법에 의한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중전의 소방법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군용위험물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군사목적 또는 군부대시설을 위한 제조소등을 설치하고 있는 군부대의 장은 이 법 시행후 6월 이내에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제조소등의 현황을 제조소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부대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조소등의 현황을 제출한 때에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 제8조의 규정에 따른 탱크안전성능검사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완공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안전관리자의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중전의 소방법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있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15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탱크시험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로 인하여 종전의 소방법에 따른 형의 선고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는 제16조제4항제3호 또는 제4호의 해당 법률에 따른 형의 선고 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로 본다.

제6조(안전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동탱크저장소에 의하여 위험물을 운송하는 운송책임자와 운전자는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이동탱크저장소에 의하여 위험물을 운송하는 자로서 종전의 소방법 제20조제 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위험물취급에 관한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7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소방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소방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방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28호, 2005.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84>생략

<85>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6조제4항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86>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부칙<제7659호, 2005. 8. 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849호, 2006. 2.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39조 생략

제4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0〉생략

〈21〉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경찰공무원”을 각각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한다.

〈22〉내지 〈47〉생략

제41조 생략

부칙 〈제7984호, 2006. 9. 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선박법) 〈제8621호,2007.8.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제1조의2”를 “제1조의2제1항”으로 한다.

④ 부터 ⑥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 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 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23〉 까지 생략

〈724〉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제3항,

제8조제2항, 제10조제3항, 제11조,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2항, 제15조제3항·제4항 전단·제5항, 제16조제3항·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7조제1항 전단, 제18조제1항·제2항, 제20조제1항제1호·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21조제2항·제3항, 제26조제3항·제28조제3항 및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725〉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094호,2008.6.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후단 중 “소방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소방검정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0조제2항, 제32조제1호 및 제3호 중 “공사”를 각각 “기술원”으로 한다.

부칙 〈제101512호,2010.3.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세기본법) 〈제10219호,201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3〉까지 생략

〈34〉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지방세법에 의한”을 「지방세기본법」에 따른“으로 한다.

〈35〉부터〈61〉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제11690호, 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7>까지 생략

<238>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6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3항 후단, 제8조제2항, 제10조제3항, 제11조,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2항, 제15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16조제3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7조제1항 전단, 제18조제1항·제2항, 제20조제1항제1호·제2호,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21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26조제3항, 제28조제3항 및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239>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1862호, 2013.6.4.〉(화학물질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㉘까지 생략

㉙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단서 중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유독물”을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독물질”로 한다.

제12조 생략

부칙 〈법률 제11998호, 2013.8.6.〉(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㉙까지 생략

㉔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51〉부터 〈71〉까지 생략

부칙 〈제12844호, 2014.11.19.〉(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51〉까지 생략

〈152〉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6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3항 후단, 제8조제2항, 제10조제3항, 제11조,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2항, 제15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16조제3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7조제1항 전단, 제18조제1항·제2항, 제20조제1항제1호·제2호,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21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26조제3항, 제28조제3항 및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본문·단서, 제28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제2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153〉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941호, 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3항, 제22조제2항, 제36조제11호 및 제39조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3922호, 2016.1.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 없이 당해 제조소등에서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하고자 신고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16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2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장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

제2장 총 칙

제3장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본계획

제4장 허가관청의 통보 등

제5장 다중이용업주의 화재배상책임보험의 의무
가입 등

제6장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기반조성

제7장 벌 칙

제8장 부 칙



제 1 장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

제1절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의의

1. 제정배경

사회 및 생활환경의 흐름에 발맞춰 노래방·비디오방·단란주점 등 다중이용업의 형태가 대형화·밀집화되어 가고, 새로운 업종의 출현 등으로 양적·질적으로 급격히 팽창됨으로 인하여 이러한 영업장은 대규모 화재 위험에 노출되고 화재 발생시 영업주나 종업원의 초기 대처능력 미흡 등으로 인하여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발생시켜왔다.

이에 대하여 그동안 정부에서는 다중이용업에 대하여 완비증명제 시행 등 다양한 화재안전대책을 보완하여 왔으나 크게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현실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현행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근간으로 하여 각 개별 법령에 규정된 안전 기준을 일원화 및 강화하고 관련 부처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등 다중이용업의 안전을 종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에 따라 이를 제정하게 되었다.

2. 법의구성 및 시행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6장 26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장 총칙(법률의 목적과 주요용어의 정의, 국가의 책무

등), 제2장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본계획 등(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집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3장 허가관청의 통보 등(관련 행정기관의 통보사항, 소방안전교육,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다중이용업의 실내장식물, 피난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피난안내도의 비치 등, 정기점검), 제3장의2 다중이용업주의 화재배상책임보험의 의무가입 등(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촉진 및 관리, 보험금의 지급,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의 체결의무 및 가입강요 금지,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의 해제·해지), 제4장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를 위한 기반조성(다중이용업소의 소방안전관리,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위험평가 등, 화재위험평가대행자, 안전관리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 청문, 안전관리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 법령위반업소의 공개, 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 등), 제5장 보칙, 제6장 별칙이 있다.

해당 특별법은 2006년 3월 24일에 법률 제7906호로 공포되었으며, 시행일은 2007년 3월 25일이다.

제2절 다중이용업소관련 소방규제의 변천과정

1980년대 일본에서 유행하던 가라오케가 일본과 인접 교류가 활발한 항구 도시인 부산지방에 80년대 후반부터 서서히 상륙하여 90년대 초반 노래방 등으로 발생되어 전국적으로 우후죽순처럼 난립하자 정부에서는 1991.03.08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개별법에 의거 허가·신고 등록을 하고 풍속영업법에 의거 관할경찰서장에 통보(휴·폐업 때도 같다)하도록 하게 되면서 다중이용업소의 소방·방화시설 완비증명의 발생 계기가 되었다.

1. 다중이용업 발생

가. '80년대 후반 일본의 가라오케가 부산지방에 상륙 '90년대 초반 노래방·노래연습장 등이 각 지방에서 개업

나. '91년 3월 8일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정

※풍속영업의 범위(제2조)

- 단란주점, 유흥주점(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제8호 다목)
- 숙박업, 이용업, 특수목욕장(공중위생법 제2조 제1항)
- 비디오물감상실업, 노래연습장, 게임제공업(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에 관한 법률)
- 무도학원 및 무도장업(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
- 허가를 한 자는 관할각각의 개별법에서 풍속영업의 경찰서장에 통보토록 함 (휴·폐업 때도 같다)

2. 관련법규의 변천

1995년 11월 22일 부산 중구 남포동 자이안트노래방 및 1995년 12월 4일 서울 서초구 서초3동 진실노래방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몰고 와 이를 계기로 드러난 다중이용업소의 문제점은 법제도 추진의 배경이 되었고 법제도상의 보완 등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연이어 발생하는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로 정부와 관계기관에서는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법규를 개선하거나 더욱 강화하고 이를 보완하여 종합적인 대책 수립을 마련하였으며, 관계기관과 유관단체간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합동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화재예방에 힘써왔다.

현재까지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안전대책 및 보완대책을 꾸준히 시행하여 왔으며, 주요 내용 및 추진과정을 기술하면,

가. '95. 12. 6 - 소방시설 완비증명제 시행

- 1) '95.11.22 자이안트 노래방 화재⁴⁹⁾, '95.12.4 진실노래방 화재⁵⁰⁾ 계기
- 2) 경찰청방지63230-1707('95.12.6) : 노래연습장등 시설점검 강화지시(경찰청장 → 지방경찰청) ⇒ 노래연습장 신규신고시 - 소방시설완비필증 제출요구

49) 자이안트노래방 화재 : 부산 중구 남포동(4층), 담뱃불 원인, 사망 8명, 부상 2명

50) 진실노래방 화재 : 서울 서초구 서초3동(지하1층), 유류 원인, 사망 8명, 부상 3명

나. '95. 12. 13 - 노래연습장 영업신고시 소방시설완비증명 첨부제 시행
(예방12310-125, '95.12.13) ⇒ 경찰청에서 지방경찰청에 우선 지시된 사항 협조

다. '96. 3. 27 - 노래연습장 등에 대한 소방시설기준 고시(1996-71호 공포 시행)

표 2-1 적용대상

업종별	노래연습장	단란·유흥주점	비디오물감상실	기타 룸싸롱 룩카페
관련법령	풍속영업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5조(등록)	식품위생법시행령 제 7조 제 8호(허가)	음반·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6호(등록)	

〈적용시설〉

- 유도장치 : 유도등, 피난구유도등, 유도표지, 비상조명등
 - 경보장치 : 비상벨, 사이렌, 비상방송시설
 - 영상음향차단장치 : 화재시 자동·수동으로 영상음향정지
 - 난방시설 : 간접가열방식이 원칙
직접가열방식일 때 고정시설 설치
내부에 자동안전장치 부착시 예외
 - 소화설비 : 소화기, 자동확산소화용구, 주거용 스프링클러
 - 누전차단기
 - 내장재불연화 : 영업장내 칸막이, 벽, 천장불연화
 - 비상구 : 비상구, 복도, 통로 등 대피에 장애 없을 것
- ※ 종사자 교육 : 매년 2회 이상(상·하반기) - 종사자 대상

1. '96.6.7 - 비디오감상실업에 대한 소방시설완화
 -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문체부)
2. '96.12.20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제9호(보건복지부령 41호)51)
 - ⇒ 유흥주점, 단란주점, 지하에 있는 일반음식점(66㎡이상) 소방시설완비증명 첨부

라. 소방법 제 8조의 2(소방 방화시설 완비증명)[본조 신설]

☞ '97. 3. 7 공포, '97. 9. 7 시행(6개월 경과규정, 부칙 제 1조)

마. 소방법 시행령 제 4조의 2(다중이용업의 범위)[본조 신설]

☞ '97. 9. 27 공포·시행

⇒ 노래연습장, 비디오감상실, 유흥주점, 단란주점, 지하층에 설치된 일반음식점(바닥면적 합계 66㎡ 이상인 것)

바. 소방법 시행규칙 제 2조의 2(소방·방화시설완비 확인신청)

☞ '97. 12. 9 공포·시행

-소방법 시행규칙('97. 12. 2) 부칙 제 6조(다른 법령 개정)

○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 제1항 제4호)

⇒ 노래연습장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서 첨부

○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 제2항 제4호)

⇒ 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 첨부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22조 제1항 제9호)

⇒ 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서 첨부

사. 소방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43조(소방·방화시설 등의 설치기준)

☞ '98. 5. 12 공포, '98. 8. 12 시행(3개월 경과규정)

51) 롤링스톤 락 카페 화재('96.9.29 서울 서대문구 창전동, 지하1층, 원인미상, 사망 11명, 부상 3명)로 지하 일반음식점이 완비증명 대상이 됨.

아. 소방법 시행령 제4조의 2(다중이용업의 범위)

☞ [전문개정 2001. 3. 20]

- 1)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지하층의 경우 66㎡) 이상
- 2) 단란주점영업 또는 유흥주점영업
- 3) 비디오물감상실업·게임제공업 또는 노래연습장업

자. 소방법 시행령 제4조의 2(다중이용업의 범위)

☞ [전문개정 2002. 3. 30]

⇒ 대상 추가

- 1), 2) “기존과 같음”
- 3) 비디오물감상실업·게임제공업 또는 노래연습장업·복합유통·제공업
-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외에 불특정다수인이 출입하는 영업 형태 중 화재발생시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영업 ⇒ 신종자유업종이 다중이용업에 포함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

차. 소방법 시행령 제4조의 3(소방·방화시설의 종류) [개정 2002. 3. 30]

⇒ 휴대용비상조명등 추가(2003. 3. 29일까지 설치토록 경과규정)

⇒ 방화시설 : 방화문·비상구※비상탈출구 삭제함

카. 소방법시행규칙 제2조의 2(다중이용업의 범위)

☞ [본조신설 2002. 10. 16 신종자유업종이 다중이용업에 포함]

⇒ 찜질방업·산후조리원업·고시원업·전화방업·화상대화방업·멀티미디어 문화 콘텐츠 설비제공업·수면방업·콜라텍업

타. 다중이용업관련 법령 제정 등

- 1)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2003. 5. 29)

2) 동법률 시행령 (2004. 5. 29)

3) 동법률 시행규칙 (2004. 7. 7)

☞ 다중이용업의 범위확대(추가) 및 비상구 기준 일부 정비

⇒ 비디오물소극장업·학원(100인 이상)·목욕장중 맥반석등 이용(100인 이상)·영화상영관

⇒ 4층 이하(지하층제외) 다중이용업소는 건축물의 구조상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 유효한 개구부를 설치할 수 있다.

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

⇒ 2006. 3. 24 (시행 2007. 3. 25)

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1) 숙박 형태의 다중이용업소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의무화(법 제9조제1항) (개정 2009. 1.7) (시행 2009.7.8)

⇒ 대통령이 정하는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고시원, 산후조리원)에는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하여 화재의 초기 대응을 쉽게 하고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함.

2) 시행규칙 별표2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안전시설등의 설치기준 개정(개정 2009. 5.15)

⇒ 숙박업 형태로 운영되는 고시원업 및 산후조리업의 영업장에 피난유도선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고시원 영업장의 내부 통로 설치기준을 강화(내부 통로의 폭은 양 옆에 구획된 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소 15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최소 120센티미터 이상)하여 화재 등 재해발생시 이용자들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행정제재 처분기준을 합리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3) 시행규칙 부칙(개정 2009.7.3)

⇒ 제12조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피난안내도/ 피난안내 영상물 비치)은

2011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 2009.7.8)

⇒ 제13조(다중이용업주의 안전시설등에 대한 정기점검 등) 다중이용업주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시설등을 점검하고 그 점검결과서를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제17조의2(청문) 소방방재청장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평가대행자의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개정 2010.8.11)

⇒ 다중이용업소 범위 확대(19종 → 22종으로 확대)

-화재시 다수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3개 업종 추가

※「권총사격장」,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 확대

-지하층 바닥 면적이 150㎡ 이상 → 실내권총사격장, 면적에 관계없이 “지하층·무창층”에 설치된 모든 다중이용업소로 확대

-모든 신규 다중이용업소 적용

-기존업소는 내부구조 또는 실내장식물이 변경되는 경우에 설치

⇒ 방화시설(방화문과 비상구)

-모든 신규 다중이용업소 적용

-기존업소(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의「내부구조」가 변경되는 경우 적용

⇒ 실내장식물

-기존업소(스크린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는 적합하게 설치된 것으로 간주 하되, 실내장식물 변경 시는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 2011.8.4)

⇒ 제8조1항 및 제13조제1항 “방화관리자”를 각각 “소방안전관리자”로 한다.

⇒ 제14조 제목 “(다중이용업소의 방화관리)”를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안전관리)”로 하고, 같은 조 중 “방화관리업무”를 “소방안전관리업무”로 한다.

7)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 2012.2.22, 시행 2013.2.23)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건물의 다중이용업주는 별도의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됨(제4조제2

- 항 신설).
- ⇒ 다중이용업주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함(제13조의2제1항 신설).
 -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을 신고할 경우와 다중이용업주의 성명을 변경한 경우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후 그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함(제13조의3제1항 신설).
 - ⇒ 소방방재청장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다중이용업주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책임보험전산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19조제2항 신설).
- 8)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개정 2012.12.7., 시행 2013.2.23.)
- ⇒ 비상벨설비와 자동화재탐지설비 중 하나 선택 설치 가능, 영상음향장치 설치 영업장에 자동화재탐지설비 의무 설치 규정, 단란주점·유흥주점 등에 내부 피난통로 설치 규정(제9조·별표1 신설)
 - ⇒ 다중이용업을 운영하는 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액을 사망 및 부상의 경우에는 피해자 1명당 각각 1억원 및 2천만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으로, 재산상 손해의 경우에는 사고 1건당 1억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등으로 정함.(제9조의2, 별표 2 및 별표 3 신설)
 - ⇒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 마련(제22조의2 신설)
 - ⇒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별표 6)
- 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개정 2013.1.20., 시행 2013.11.20.)
- ⇒ 다중이용업소의 범위 ‘복합영상물제공업’ 추가
 - ⇒ 다중이용업소에 포함되는 골프연습장의 범위 명확화(실내에 1개 이상의 별도의 구획된 실이 해당)
- 10)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 2013.8.6, 시행 2014.8.7)
- ⇒ 제26조제6항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 1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 2014.1.7. 시행 2015.1.8.)
- ⇒ ‘소방시설 등’의 용어를 ‘안전시설등’으로 변경하여 그 뜻을 명확히 함(제

2조제1항제2호)

- ⇒ 지상층에 있는 밀폐구조의 영업장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함(제9조제1항)
 - ⇒ 법령의 기준을 위반하여 설치한 실내장식물에 대하여 그 부분을 교체 또는 제거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제10조제3항 신설)
 - ⇒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의 내부구획 재료, 적용대상, 설치기준을 정하는 한편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내부구획을 설치한 다중이용업주에게 소방기관장이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제10조의2 신설)
 - ⇒ 다중이용업주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필요한 과세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13조의3제6항 신설)
- 1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 2015.1.20. 시행 2015.1.20.)
- ⇒ 다중이용업주의 변경신고 또는 지위승계 신고 수리 전에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도록 함(제7조의2 신설)
 - ⇒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을 강화하고, 교육의무 등 위반시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을 강화함(제8조 및 제25조)(공포 후 1년 경과한 날 시행)
 - ⇒ 화재위험평가자 대행자에 대한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함(제22조의2 신설)
- 1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 2016.1.27 시행 2016.7.28.)
- ⇒ 다중이용업소에 안전시설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안전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음에도 지속적으로 영업하는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방관서장에게 영업정지 또는 취소 요청권 제도를 도입함(제9조제2항)
 - ⇒ 다중이용업소 화재예방 및 자율안전관리 제도 정착·유도를 위해 화재배상책임보험료율을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함(제13조의2제3항 및 제4항 신설)

제 2 장 총 칙

제1절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목적

1. 목 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재 등 재난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등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와 화재위험평가, 다중이용업주의 화재배상책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최근 사회·경제의 발전으로 다양하고 새로운 종류의 다중이용업이 출현하고 대형화 및 밀집화 된 다중이용업소가 등장하여 화재 등 재난의 발생시 대규모의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화재 등 재난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등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와 화재위험평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기여하려함을 해당 특별법의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국가 등의 책무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등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다중이용업을 운영하는 자(이하 “다중이용업주”라 한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시책에 협조하여야

하며,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화재 등 재난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등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마련의 책무가 있으며, 다중이용업주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시책에 협조할 책무가 있고,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화재 등 재난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책무가 있다. 이러한 책무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법의 내용을 통하여 실현시키고 있다.

제2절 용어의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다중이용업”이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발생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营业을 말한다.
2. “안전시설등”이란 소방시설, 비상구,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그 밖의 안전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실내장식물”이란 건축물 내부의 천장 또는 벽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화재위험평가”란 다중이용업의 영업소(이하 “다중이용업소”라 한다)가 밀집한 지역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화재발생 가능성과 화재로 인한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 및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5. “밀폐구조의 영업장”이란 지상층에 있는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중 채광·환기·통풍 및 피난 등이 용이하지 못한 구조로 되어 있으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영업장을 말한다.
6. “영업장의 내부구획”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내부를 이용객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벽 또는 칸막이 등을 사용하여 구획된 실(室)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소방기본법」·「소방시설공사업법」·「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다중이용업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발생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서 법령이 정하는营业을 말한다. 다중이용업에는 휴게음식점, 제과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일반음식점,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복합영상물제공업, 학원, 목욕장,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 산후조리업, 고시원, 권총사격장,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전화방, 화상대화방, 수면방, 콜라텍 등이 있다.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휴게음식점영업·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으로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같다)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영업장의 바닥면적 합계가 66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을 제외한다)이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营业을 제외한다.
 - 나.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 같은 조 제16호가목·나목 및 라목에 따른 영화상영관·비디오물감상실업·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학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4에 따라 산정된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것

- 나. 수용인원 100명 이상 300명 미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학원으로 사용하는 부분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학원의 운영권자를 달리하는 학원과 학원을 포함한다)이 「건축법 시행령」 제 46조에 따른 방화구획으로 나누어진 경우는 제외.
- (1)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과 기숙사가 함께 있는 학원
 - (2)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이 둘 이상 있는 경우로서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학원
 - (3) 하나의 건축물에 1·2호 및 4호부터 7호까지, 제7호의2부터 제7호의5까지 및 제8호의 다중이용업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다중이용업과 학원이 함께 있는 경우
4. 목욕장업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 가. 하나의 영업장에서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목욕장업 중 맥반석이나 대리석 등 돌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열기나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배출하게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것으로서 수용인원(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부분의 수용인원은 제외한다)이 100명 이상인 것
- 나.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의 시설을 갖춘 목욕장업
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6호·6호의2·7호 및 8호의 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다만, 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경우에는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은 제외한다)이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된 구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7. 「모자보건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산후조리업
- 7의2. 고시원업 [구획된 실(室)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
- 7의3.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1에 따른 권총사격장(실내사격장에 한정하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종합사격장에 설치된 경우를 포함한다)
- 7의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골프 연습장업(실내에 1개 이상의 별도의 구획된 실을 만들어 스크린과 영사기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골프를 연습할 수 있도록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에 한정한다)

- 7의5. 「의료법」 제82조제4항에 따른 안마시술소
8.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화재위험평가결과 위험유발지수가 제11조제1항에 해당하거나 화재발생 시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불특정다수인이 출입하는 영업으로서 국민안전처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

1. 전화방업·화상대화방업 : 구획된 실 안에 전화기·텔레비전·모니터 또는 카메라 등 상대방과 대화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형태의 영업
2. 수면방업 : 구획된 실 안에 침대·간이침대 그 밖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형태의 영업
3. 콜라텍업 : 손님이 춤을 추는 시설 등을 갖춘 형태의 영업으로서 주류 판매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2. 안전시설등

안전시설등이란 소방시설, 비상구,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그 밖의 안전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그 밖의 안전시설에는 동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하고 있는 영상음향차단장치·누전차단기 및 창문이 있다.

3. 실내장식물

실내장식물이란 건축물 내부의 천장 또는 벽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며, 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 연소 및 연소확대의 우려가 있는 대상을 제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도입된 규정이다.

4. 화재위험평가

화재위험평가란 다중이용업의 영업소가 밀집한 지역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화재 발생 가능성과 화재로 인한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 및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5. 밀폐구조의 영업장

밀폐구조의 영업장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무창층’과 유사한 개념으로서 지상층에 있는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중 채광·환기·통풍 및 피난 등이 용이하지 못한 구조로 되어 있으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영업장을 말한다. 무창층과 마찬가지로 안전확보를 위하여 밀폐구조의 영업장에 대하여 관련규정 적용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의 사각지대를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6. 영업장의 내부구획

“영업장의 내부구획”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내부를 이용객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벽 또는 칸막이 등을 사용하여 구획된 실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제 3 장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본계획

제1절 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다중이용업소의 화재 등 재난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의 감소, 안전기준의 개발, 자율적인 안전관리능력의 향상, 화재배상책임보험제도의 정착 등을 위하여 5년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방향
2. 다중이용업소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촉진에 관한 사항
3.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안전에 관한 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 관련 법령의 정비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다중이용업소의 적절한 유지·관리에 필요한 교육과 기술연구·개발
- 5의2.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관한 기본 방향
- 5의3.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관리전산망(이하 “책임보험전산망”이라 한다)의 구축·운영
- 5의4.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제도의 정비 및 개선에 관한 사항
6.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위험평가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민안전처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안전관리계획(이하 “연도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국민안전처장관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안전관리기본계획

가. 계획의 수립

국민안전처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5년 마다 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한다.

나. 수립지침의 작성 및 통보

국민안전처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기본계획 수립지침의 내용〉

- 1) 화재 등 재난 발생 경감대책
 - 가) 화재피해 원인조사 및 분석
 - 나) 안전관리정보의 전달·관리체계 구축
 - 다) 화재 등 재난 발생에 대비한 교육·훈련과 예방에 관한 홍보
- 2) 화재 등 재난 발생을 줄이기 위한 중·장기 대책
 - 가)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등의 관리 및 유지계획
 - 나) 소관법령 및 관련기준의 정비

다. 안전관리기본계획의 내용

-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방향
- 2) 다중이용업소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촉진에 관한 사항
- 3)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안전에 관한 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 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 관련 법령의 정비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5) 다중이용업소의 적정한 유지·관리에 필요한 교육과 기술 연구·개발
- 6)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관한 기본 방향

- 7)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축·운영
- 8)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제도의 정비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9)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위험평가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 10) 그 밖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안전관리 중·장기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체제
 - 안전관리실태평가 및 개선계획
 - 시·도 안전관리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라. 안전관리기본계획의 통보 및 공고

국민안전처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통보한 후 이를 공고해야 한다.

2. 연도별 안전관리계획

가. 계획의 수립

국민안전처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안전관리계획을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나. 계획의 통보

국민안전처장관은 연도별 계획을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 및 소방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 계획의 공고

국민안전처장관은 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한다.

3. 자료의 요구

국민안전처장관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

양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2절 집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6조(집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소방본부장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 다중이용업소의 안전 관리를 위하여 매년 안전관리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방본부장은 집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집행계획의 수립시기, 대상,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집행계획의 수립

소방본부장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의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매년 안전관리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소방본부장은 집행계획 수립에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의 요구를 받은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2. 집행계획의 수립절차

가. 수립 및 제출

소방본부장은 기본계획과 연도별 계획에 따라 해당 연도 전년 12월 31일까지

다중이용업에 대한 안전관리집행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수립된 집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나. 집행계획의 내용

- 1) 다중이용업소 밀집 지역의 소방시설 설치, 유지·관리와 개선계획
- 2)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훈련계획
- 3)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에 대한 자체지도 계획
- 4) 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위험평가의 실시 및 평가
- 5) 제4호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계획(화재위험지역이나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와 시설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

제4장 허가관청의 통보 등

제1절 관련 행정기관의 다중이용업관련사항 통보

제7조(관련 행정기관의 통보사항) ① 다른 법률에 따라 다중이용업의 허가·인가·등록·신고수리(이하 “허가 등”이라 한다)를 하는 행정기관(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은 허가 등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1. 다중이용업주의 성명 및 주소
2. 다중이용업소의 상호 및 주소
3. 다중이용업의 업종 및 영업장 면적

② 허가관청은 다중이용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그 신고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휴업·폐업 또는 휴업 후 영업의 재개
2. 영업 내용의 변경
3. 다중이용업주의 변경 또는 다중이용업주 주소의 변경
4. 다중이용업소의 상호 또는 주소의 변경

제7조의2(허가관청의 확인사항) 허가관청은 다른 법률에 따라 다중이용업주의 변경신고 또는 다중이용업주의 지위승계 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변경된 다중이용업주가 제13조의2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다중이용업소 허가 등의 통보

가. 통보의무 행정기관

다른 법률에 의하여 다중이용업의 허가 등을 하는 허가관청

나. 통보사항

- 1) 다중이용업주의 성명 및 주소
- 2) 다중이용업소의 상호 및 주소
- 3) 다중이용업의 업종 및 영업장 면적
- 4) 허가 등 일자

다중이용업 허가·등록·신고 등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

- 가. 단란·유흥주점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영업허가(식품위생법시행령 제23조제2호)
- 나. 일반·휴게음식점·제과점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영업신고(식품위생법 제25조제1항8호)
- 다.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업, 비디오물소극장업, 복합영상물제공업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영업의 등록[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58조]
- 라. 학원 ⇒ 교육감에게 등록(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
- 마. 목욕장업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영업의 신고(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 바. 게임제공업 등
-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영업의 등록(게임산업진흥에 관한법률 제26조)
 - 일반게임제공업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영업의 허가(게임산업진흥에 관한법률 제26조)
- 사. 노래연습장업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영업의 등록(음악산업진흥에 관한법률 제18조)
- 아. 산후조리원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영업의 신고(모자보건법 제15조)
- 자. 고시원업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영업의 허가(건축법 제11조)
- 차. 권총사격장 ⇒ 지방경찰청장의 영업허가(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 카. 골프연습장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영업의 신고(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법률 제20조)
- 타. 안마시술소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신고(의료법 제82조 3항·제33조 3항)

다. 통보방법

허가 등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다중이용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통보

2. 다중이용업소 변경사항의 통보

가. 통보하여야할 변경사유

- 1) 휴업·폐업 또는 휴업 후 영업의 재개
- 2) 영업 내용의 변경
- 3) 다중이용업주 변경 또는 다중이용업주 주소의 변경
- 4) 다중이용업소 상호 또는 주소의 변경

나. 통보방법

허가관청은 다중이용업주가 변경행위를 하는 때에는 그 신고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통보

제2절 다중이용업소 관계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제8조(소방안전교육) ①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은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실시하는 소방안전교육을 2년에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다만, 다중이용업주나 종업원이 그 해당연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강습 또는 실무교육
2.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 교육
- ② 다중이용업주는 소방안전교육 대상자인 종업원이 소방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 ③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교육을 받은 사람에게는 교육 이수를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의 대상자, 교육시간,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이 자발적으로 소방시설을 유지관리하고, 화재발생시 화재현장의 책임자로서 화재진압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과 소양을 갖추고 초기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으로서 영업주와 종업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은 필요하다.

그러나 유사한 소방관련 교육을 받은 경우에 동법에 의한 소방안전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며, 동법 제22조는 소방안전교육을 관련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소방당국의 조직상의 한계로 교육관련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아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공법인이나 전문 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이다.

참고로「공중위생관리법」「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등에서도 관련교육을 민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⁵²⁾

1. 소방안전교육이수 의무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은 국민안전처장관·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실시하는

52) <공중위생관리법 제18조(위임 및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전문기관 등에 그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7조(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의 교육 등)>

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실내공기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전문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2조 (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차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차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8.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교육의 실시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다중이용업주나 종업원이 소방안전관리자 강습(실무)교육이나 위험물안전관리자 교육을 그 해당연도에 받은 경우에는 소방안전교육 이수 의무가 없다.

2. 안전교육의 대상

가. 다중이용업주

※ 다만, 다중이용업주가 직접 소방안전교육을 받기 곤란한 경우로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영업장의 종업원 중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자로 하여금 다중이용업주를 대신하여 소방안전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나. 다중이용업주를 대리하여 영업장을 관리하는 종업원 1인 이상 또는 국민연금 가입의무대상자인 종업원 1인 이상

3. 안전교육의 시기

교육대상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교육대상자가 국외에 체류하고 있거나, 질병·부상 등으로 입원해 있는 등 정해진 기간 안에 소방안전교육을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3개월의 범위에서 소방안전교육을 연기할 수 있다.

가. 신규 교육

- 1) 다중이용업주: 다중이용업을 시작하기 전.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 또는 (나)에서 정한 시기에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 (가) 다중이용업주가 변경되어 허가관청이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통보를 한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제4항에 따라 통보한 교육일까지
 - (나)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 또는 영업장 내부구조 변경신고를 한 경우: 법 제9조제3항제3호에 따른 완공신고를 하기 전 까지
- 2) 교육대상 종업원: 다중이용업에 종사하기 전

나. 수시교육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 법 제9조제1항·제10조·제11조·제12조제1항·제13조제1항 또는 법 제14조를 위반한 다중이용업주와 교육대상 종업원은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3개월 이내

※ 소방안전교육을 받은 사람이 교육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경우 또는 다중이용업에 종사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제1호에 따른 신규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 보수교육

신규교육 또는 직전의 보수교육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로부터 2년 이내

4. 교육의 통지

가. 홈페이지 게재

국민안전처장관·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일시 및 장소 등 소방안전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일 30일 전까지 국민안전처·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나. 교육대상자 통지

- 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 또는 영업장 내부구조 변경신고를 하는 자: 신고 접수 시
- 이외의 교육대상자 : 교육일 10일전

5. 교육시간 : 2시간이상 4시간이내

6. 다른 법령에서의 교육과의 병행가능

국민안전처장관·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안전교육을 하려는 때에는 다중이용업과 관련된 「직능인 경제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직능단체 및

민법상의 비영리법인과 협의하여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다중이용업 관련 교육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7. 교육이수증 발급

국민안전처장관·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교육을 받은 자에게는“소방안전교육이수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교부받은 소방안전교육이수증명서를 잃어버렸거나 헐어서 쓸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재발급 신청에 따라 즉시 재발급하여야 한다.

8. 소방안전교육의 업무위탁

제22조(권한의 위탁 등) ①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8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업주 및 그 종업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업무, 제19조제2항의 책임보험전산망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수행에 드는 경비를 교육대상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기준, 교수요원의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절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

제9조(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 ①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장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안전시설등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장에는 소방시설 중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2. 밀폐구조의 영업장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안전시설등이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설치 또는 유지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다중이용업주에게 안전시설등의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허가 관청에 관계 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다중이용업을 하고 있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시설등을 설치하기 전에 미리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총리령으로 정하는 안전시설등의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1. 안전시설등을 설치하려는 경우
2. 영업장 내부구조를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영업장 면적의 증가
 - 나. 영업장의 구획된 실의 증가
 - 다. 내부통로 구조의 변경
3. 안전시설등의 공사를 마친 경우

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설계도서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고, 그에 맞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⑤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3항 제3호에 따라 공사완료의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안전시설등이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설치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그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정될 때까지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다중이용업소의 시설기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은 동법의 핵심조항으로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해당영업장에 대하여 안전시설등을 관련 기준에 따라 설치·유지하여야할 법적 의무를 정하고 있는 규정이다. 즉, 다중이용업소에 법정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할 법적 근거 조항이라 할 수 있다.

2.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안전시설등

시행령 제9조(안전시설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 설치·유지하여야 하는 안전시설등은 별표1의2와 같다.

안전시설등(제9조 관련)

1. 소방시설

가. 소화설비

- 1) 소화기 또는 자동확산소화기
- 2) 간이스프링클러설비(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포함한다). 다만, 다음의 영업장에만 설치한다.
 - 가) 지하층에 설치된 영업장
 - 나) 밀폐구조의 영업장
 - 다) 제2조제7호에 따른 산후조리업(이하 이 표에서 “산후조리업”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7호의2에 따른 고시원업(이하 이 표에서 “고시원업”이라 한다)의 영업장. 다만, 지상 1층에 있거나 지상과 직접 맞닿아 있는 층(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의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설치된 영업장은 제외한다.
 - 라) 제2조제7호의3에 따른 권총사격장의 영업장

나. 경보설비

- 1)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다만, 노래반주기 등 영상음향장치를 사용하는 영업장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2) 가스누설경보기. 다만, 가스시설을 사용하는 주방이나 난방시설이 있는 영업장에만 설치한다.

다. 피난설비

- 1) 피난기구
 - 가) 미끄럼대
 - 나) 피난사다리
 - 다) 구조대
 - 라) 완강기
 - 2) 피난유도선. 다만,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또는 복도가 있는 다음의 영업장에만 설치한다.
 - 가)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이하 이 표에서 “단란주점영업”이라 한다)과 유흥주점영업(이하 이 표에서 “유흥주점영업”이라 한다)의 영업장
 - 나) 제2조제2호에 따른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업(이하 이 표에서 “비디오물감상실업”이라 한다) 및 복합영상물제공업(이하 이 표에서 “복합영상물제공업”이라 한다)의 영업장
 - 다) 제2조제6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이하 이 표에서 “노래연습장업”이라 한다)의 영업장
 - 라) 산후조리업의 영업장
 - 마) 고시원업의 영업장
 - 3) 유도등, 유도표지 또는 비상조명등
 - 4) 휴대용 비상조명등
2. 비상구.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에는 비상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가. 주된 출입구 외에 해당 영업장 내부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이 주된 출입구로부터 영업장의 긴 변 길이의 2분의 1 이상 떨어진 위치에 별도로 설치된 경우
 - 나. 피난층에 설치된 영업장[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 면적이 33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서 영업장 내부에 구획된 실이 없고, 영업장 전체가 개방된 구조의 영업장을 말한다]으로서 그 영업장의 각 부분으로부터 출입구까지의 수평거리가 10미터 이하인 경우
 3.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다만, 구획된 실이 있는 다음 각 목의 영업장에만 설치한다.
 - 가.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의 영업장
 - 나. 비디오물감상실업의 영업장과 복합영상물제공업의 영업장
 - 다. 노래연습장업의 영업장
 - 라. 산후조리업의 영업장

<p>마. 고시원업의 영업장</p> <p>4. 삭제 <2014.12.23.></p> <p>5. 그 밖에 안전시설</p> <p>가. 영상음향차단장치. 다만, 노래반주기 등 영상음향장치를 사용하는 영업장에만 설치한다.</p> <p>나. 누전차단기</p> <p>다. 창문. 다만, 고시원의 영업장에만 설치한다.</p> <p>※ 비고</p> <p>① 피난유도선 : 햇빛이나 전등불로 축광(蓄光)하여 빛을 내거나 전류에 의하여 빛을 내는 유도체로서 화재 발생 시 등 어두운 상태에서 피난을 유도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p> <p>② 비상구 : 주된 출입구와 주된 출입구 외에 화재 발생 시 등 비상시 영업장의 내부로부터 지상·옥상 또는 그 밖의 안전한 곳으로 피난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직통 계단·피난계단·옥외피난계단 또는 발코니에 연결된 출입구를 말한다.</p> <p>③ 구획된 실(室) : 영업장 내부에 이용객 등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벽이나 칸막이 등으로 구획한 공간을 말한다. 다만, 영업장 내부를 벽이나 칸막이 등으로 구획한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영업장 내부 전체 공간을 하나의 구획된 실로 본다.</p> <p>④ 영상음향차단장치 : 영상 모니터에 화상 및 음반 재생장치가 설치되어 있어 영화, 음악 등을 감상할 수 있는 시설이나 화상 재생장치 또는 음반 재생장치 중 한 가지 기능만 있는 시설을 차단하는 장치를 말한다.</p>

3. 안전시설등의 설치·유지 기준

가. 소방시설 설치기준

소방시설 종류	설치·유지 기준
1. 소화설비	
가) 소화기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영업장 안의 구획된 실마다 설치할 것
나) 간이스프링클러설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다만, 영업장의 구획된 실마다 간이스프링클러헤드 또는 스프링클러헤드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 부분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2.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① 영업장의 구획된 실마다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중 하나 이상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소방시설 종류	설치·유지 기준
	②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감지기와 지구음향장치는 영업장의 구획된 실마다 설치할 것. 다만, 영업장의 구획된 실에 비상방송설비의 음향장치가 설치된 경우 해당 실에는 지구음향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영상음향차단장치가 설치된 영업장에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를 별도로 설치할 것
3. 피난설비	
가) 피난기구(간이완강기 및 피난밧줄은 제외)	4층 이하 영업장의 비상구(발코니 또는 부속실)에는 피난기구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나) 피난유도선	①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또는 복도에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② 전류에 의하여 빛을 내는 방식으로 할 것
다) 유도등, 유도표지 또는 비상조명등	영업장의 구획된 실마다 유도등, 유도표지 또는 비상조명등 중 하나 이상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라) 휴대용 비상조명등	영업장안의 구획된 실마다 휴대용 비상조명등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나. 비상구 설치기준

1. 공통 기준

가) 설치 위치: 비상구는 영업장(2개 이상의 층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층별 영업장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주된 출입구의 반대방향에 설치하되, 주된 출입구로부터 영업장의 긴 변 길이의 2분의 1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건물구조로 인하여 주된 출입구의 반대방향에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장의 긴 변 길이의 2분의 1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수 있다.

나) 비상구 규격: 가로 75센티미터 이상, 세로 150센티미터 이상(비상구 문

틀을 제외한 비상구의 가로길이 및 세로길이를 말한다)으로 할 것

다) 비상구 구조

- ① 비상구는 구획된 실 또는 천장으로 통하는 구조가 아닌 것으로 할 것. 다만, 영업장 바닥에서 천장까지 준불연재료 이상의 것으로 구획된 부속실(전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비상구는 다른 영업장 또는 다른 용도의 시설(주차장은 제외한다)을 경유하는 구조가 아닌 것이어야 하고, 층별 영업장은 다른 영업장 또는 다른 용도의 시설과 불연재료·준불연재료로 된 차단벽이나 칸막이로 분리되도록 할 것. 다만, 둘 이상의 영업소가 주방 외에 객실부분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등의 구조 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8 호(가목5)다)에 따라 각 영업소와 영업소 사이를 분리 또는 구획하는 별도의 차단벽이나 칸막이 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문이 열리는 방향: 피난방향으로 열리는 구조로 할 것. 다만, 주된 출입구의 문이 「건축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설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문이 아니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설치되는 방화구획이 아닌 곳에 위치한 주된 출입구가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자동문(미서기(슬라이딩)문을 말한다)으로 설치할 수 있다.

- ① 화재감지기와 연동하여 개방되는 구조
- ② 정전 시 자동으로 개방되는 구조
- ③ 정전 시 수동으로 개방되는 구조

마) 문의 재질: 주요 구조부(영업장의 벽, 천장 및 바닥을 말한다)가 내화구조인 경우 비상구와 주된 출입구의 문은 방화문으로 설치할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연재료로 설치할 수 있다.

- ①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가 아닌 경우
- ② 건물의 구조상 비상구 또는 주된 출입구의 문이 지표면과 접하는 경우로서 화재의 연소 확대 우려가 없는 경우
- ③ 비상구 또는 주 출입구의 문이 「건축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설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문이 아니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설치되는 방화구획이 아닌 곳에 위치한 경우

2. 복층구조 영업장(각각 다른 2개 이상의 층을 내부계단 또는 통로가 설치되

어 하나의 층의 내부에서 다른 층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구조의 영업장을 말한다)의 기준

- 가) 각 층마다 영업장 외부의 계단 등으로 피난할 수 있는 비상구를 설치할 것
- 나) 비상구의 문은 가목5)에 따른 재질로 설치할 것
- 다) 비상구의 문이 열리는 방향은 실내에서 외부로 열리는 구조로 할 것
- 라) 영업장의 위치 및 구조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에도 불구하고 그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어느 하나의 층에 비상구를 설치할 것
 - ① 건축물 주요 구조부를 훼손하는 경우
 - ② 옹벽 또는 외벽이 유리로 설치된 경우 등

3. 영업장의 위치가 4층(지하층은 제외한다) 이하인 경우의 기준:

- 가) 피난 시에 유효한 발코니(가로 75센티미터 이상, 세로 150센티미터 이상, 높이 100센티미터 이상인 난간을 말한다) 또는 부속실(준불연재료 이상의 것으로 바닥에서 천장까지 구획된 실로서 가로 75센티미터 이상, 세로 150센티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을 설치하고, 그 장소에 적합한 피난기구를 설치할 것
- 나) 부속실을 설치하는 경우 부속실 입구의 문과 건물 외부로 나가는 문의 규격은 비상구 규격으로 할 것
- 다) 추락 등의 방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갖추도록 할 것
 - ① 발코니 및 부속실 입구의 문을 개방하면 경보음이 울리도록 경보음 발생 장치를 설치하고 추락위험을 알리는 표지를 문(부속실의 경우 외부로 나가는 문도 포함한다)에 부착할 것
 - ② 부속실에서 건물 외부로 나가는 문 안쪽에는 기둥·바닥·벽 등의 견고한 부분에 탈착이 가능한 쇠사슬 또는 안전로프 등을 바닥에서부터 120센티미터 이상의 높이에 가로로 설치할 것

다.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1. 내부 피난통로의 폭은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양 옆에 구획된 실이 있는 영업장으로서 구획된 실의 출입문 열리는 방향이 피난통로 방향인 경우에는 150센티미터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구획된 실부터 주된 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의 내부 피난통로의 구조는 세 번 이상 구부러지는 형태로 설치하지 말 것

라. 창문

1. 영업장 층별로 가로 5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 열리는 창문을 1개 이상 설치할 것
2.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또는 복도에 바깥 공기와 접하는 부분에 설치할 것(구획된 실에 설치하는 것을 제외한다)

마. 영상음향차단장치

1. 화재 시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에 의하여 자동으로 음향 및 영상이 정지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되, 수동(하나의 스위치로 전체의 음향 및 영상장치를 제어할 수 있는 구조를 말한다)으로도 조작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2. 영상음향차단장치의 수동차단스위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이 일정하게 거주하거나 일정하게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이 경우 수동차단스위치와 가장 가까운 곳에 “영상음향차단스위치”라는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3. 전기로 인한 화재발생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부하용량에 알맞은 누전차단기(과전류차단기를 포함한다)를 설치할 것
4. 영상음향차단장치의 작동으로 실내 등의 전원이 차단되지 않는 구조로 설치할 것

바. 보일러실과 영업장 사이의 방화구획

보일러실과 영업장 사이의 출입문은 방화문으로 설치하고, 개구부에는 자동방화댐퍼를 설치할 것

- ※ “방화문(防火門)”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으로서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의 발생 또는 온도의 상승에 따라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를 말한다. 다만,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 중 열에 의하여 녹는 퓨즈[도화선(導火線)]을 말한다]타입 구조의 방화문은 제외한다.
- ※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해당 영업장에 대해 화재위험평가를 실시한 결과 화재위험유발지수가 영 제13조에 따른 기준 미만인 업종에 대해서는 소방시설·비상구 또는 그 밖의 안전시설등의 설치를 면제한다.
-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비상구의 크기, 비상구의 설치 거리,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 구경(口徑) 등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시설등에 대해서는 국민안전처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안전시설등의 설치·유지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4. 실내장식물

제10조(다중이용업의 실내장식물) ①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실내장식물(반자동림대 등의 너비가 10센티미터 이하인 경우를 제외한다)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합판 또는 목재로 실내장식물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그 면적이 영업장 천장과 벽을 합한 면적의 10분의 3(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10분의 5) 이하인 부분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③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소의 실내장식물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내장식물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다중이용업주에게 해당 부분의 실내장식물을 교체하거나 제거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거나 허가 관청에 관계 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가. 실내장식물의 개념

건축물 내부의 천장이나 벽에 붙이거나 설치하는 것

나. 실내장식물의 종류

- 1) 종이류(두께 2밀리미터 이상인 것)·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
- 2) 합판이나 목재
- 3) 실(室) 또는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칸막이 또는 간이 칸막이
- 4) 흡음이나 방음을 위하여 설치하는 흡음재(흡음용 커튼 포함) 또는 방음재(방음용 커튼 포함)

※ 제외대상 : 가구류(옷장, 찬장, 식탁, 식탁용 의자, 사무용 책상, 사무용 의자 및 계산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너비 10센티미터 이하인 반자동림대 등, 내부마감재료

다. 실내장식물에 대한 조치명령 등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소의 실내장식물이 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그 다중이용업주에게 실내장식물의 교체나 제거와 같은 조치명령을 하거나 허가관청에 관계 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5. 영업장의 내부구획

제10조의2(영업장의 내부구획) ①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내부를 구획하고자 할 때에는 불연재료로 구획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은 천장(반자속)까지 구획하여야 한다.

1.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영업
2. 노래연습장업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장의 내부구획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③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영업장의 내부구획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다중이용업주에게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허가 관청에 관계 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가. 영업장의 내부구획 개념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내부를 벽이나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여 실(室)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나. 내부구획의 방법

- 1) 불연재료의 벽이나 칸막이로 구획
- 2) 영업장의 천장(반자속)까지 구획 -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6. 다중이용업소 위반시설의 시정보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안전시설등이 총리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그 다중이용업주에게 안전시설등에 대하여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허가관청에 관계 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7. 다중이용업소의 완비증명절차

가. 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

- 1) 신고인 : 다중이용업을 하고자 하는 자
- 2) 신고시기 : 안전시설등을 설치하거나 공사를 마친 경우
- 3) 신고서류
 - ① 안전시설등 설치(완공)신고서
 - ② 소방시설설계업자가 작성한 안전시설등의 설계도서(소방시설의 계통도, 실내장식물의 재료 및 설치면적, 내부구획의 재료, 비상구 및 창호도 등이 표시된 것)
 - ③ 안전시설등의 설치명세서
 - ※ 완공신고의 경우 설계도서와 설치내역서가 설치신고 시와 달라진 경우에만 제출
 - ④ 구획된 실의 세부용도 등이 표시된 영업장의 평면도(복도, 계단 등 해당 영업장의 부수시설이 포함된 평면도)
 - ⑤ 화재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등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⑥ 전기안전점검확인서(고시원업, 전화방·화상대화방, 수면방업, 콜라텍업)

나. 안전시설등의 설치 지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안전시설등의 시공 신고를 받은 때에는 설계도서가 총리령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고, 그에 맞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다. 현장확인 및 완비증명서 발급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공사완료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현장을 확인한 결과 안전시설등이 총리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발급하고,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고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라.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재발급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재발급 신청서에 이전에 발급받은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첨부(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잃어버린 경우
- 2)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가 헐어서 쓸 수 없게 된 경우
- 3) 안전시설등 및 영업장 내부구조 변경 등이 없이 법 제7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 4) 안전시설등을 추가하지 아니하는 업종으로 업종 변경을 한 경우. 다만, 내부구조 변경 등이 있거나 업종 변경에 따라 강화된 기준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8.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제11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다중이용업주는 해당 영업장에 설치된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과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화벽, 내부 마감재료 등(이하 “방화시설”이라 한다)을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유지하고관리하여야 한다.

※ 피난 및 방화시설 위반행위(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건축법 제49조제1항, 제50조 내지 제53조)

가. 피난·방화시설등의 폐쇄(잠금 포함)행위(제1호)

- 건축법령에 의거 설치한 피난·방화시설을 유사시 사용할 수 없도록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 계단, 복도 등에 방범철책(창)등을 설치 시건장치를 설치하고 잠금을 하는 행위
- 비상구등에 시건장치(고정식 잠금장치등)를 설치하여 누구나 쉽게 열 수 없도록 하는 행위

-용접, 조적, 쇠파이프, 석고보드 또는 합판등으로 비상(탈출)구의 개방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행위

-기타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누구라도 폐쇄라고 볼 수 있는 행위

〈예외〉 방법철책등 설치가 피난·방화시설 폐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 옥상이 설치된 건축물 최상층에 주택이 있는 경우 해당층등의 계단에 방법철책(창)을 설치하고 잠금장치를 설치한 경우로서,

⇒ 주택을 제외한 타 영업소의 관계인이 방법철책(창)의 잠금장치를 유사시 개방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 경우

2) 정신병동등 특수시설이 있는 의료시설에서 해당층등이 복도 및 계단등에 방법철책(창)을 설치하고 잠금장치를 설치한 경우로서,

⇒ 24시간 관계인이 상주하면서 방법철책(창)등의 잠금장치를 유사시 개방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 경우

※ 피난·방화시설 관리로 인정되는 경우(상기 "1. 2" 공통)

- 화재등 비상시 자동 개방되는 FI인증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 방재실에서 원격조작에 의해 자동 개방되는 구조
- 화재 또는 정전 시 자동 개방되는 구조

나. 피난·방화시설등의 훼손행위(제1호)

- 방화문을 철거(제거)하는 행위나 방화문에 고임장치(도어스톱)등을 설치 또는 자동폐쇄장치를 제거하여 그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
- 배연설비가 작동되지 아니하도록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 기타 객관적인 판단하에 누구라도 피난·방화시설을 훼손하였다고 볼 수 있는 행위(구조적인 시설을 물리력을 가하여 훼손한 때)

다. 피난·방화시설등 용도장애 또는 소방활동(소방기본법 제16조) 지장 초래행위(3호)

- 상기1 내지 4에서 적시한 행위로 피난·방화시설등의 용도에 장애를 유발하거나, 화재시 소방호스 전개상 걸림·꼬임현상등 소방활동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행위
- 상기1 내지 4에서 적시하지 아니한 행위로 피난·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행위

라. 피난·방화시설등의 변경행위(제4호)

- 방화구획 및 내부마감재료를 임의로 변경하여 건축법령에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는 행위
 - 임의구획으로 무창층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 방화구획에 개구부를 설치하여 그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
- 방화문을 철거하고 목재, 유리문 등으로 변경하는 행위
- 객관적인 판단에 누구라도 피난·방화시설을 변경하여 건축법령에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는 행위

마. 피난·방화시설 주위에 물건 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행위(제2호)

- 계단, 복도(통로) 또는 출입구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또는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 계단 또는 복도에 방범철책(문)등을 설치하는 행위
 - 방범철책에 고정식 잠금장치를 설치하는 행위는 피난·방화시설의 폐쇄행위에 해당(제1호 참조)
- 방화샷다 주위에 물건 또는 장애물을 설치하여 그 기능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예외〉 물건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 공동주택

- 복도(계단제외)에 자전거 등을 질서있게 일렬로 정비하여 복도(통로)폭을 2사람이 피난 가능하도록 확보한 경우
 - ⇒ 옥외에 자전거보관대를 설치, 보관대책 등 강구(행정지도등)
- 상시보관이 아닌 일시보관 물품으로서 즉시 이동이 가능한 단순 일상생활용품(쓰레기봉투, 휴지통, 유모차, 소규모 화본등)이 피난에 장애가 없이 보관되는 경우

- 복도 끝이 막힌구조로 그 끝쪽에 피난 및 소방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물건을 보관하는 경우
- 2) 공동주택 이외의 특수장소
 - 특수장소의 계단을 흡연실로 지정 운영함에 있어 계단참 구석에 휴지통(재떨이)을 고정하여 설치하는 경우(내화성능의 재료로 피난에 지장이 없는 소규모의 것)
 - 특수장소별 규모, 면적, 수용인원을 고려하여 즉시 현지시정이 가능한 경우(현장상황에 따라 소방관서장이 판단)
 - 공중전화기, 소규모의 자판기 등이 벽 등에 고장 설치되어 피난 및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현장상황에 따라 소방관서장이 판단)

《다중이용업소 소방특별조사시 확인 사항》

- 1) 비상구 설치 유·무 확인후 피난방향으로 열리는 구조여부 확인
- 2) 영업장 위치가 4층이하(지하층 제외)로서 건축물 구조상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난기구의 적합성 및 피난상 유효한 발코니 또는 부속실 설치여부 확인
- 3) 방염선처리 물품은 인증기관 성적서 및 라벨을 확인하고, 방염후처리(목재, 합판) 물품은 소방서에서 발급한 성적서 및 확인표지 확인
- 4) 영업장안의 구획된 실마다 설치해야 하는 소화기, 휴대용비상조명등, 비상경보설비 설치여부 확인
- 5) 가스시설을 사용하는 주방 또는 난방시설이 설치된 장소에 가스누설경보기 설치여부 확인
- 6) 가스시설을 사용하는 주방의 경우 자동화산소화기 설치여부를 확인한다.
- 7) 관계자에게 반드시 피난요령 및 소화기 교육 실시

9. 피난안내도의 비치 등

제12조(피난안내도의 비치 또는 피난안내 영상물의 상영) ① 다중이용업주는 화재 등 재난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의 발생 시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계단·피난통로, 피난설비 등이 표시되어 있는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하여야 하는 대상,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어야 하는 위치,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의 상영시간,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가. 피난안내도 비치 및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 대상

1) 피난안내도 : 모든 다중이용업소

※ 제외 :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제곱미터 이하인 대상, 영업장내 구획된 실이 없고 영업장 어느 부분에서도 출입구 및 비상구 확인이 가능한 대상

2) 피난안내 영상물

가) 영화상영관 및 비디오물소극장업

나) 노래연습장업

다)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영상물을 상영할 수 있는 시설이 설치된 경우)

라) 피난안내 영상물을 상영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전화방업·화상대화방업·수면방업·콜라텍업

나. 피난안내도 비치위치

1) 영업장 주 출입구 부분의 손님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

2) 구획된 실의 벽, 탁자 등 손님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

3)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업장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이 설치된 책상(새로운 이용객이 컴퓨터를 작동할 때마다 피난안내도가 모니터에 나오는 경우에는 제외)

다.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시기

- 1) 영화상영관 및 비디오물소극장업 : 매 회 영화상영 또는 비디오물 상영 시작 전
- 2) 노래연습장업 등 그 밖의 영업 : 노래방 기기가 처음 작동 될 때

라.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 영상물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 1) 화재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 위치
- 2) 구획된 실 등에서 비상구 및 출입구까지의 피난동선
- 3) 소화기, 옥내소화전 등 소방시설의 위치 및 사용방법
- 4) 피난 및 대처방법

마. 피난안내도의 크기 및 재질

- 1) 크기: ① B4(257mm×364mm) 이상의 크기
② A3(297mm×420mm) 이상의 크기(각 층별 영업장의 면적 또는 영업장이 위치한 층의 바닥 면적이 각각 400㎡ 이상인 경우)
- 2) 재질: 종이(코팅 처리한 것), 아크릴, 강판 등 쉽게 훼손 또는 변형되지 않는 것으로 할 것

바.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 영상물에 사용하는 언어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영상물은 한글 및 1개 이상의 외국어를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사.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영상물의 점검

피난안내도를 비치하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하여야 하는 다중이용업주는 안전시설등을 점검할 때에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포함하여 점검하여야 한다.

10. 다중이용업소의 정기점검

제13조(다중이용업주의 안전시설등에 대한 정기점검 등) ① 다중이용업주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시설등을 점검하고 그 점검 결과서를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중이용업소에 설치된 안전시설등이 건축물의 다른 시설·장비와 연계되어 작동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등 관련 시설·장비를 관리하는 관계인(소방안전관리자를 포함한다)은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다중이용업주는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주기, 점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가. 안전점검 대상 :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 설치된 안전시설등

나. 안전점검자의 자격

- 1) 다중이용업주 또는 소방안전관리자
- 2) 종업원 중 소방안전관리자·소방기술사·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 3) 소방시설관리업자

다. 점검주기 : 매 분기별 1회 이상 점검.

※ 자체점검을 실시한 분기에는 점검 생략 가능

라. 점검방법 : 소방시설등의 작동여부를 점검

마. 점검결과보고서 : 1년간 보관

제 5 장

다중이용업주의 화재배상
책임보험의 의무가입 등

2제13조의2(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① 다중이용업주는 다중이용업소의 화재(폭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부상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하 “화재배상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보험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른 종류의 보험상품에 제1항에서 정한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으로 본다.

③ 보험회사는 제1항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등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 보험료율을 차등 적용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보험회사가 보험료율을 차등 적용할 경우에는 다중이용업소의 업종 및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3조의3(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촉진 및 관리) ① 다중이용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후 그 증명서(보험증권을 포함한다)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7조제2항제3호 중 다중이용업주를 변경한 경우
2. 제9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신고를 할 경우

②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다중이용업주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영업소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③ 보험회사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다중이용업주에게 그 계약 종료일의 75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의 기간 및 3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의 기간에 각각 그 계약이 끝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계약의 경우

2. 다중이용업주가 자기와 다시 계약을 체결한 경우
 3. 다중이용업주가 다른 보험회사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안 경우
 ④ 보험회사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실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1.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한 경우
 2.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그 계약을 해지한 경우
 3.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한 자가 그 계약 기간이 끝난 후 자기와 다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주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허가관청에 다중이용업주에 대한 인가·허가의 취소, 영업의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⑥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주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대표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2. 휴업·폐업한 사업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휴업일·폐업일

제13조의4(보험금의 지급) 보험회사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보험금 결정 후 14일 이내에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3조의5(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의 체결의무 및 가입강요 금지) ① 보험회사는 다중이용업주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때에는 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경우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다수의 보험회사가 공동으로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다중이용업주에게 공동계약체결의 절차 및 보험료에 대한 안내를 하여야 한다.

③ 보험회사는 화재배상책임보험 외에 다른 보험의 가입을 다중이용업주에게 강요할 수 없다.

제13조의6(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의 해제·해지) 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중이용업주와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라 다중이용업주가 변경된 경우. 다만, 변경된 다중이용업주가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을 승계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다중이용업주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이중으로 가입되어 그 중 하나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려는 경우
3.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절 화재배상책임보험의 의의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반적인 안전관리 대전환이 필요하여 다중이용업소 특별법을 제정하였고, 이 특별법의 목적은 다중이용업소에서의 화재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대형사고의 경우 피해자 보상을 영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나 부담능력이 없기 때문에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보상을 요구하며 장기농성과 소송을 제기하는 등 사회문제가 되었고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의 손실과 피해자 가족의 고통이 심했다.

그러나, 현행 「국가배상법」상 정부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의무가 없어 사후처리가 장기화되었으며 그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는 국민정서를 고려하여 조례제정 등을 통해 우선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대신 지급하고, 영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고자 하였으나 실제로는 구상권 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회통념이나 행정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되어 앞으로 발생하는 사고에 지자체가 보상해야 한다는 관행으로 자리 잡았으며, 피해자 가족은 이를 당연시 여기게 되는 실정이 되었다.

이에 따라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화재배상제도를 도입·시행하게 되었다. 이는 국민정서에 반하여 영업주를 대신해 정부가 피해 보상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영업주의 보상능력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 인명피해율이 높은 다중이용업소 만이라도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대다수 영세한 다중이용업주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업주의 생명·재산을 제외하고 타인의 생명·재산상의 손해만 배상하도록 하여 피해자 보호에 중점을 둔 최소한의 사후 처리 수단으로 볼 수 있다.

제2절 주요내용

1. 법률 시행일

가. 시행일

- 1) 신규 다중이용업소 : 2013년 2월 23일부터
- 2) 기존 다중이용업소 : 2013년 2월 23일 ~ 8월 22일까지 가입(6개월 이내)

나. 영업장 면적 150㎡미만인 5개 업종의 시행일

- 1) 신규 다중이용업소 : 2015년 2월 23일부터
- 2) 기존 다중이용업소 : 2015년 2월 23일 ~ 8월 22일까지 가입(6개월 이내)

※ 5개 업종 : 휴게·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2. 주요 내용

가.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

- 1) 대상 : 모든 다중이용업주
- 2) 보상범위 : 화재·폭발로 인한 타인의 사망, 부상·재산상의 손해
- 3) 보험금액 : 대통령령에 규정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 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수건물에 입주한 다중이용업소 제외

가 입 대 상	제 외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다중이용업소(원칙) - 23개 업종 ※ 화보법의 특수건물에 입주한 다중이용업소 제외(예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보법* 대상(같은 건물로 한정) - 휴게·일반음식점, 단란·유흥주점, 게임제공업, PC방, 노래연습장 등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 합계 2,000㎡이상** - 개별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 이상인 목욕장, 학원, 영화상영관 등*** - 실내사격장, 11층 이상

* 화보법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 업종별로 용도가 동일하지 않아도 바닥면적 합산(단란주점 + 노래방 + PC방)

*** 용도가 동일한 업종만 바닥면적 합산(학원 + 학원)

※ 화보법은 다중특별법의 1층, 피난층 제외 등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촉진 제도

- 1) 보험가입 증명서 제출 : 설치신고, 업주 성명변경의 경우
- 2) 보험가입 표지 부착 :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표지 부착

다. 화재배상책임보험 관련 보험회사의 의무

- 1) 보험계약 만료 안내 : 업주에게 보험계약 만료예정 통지(2회)
- 2) 업주의 보험가입을 거부하지 못함
- 3) 임의로 업주와의 계약을 해지하지 못함
- 4) 화재배상책임보험외의 다른 보험의 가입을 강요하지 못함

라. 화재배상책임보험 관련 위반자의 조치

- 1) 보험 미가입자 : 과태료 부과, 인·허가의 취소, 영업정지 요청
- 2) 보험가입 거부, 임의로 계약해지 : 과태료 부과
- 3) 보험기간 만료 미통지 : 과태료 부과

3. 보험금액

가. 하나의 사고에 대한 보험금액

- 1) 사망의 경우: 피해자 1명당 1억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것. 다만, 그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할 것
- 2) 부상의 경우: 피해자 1명당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것
- 3)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의 장애(“후유장애”)가 생긴 경우: 피해자 1명당 별표 3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것
- 4) 재산상 손해의 경우: 사고 1건당 1억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것

나. 하나의 사고로 가항1호에서 3호까지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 1) 부상당한 사람이 치료 중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피해자 1명당 가항1호에 따른 금액과 가항2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지급할 것
- 2) 부상당한 사람에게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 피해자 1명당 가항2호에 따른 금액과 가항3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지급할 것
- 3) 가항3호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피해자 1명당 가항제1호에 따른 금액에서 가항제3호에 따른 금액 중 사망한 날 이후에 해당하는 손해액을 뺀 금액을 지급할 것

4.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요율 차등 적용 등

보험회사가 다중이용업주와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다중이용업소가 속한 업종의 화재발생빈도, 영업장 면적, 법령위반업소인지의 여부 및 안전관리우수업소인지의 여부를 고려하여 보험요율을 정할 수 있다. 또한 보험회사가 보험요율을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국민안전처장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법령위반업소 및 안전관리우수업소의 현황에 관한 자료를 보험요율 산출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5. 계약체결사실 통지

가. 보험계약 체결사실 통지 시기

- 1) 법 제13조의3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체결 사실을 보험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입력한 날부터 5일 이내. 다만, 계약의 효력발생일부터 30일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법 제13조의3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지 사실을 보험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입력한 날부터 5일 이내. 다만, 계약의 효력소멸일부터 30일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법 제13조의3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시기
 - ①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기간 내에 계약이 끝난 경우: 같은 달 20일까지
 - ② 매월 11일부터 20일까지의 기간 내에 계약이 끝난 경우: 같은 달 말일까지

- ③ 매월 21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 내에 계약이 끝난 경우: 그 다음 달 10일까지

나. 보험계약 체결사실 통지 사항

- 1) 다중이용업주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법인등록번호 및 주소)
- 2) 다중이용업소의 상호, 영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종류, 영업장 면적 및 영업장 주소
- 3)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 기간(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만 해당)

6. 보험계약의 해제·해지

가. 보험계약의 해제·해지 금지

보험회사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다중이용업주와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보험계약 해제·해지 가능 사유

- 1)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라 다중이용업주가 변경된 경우. 다만, 변경된 다중이용업주가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을 승계한 경우는 제외한다.
- 2) 다중이용업주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이종으로 가입되어 그 중 하나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려는 경우
- 3)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① 폐업한 경우
 - ② 영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 ③ 천재지변, 사고 등의 사유로 다중이용업주가 다중이용업을 더 이상 운영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증명한 경우
 - ④ 「상법」 제650조제1항·제2항, 제651조, 제652조제1항 또는 제654조에 따른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 6 장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기반
구성

제1절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안전관리

제14조(다중이용업소의 소방안전관리) 다중이용업주는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6항제3호·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2절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위험평가

1. 화재위험평가의 의의

“화재위험평가”라 함은 다중이용업소가 밀집한 지역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화재의 가능성과 화재로 인한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 및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소방안전제도는 화재안전기준에 의하여 획일적으로 운용되기 때문에 기존의 법규 적용만으로는 새로운 형태의 신종업이 출현할 때마다 법규정을 보완해야 하는 등 환경 변화에 능동적 대처가 어려운 실정이다.

예를 들면 복합영화상영관, 유흥시설, 휴게음식점 등이 하나의 건축물에 집단화되어 고층건물 안에 함께 영업을 하는 경우 개별업소의 안전과 함께 총체적 안전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소방 환경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이미 타법에서 시행하

고 있는 평가제도⁵³⁾와 같이 소방분야에도 화재위험평가 제도를 도입·실시하여 종합적인 안전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사전에 대형 사고를 예방하고자 동 특별법에서는 국민안전처장관·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소가 밀집한 지역에서 다중이용업소 등에 대하여 화재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화재위험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화재위험평가의 실시 및 결과조치

제15조(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위험평가 등) ① 국민안전처장관·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로 인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화재위험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2,000㎡ 지역 안에 다중이용업소가 5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경우
2. 5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중이용업소가 10개 이상 있는 경우
3. 하나의 건축물에 다중이용업소로 사용하는 영업장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경우

② 국민안전처장관·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위험평가 결과 그 위험 유발지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다중이용업주에게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국민안전처장관·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2항에 따른 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되거나 설비된 다중이용업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3)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3조의2(안전성평가등)

①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은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안전성평가를 하고 안전성향상계획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관청에 제출하거나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안전성향상계획에는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① 시·도지사는 공중위생영업소(관광숙박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위생관리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위생서비스평가계획(이하 “평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평가계획에 따라 관할지역별 세부평가계획을 수립한 후 공중위생영업소의 위생서비스수준을 평가(이하 “위생서비스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 ④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위험평가의 결과 그 위험유발지수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미만인 다중이용업소에 대하여는 안전시설등의 일부를 설치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 ⑤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위험평가를 제16조제1항에 따른 화재위험평가대행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가. 화재위험평가 실시대상

- 1) 2,000㎡ 지역 안에 다중이용업소가 5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경우
- 2) 5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중이용업소가 10개 이상 있는 경우
- 3) 하나의 건축물에 다중이용업소로 사용하는 영업장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경우

나. 화재위험평가결과 조치

- 1) 조치명령의 발부(「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국민안전처장관·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위험평가의 결과 그 위험유발지수가 D 또는 E 등급인 경우에는 해당 다중이용업주에 대하여 조치명령을 발부할 수 있다. 이때 손실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 또는 설비된 다중이용업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손실보상

가) 손실보상의 기준

국민안전처장관·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손실을 시가로 보상해야 한다.

나) 손실보상의 절차

- (1)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
- (2)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그 보상금액을 지급. 다만, 보상금액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할 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보상금액을 공탁하고 이 사실을 통지.
- (3)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의 통지에 불복하는 자는 30일 이내에 중앙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裁決)을 신청

3) 안전시설등의 설치 면제

화재위험평가의 결과 그 위험유발지수가 A 등급인 경우 안전시설등의 일부를 설치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4) 화재위험평가의 대행

국민안전처장관·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위험평가를 화재위험평가 대행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3. 화재위험평가대행자

제16조(화재위험평가대행자의 등록 등) ①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재위험평가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화재위험평가대행자(이하 “평가대행자”라 한다)로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평가대행자로 등록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삭제(2015.1.20.)
3. 제17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임원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③ 평가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평가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지 아니할 것
2. 다른 평가서의 내용을 복제하지 아니할 것
3. 평가서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할 것
4. 등록증이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도급받은 화재위험평가 업무를 하도급하지 아니할 것

④ 평가대행자는 업무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면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7조(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평가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16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임명한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3. 최근 1년 이내에 2회의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이나 명의를 대여한 경우
 5. 제16조제1항 전단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6. 제16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다른 평가서의 내용을 복제한 경우
 7. 제16조제3항제3호를 위반하여 평가서를 총리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8. 제16조제3항제4호를 위반하여 도급받은 화재위험평가 업무를 하도급한 경우
 9. 평가서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평가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10. 등록 후 2년 이내에 화재위험평가 대행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화재위험평가 대행실적이 없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화재위험평가 대행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2(청문)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평가대행자의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4. 화재위험평가서의 작성등

제18조(평가서의 작성방법 및 평가대행비용의 산정기준) 국민안전처장관은 평가서의 작성방법 및 화재위험평가의 대행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3절 안전관리기반구축

1. 안전관리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

- 제19조(안전관리에 관한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허가등 또는 그 변경 사항과 관련 통계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정보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 수립, 연구·조사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다중이용업주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구축·운영하는 전산시스템과 보험회사 및 보험 관련 단체가 관리·운영하는 전산시스템을 연계하여 책임보험 전산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③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 및 제2항에 따른 책임보험전산망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허가관청, 보험회사 및 보험 관련 단체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④ 국민안전처장관은 허가관청이 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책임보험전산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법령위반업소의 공개

- 제20조(법령위반업소의 공개) ①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주가 제9조제2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2회 이상 받고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조치 내용(그 위반사항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고발된 경우에는 그 고발된 사실을 포함한다)을 인터넷 등에 공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위반업소를 공개하는 경우 그 내용·기간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 법령위반업소공개제도의 의의

안전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상태에서 영업을 계속하는 업소를 공개함으로써 이용자에게는 알권리 보장차원에서 정보를 제공하여 화재위험이 높은 업소의 출입을 간접적으로 자제하도록 하는 한편, 영업주에게는 심리적·사회적 부담을 줄으로써 법규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여 상습적인 안전관리 위반업소를 해소하려는 취지로 동 특별법에서는 다중이용업주가 안전관리기준 등을 위반하여 보완 등 시정조치 명령을 2회 이상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조치내용 등을 인터넷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위반업소의 공개는 의무사항이 아니고, 자율적 시정을 유도하려는 것임을 감안하여 법령위반에 따른 행정기관의 조치내용만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개인 신상정보의 공개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나. 조치명령 미이행업소 공개의 제한

조치명령 미이행업소의 공개가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제3자와 관련된 사실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공개의 통지

공개내용과 공개방법 등을 그 업소의 관계인(영업주와 소속 종업원)에게 사전 통지

라. 공개사항

1. 미이행업소명
2. 미이행업소의 주소
3. 국민안전처장관·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조치한 내용
4. 미이행의 횟수

마. 공개기간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부터 조치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바. 공개방법

- 관보, 시·도의 공보, 중앙(지방)일간지 신문, 유선방송, 반상회보, 시·군·구청 소식지 등의 2개 이상의 매체에 공개
- 국민안전처,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 경우 다중이용업주가 사후에 조치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를 확인한 날부터 2일 이내에 공개내용을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3. 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

제21조(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 등) 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업무 이행 실태가 우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다중이용업주에게 통보하고 이를 공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다중이용업주는 그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이하 “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라 한다)를 영업소의 명칭과 함께 영업소의 출입구에 부착할 수 있다.

③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다중이용업소에 대하여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제8조에 따른 소방안전교육 및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소방특별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④ 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가.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제도의 의의

규제·단속위주의 행정에서 법정요건을 충족한 우수업소에 대하여 간접적인 보상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다중이용업주를 법집행의 수동적 객체에서 능동적 협력자로 유도하여 자율적인 안전관리체제를 마련하고자, 법령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이를 공개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자제하도록 하는 제도와 병행하여 동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사업주의 자발적인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자·동 특별법은 안전관리업무 이행실태가 우수한 업소에 대하여 이를 공표하고 우수업소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소방검사 및 소방안전교육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다

참고로 이와 유사한 공개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입법례⁵⁴⁾로서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 등이 있다.

나. 안전관리우수업소의 요건

- 1)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가 없을 것
- 2)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없을 것
- 3)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화재 발생 사실이 없을 것
- 4)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을 것

다. 안전관리우수업소의 지정

- 1)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지정통보 및 공표
- 2) 다중이용업주의 신청에 의한 요건 확인 후 지정통보 및 공표

라. 안전관리우수업소의 공표

1) 공표절차

54)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5조 (우수문화상품의 지정·표시)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우수문화상품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해당 제품에는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우수문화상품으로 지정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붙일 수 있다.

식품위생법 제47조 (위생등급)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위생등급기준에 따라 위생관리 상태 등이 우수한 식품 등의 제조·가공업소, 식품접객업소 또는 집단급식소를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로 지정할 수 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14조 (위생관리등급 공표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생서비스평가의 결과에 따른 위생관리등급을 해당공중위생영업자에게 통보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공중위생영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위생관리 등급의 표지를 영업소의 명칭과 함께 영업소의 출입구에 부착할 수 있다.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안전관리우수업소를 인정하여 공표하려 안전관리우수업소 인정 예정공고를 하고 공고에 따른 안전관리우수업소 인정 예정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안전관리우수업소 인정 예정 공고일부터 20일 이내에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전자우편이나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이의신청이 있으면 이에 대하여 조사·검토한 후, 그 결과를 이의신청을 한 당사자와 해당 다중이용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안전관리우수업소를 인정하여 공표하려는 경우에는 공표일부터 2년의 범위에서 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 사용기간을 정하여 공표해야 한다.

2) 우수업소표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안전관리우수업소에 대하여 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를 발급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 이후 30일 이내에 정기검사를 실시하여 영 제19조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를 갱신해 주어야 한다.

마. 안전관리우수업소의 우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안전관리우수업소에 대하여 안전관리업무 이행실태가 우수하다고 통보 받은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소방특별조사 및 제8조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바. 압류의 금지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 청구권 중 다른 사람의 사망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청구권은 이를 압류할 수 없다.

제 7 장 | 벌 칙

1. 벌칙

제2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평가대행자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화재위험평가 업무를 대행한 자
2. 제22조제5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이용한 자

2. 양벌규정

제2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3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과태료

제2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소방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종업원이 소방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지 아니한 다중이용업주

2.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시설등을 기준에 따라 설치·유지하지 아니한 자
- 2의2.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안전시설등을 설치하거나 영업장 내부구조를 변경한 자 또는 안전시설등의 공사를 마친 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실내장식물을 기준에 따라 설치·유지하지 아니한 자
- 3의2. 제10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영업장의 내부구획을 기준에 따라 설치·유지하지 아니한 자
4. 제11조를 위반하여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에 대하여 폐쇄·훼손·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
5.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하지 아니한 자
6. 제13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정기점검결과서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 6의2.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 6의3. 제13조의3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통지를 하지 아니한 보험회사
- 6의4. 제13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다중이용업주와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제13조의6을 위반하여 임의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보험회사
7. 제14조를 위반하여 소방안전관리업무를 하지 아니한 자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부과·징수한다.

가. 부과대상

- 소방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종업원에 대하여 소방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지 아니한 다중이용업주
- 안전시설등을 기준에 따라 설치·유지하지 아니한 자
-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안전시설등을 설치하거나 영업장 내부구조를 변경한 자 또는 안전시설등의 공사를 마친 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실내장식물을 기준에 따라 설치·유지하지 아니한 자
- 영업장의 내부구획을 기준에 따라 설치·유지하지 아니한 자

-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에 대하여 폐쇄·훼손·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
-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피난안내영상물을 상영하지 아니한 자
- 정기점검결과서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 보험 만료사실 등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보험회사
- 다중이용업주와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임의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보험회사
- 소방안전관리업무를 하지 아니한 자

나. 부과기준

○ 일반기준

-과태료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하여 부과할 수 있다. (단, 과태료 체납 위반행위자는 제외)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처음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로서, 3년 이상 해당 업종을 모 범적으로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화재 등 재난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 4)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5) 위반행위자가 같은 위반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과태료·벌금·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 6)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 7)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처분

을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하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회	2회	3회 이상
가. 다중이용업주가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소방안전교육을 받지 않거나 종업원이 소방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5조제1항 제1호	50	100	300
나. 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시설등을 기준에 따라 설치·유지하지 않은 경우	법 제25조제1항 제2호			
1) 안전시설등의 작동·기능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경미한 사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50	
2) 안전시설등을 다음에 해당하는 고장상태 등으로 방치한 경우			100	
가) 소화펌프를 고장상태로 방치한 경우				
나) 수신반(受信盤)의 전원을 차단한 상태로 방치한 경우				
다) 동력(감시)제어반을 고장상태로 방치하거나 전원을 차단한 경우				
라)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을 차단한 경우				
마) 소화배관의 밸브를 잠금상태로 두어 소방시설이 작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회	2회	3회 이상
<p>동할 때 소화수가 나오지 아니하거나 소화약제(消火藥劑)가 방출되지 아니한 상태로 방치한 경우</p> <p>3) 안전시설등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p> <p>4) 비상구를 폐쇄·훼손·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p> <p>5)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에 피난에 지장을 주는 물건 등을 쌓아 놓은 경우</p>			300	
<p>다. 법 제9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p> <p>1) 안전시설등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안전시설등을 설치한 경우</p> <p>2) 안전시설등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장 내부구조를 변경한 경우</p> <p>3) 안전시설등의 공사를 마친 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p>	법 제25조 제1항 제2호의2		50	
<p>라.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실내장식물의 기준에 따라 실내장식물을 설치·유지하지 않은 경우</p>	법 제25조 제1항 제3호	50	100	300
<p>마. 법 제10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영업장의 내부구획 기준에 따라 내부구획을 설치·유지하지 않은 경우</p>	법 제25조 제1항 제3호의2	50	100	300
<p>바. 법 제11조를 위반하여 피난시설</p>	법 제25조	50	100	300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회	2회	3회 이상
이나 방화시설을 폐쇄·훼손·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제1항 제4호			
사.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지 않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하지 않은 경우	법 제25조제1항 제5호	50	100	300
아. 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지점검결과서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법 제25조제1항 제6호	50		
자. 법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1)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 이하인 경우 2)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 초과 30일 이하인 경우 3)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초과 60일 이하인 경우 4)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60일 초과인 경우	법 제25조제1항 제6호의2	10 10만원에 1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30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3만원을 더한 금액 120만원에 6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6만원을 더한 금액. 다만 과태료의 총액은 300만원을 넘지 못한다.		
차. 보험회사가 법 제13조의3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5조제1항 제6호의3		300	
카. 보험회사가 법 제13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다중이용업주와의	법 제25조제1항		300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회	2회	3회 이상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 체결을 거부한 경우	제6호의4			
타. 보험회사가 법 제13조의6을 위반하여 임의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법 제25조제1항 제6호의4		300	
파. 법 제14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5조제1항 제7호	50	100	300

나. 과태료 처분절차

- 부과권자 : 국민안전처장관·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 과태료 부과통지
 -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 금액·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서면으로 자세히 밝혀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
- 의견진술기회부여
 - 부과권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날까지 의견을 진술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과태료처분
- 이의제기
 -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법원통보
 - 부과권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과태료 징수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4. 이행강제금

가. 이행강제금제도의 의의

○이행강제금 제도는 장래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일정 기간 내에 의무를 이행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과태료 제도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장래 의무의 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겠는바, 시설에 대한 보완 또는 개수 등의 조치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고, 그 기간 안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금을 부과한다는 고지를 함으로써 자발적으로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려는 취지의 제도이다. 이행강제금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입법례⁵⁵⁾로서는 건축법, 농지법, 옥외광고물관리법 등이 있음.

제26조(이행강제금) ①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9조제2항, 제10조제3항, 제10조의2제3항 또는 제15조제2항에 따라 조치 명령을 받은 후 그 정한 기간 이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②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55) 건축법 제80조 (이행강제금) ①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농지법 제65조 (이행강제금) ①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1조제1항(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처분명령을 받은 후 제11조제2항에 따라 매수를 청구하여 협의종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간까지 그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해당 농지의 토지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옥외광고물관리법 제10조의3 (이행강제금) ①시장등(제3조의2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후 그 조치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관리자등(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의 관리자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부과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것을 미리 문서로 알려 주어야 한다.

③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이행강제금의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 제기 방법 및 이의 제기 기관 등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최초의 조치 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그 조치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⑤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조치 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⑥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채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⑦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금액과 이의 제기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이행강제금 부과대상.

- 안전시설등의 시정보완명령이나 화재위험평가결과 조치명령을 받은 후 그 정한 기간 이내에 해당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

다.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 일반기준
 - 이행강제금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를 고려하여 개별기준의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액의 2분의 1까지 경감하여 부과할 수 있다.
 - 부과금액 : 1천만원 이하

○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이행강제금 금액
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안전시설등에 대하여 보완 등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1) 안전시설등의 작동·기능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 2) 안전시설등을 고장상태로 방치한 경우 3) 안전시설등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법 제26조제1항	200 600 1,000
나.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실내장식물에 대한 교체 또는 제거 등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26조제1항	1,000
다.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영업장의 내부구획에 대한 보완 등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26조제1항	1,000
라.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1) 다중이용업소의 공사의 정지 또는 중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다중이용업소의 사용금지 또는 제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3) 다중이용업소의 개수·이전 또는 제거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26조제1항	200 600 1,000

라.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

- 부과권자 : 국민안전처장관·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 이행강제금 부과통지
 -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알려 주어야 한다.
- 이행강제금의 부과
 -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이행강제금의 부과사유·납부기한·수납기관·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

써 행하여야 한다.

○이의제기

-불복이 있는 자는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행강제금 징수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마. 이행강제금 부과 방법

○최초의 조치 명령이 있을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2회 이내의 범위 안에서 해당 조치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바. 이행강제금 징수절차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에 관해서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제 8 장 부 칙

1. 의의

'부칙'이란 본칙에 부수하여 그 법령의 시행일과 그 법령의 시행에 따르는 과도적인 조치, 그리고 그 법령의 시행에 따라 필요한 다른 법령의 개정 사항 등을 규정한 부분을 말한다.

법령을 제정하고 개정하며 폐지하는 법제 활동을 통하여 추구하려는 내용은 법령 본칙에서 규정되지만, 그 밖에도 법제도가 변동되는 시점을 분명히 하고 종전의 법률관계에서 새로운 법률관계로 전환하는 과정이 순조롭게 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나 경과적인 조치 같은 것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조치들에는 법령의 주요 내용이 되는 기본 제도와는 달리 일정한 기간에만 적용한다든지 특정된 몇몇 사람에게만 적용한다든지 또는 관련되는 법령을 개정해 주는 조치로 법령의 일관성을 유지한다든지 하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본칙과는 달리 잠정적 성격을 띠거나 일시적 조치의 성격을 띠는 것들이다. 이와 같은 규정들은 본칙을 모두 규정한 다음에 부칙이라는 표제 아래 따로 모아 둔다.

2. 규정 사항

- 가. 법령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
- 나. 법령의 유효기간에 관한 규정
- 다. 기존 법령의 폐지에 관한 규정

라. 법령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에 관한 규정

마. 법령의 시행에 따른 적용례에 관한 규정

바. 법령의 시행에 따른 특례에 관한 규정

사. 법령의 시행에 따른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

아. 법령과 관련된 다른 법령의 개정에 관한 규정

자.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관한 규정

부칙 <제7906호, 2006.3.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2조 또는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 제8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 (소방시설등 설치·유지 및 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적합하게 설치·유지 및 관리되어 온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시설등은 이 법 제9조제1항 규정에 적합한 소방시설등으로 본다.

제4조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2항 및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2조 또는 제23조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12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23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48조제1호중 “제8조제2항·제9조제2항”을 “제9조제2항”으로 한다.

제53조제1항제1호중 “제8조제1항·제9조제1항”을 “제9조제1항”으로 하고, 동항제4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8852호, 2008.2.29.>(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15> 까지 생략

<71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4항, 제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12조제2항, 제13조제2항·제3항, 제16조제1항 전단·제3항제3호·제5항, 제17조제1항제7호·제3항, 제21조제3항·제4항 및 제22조제3항·제4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717>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8974호, 2008.3.21.>(건축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7> 까지 생략

<18>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제39조제1항”을 “제49조제1항”으로, “동법 제40조·제41조·제4조 및 제44조”를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로 한다.

<19> 부터 <70>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제9195호, 2008.12.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330호, 2009.1.7.>

-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적용례) 제9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영업을 개시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부터 적용한다. 다만, 기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 중 이 법 시행 후에 영업장의 내부구조·실내장식물·안전시설 등 또는 영업주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은 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10015호, 2010.2.4.>

-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이의가 제기된 이행강제금에 대한 이의 제기 절차에 관하여는 제2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0750호, 2011.5.3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037호, 2011.8.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법률 제10750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8조제1항 단서, 제10조제2항, 제11조, 제13조제2항, 제14조, 제15조제2항, 제16조제2항제4호 및 제21조제3항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각각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8조제1항 단서 및 제13조제1항 후단 중 “방화관리자”를 각각 “소방안전관리자”로 한다.

제14조 제목 “(다중이용업소의 방화관리)”를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안전관리)”로 하고, 같은 조 중 “방화관리업무”를 “소방안전관리업무”로 한다.

제21조제3항 중 “소방검사”를 “소방특별조사”로 한다.

제25조제1항제7호 중 “방화관리업무”를 “소방안전관리업무”로 한다.

⑤부터 <25>까지 생략

부칙 <제11336호, 2012.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호의 다중이용업 중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미만인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경우에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중이용업소를 운영 중인 자에 대한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다중이용업소를 운영 중인 자로서 제1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의무 가입하여야 하는 다중이용업주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부칙 <제11690호, 2013.3.23.>(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0>까지 생략

<23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4항, 제9조제1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2항·제3항, 제13조의3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의5제2항 전단, 제13조의6제3호, 제1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5항, 제17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3항, 제21조제3항·제4항 및 제22조제3항·제4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232>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998호, 2013.8.6.>(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6항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18>부터 <71>까지 생략

부칙 <제12203호, 2014.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밀폐구조의 영업장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에 영업을 개시하기 위하여 안전시설등을 설치신고하거나 내부구조 변경신고를 하는 영업장부터 적용한다.

제3조(영업장의 내부구획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에 영업을 개시하기 위하여 안전시설등을 설치신고하는 영업장부터 적용한다.

제4조(청문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에 행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업무정지를 명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에 관한 적용례) 제25조 및 제26조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에 행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

1. 점검대상

대 상 명		전화번호	
소 재 지		주 용 도	
건물구조	대표자		소방 안전관리자

2. 점검사항

점검사항	점검결과	조치사항
① 소화기 또는 자동확산소화기의 외관점검 - 구획된 실마다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 - 약제 응고상태 및 압력계이지 지시침 확인 ②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작동기능점검 - 시험밸브 개방 시 펌프기동, 음향경보 확인 - 헤드의 누수·변형·손상·장애 등 확인 ③ 경보설비 작동기능점검 - 비상벨설비의 누름스위치, 표시등, 수신기 확인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발신기, 수신기 확인 - 가스누설경보기 정상작동여부 확인 ④ 피난설비 작동기능점검 및 외관점검 - 유도등·유도표지 등 부착상태 및 점등상태 확인 - 구획된 실마다 휴대용비상조명등 비치 여부 - 화재신호 시 피난유도선 점등상태 확인 - 피난기구(완강기, 피난사다리 등) 설치상태 확인 ⑤ 비상구 관리상태 확인 ⑥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관리상태 확인 -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상 물건 적치 등 관리상태 ⑦ 창문(고시원) 관리상태 확인 ⑧ 영상음향차단장치 작동기능점검 - 경보설비와 연동 및 수동작동 여부 점검 (화재신호 시 영상음향차단 되는 지 확인) ⑨ 누전차단기 작동 여부 확인 ⑩ 피난안내도 설치 위치 확인 ⑪ 피난안내영상물 상영 여부 확인 ⑫ 실내장식물·내부구획 재료 교체 여부 확인 - 커튼, 카페트 등 방염선처리제품 사용 여부 - 합판·목재 방염성능확보 여부 - 내부구획재료 불연재료 사용 여부 ⑬ 방염 소파·의자 사용 여부 확인 ⑭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 분기별 작성 및 1년간 보관여부		

점검일자 : 점검자 : (서명)

수용인원 산정방법(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영 별표4)

수용인원의 산정 방법

1. 숙박시설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 가. 침대가 있는 숙박시설: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종사자 수에 침대 수(2인용 침대는 2개로 산정한다)를 합한 수
- 나. 침대가 없는 숙박시설: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종사자 수에 숙박시설 바닥면적의 합계를 3㎡로 나누어 얻은 수를 합한 수

2. 제1호 외의 특정소방대상물

- 가. 강의실·교무실·상담실·실습실·휴게실 용도로 쓰이는 특정소방대상물: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1.9㎡로 나누어 얻은 수
- 나. 강당,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종교시설: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4.6㎡로 나누어 얻은 수(관람석이 있는 경우 고정식 의자를 설치한 부분은 그 부분의 의자 수로 하고, 긴 의자의 경우에는 의자의 정면너비를 0.45m로 나누어 얻은 수로 한다)
- 다. 그 밖의 특정소방대상물: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3㎡로 나누어 얻은 수

※ 비고

1. 위 표에서 바닥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복도(「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1호에 따른 준불연 재료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 바닥에서 천장까지 벽으로 구획한 것을 말한다), 계단 및 화장실의 바닥면적을 포함하지 않는다.
2. 계산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수는 반올림한다.

[별지 제6호서식]

안전시설등 설치(완공) 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3일
신고인	①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영업소	상호		전화번호	
	주소			
	② 영업의 종류		③ 영업장 면적 구획된 실의 수	
	④ 영업장이 있는 층 층 중 층		⑤ 신고구분 [] 신규 [] 변경	
	⑥ 안전시설등의 종류			
소방시설 공사업자	⑦ 상호(명칭)		등록번호	
	소재지		제 호 대표자 전화번호	
불연화 및 통로·창문	⑧ 사용재료		설치면적	
	⑨ 영업장 내부통로 cm		⑩ 창문크기 가로 cm × 세로 cm	
⑪ 위치도 (약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시설등 설치(완공)를(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소방본부장·소방서장 귀하

첨부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설계업자가 작성한 안전시설등의 설계도서(소방시설의 계통도, 실내장식물의 재료 및 설치면적, 내부구획의 재료, 비상구 및 창호도 등이 표시된 것을 말합니다) 1부. 완공신고의 경우에는 설치신고 시 제출한 설계도서와 달라진 내용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안전시설등의 설치명세서 1부. 완공신고의 경우에는 설치내용이 설치신고 시와 달라진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구획된 실의 세부용도 등이 표시된 영업장의 평면도(복도, 계단 등 해당 영업장의 부수시설이 포함된 평면도를 말합니다) 1부. 완공신고의 경우에는 설치내용이 설치신고 시와 달라진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등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에 따라 전기안전점검확인서 1부(고시원업, 전화방·화상대화방, 수면방업, 콜라택업만 해당합니다) <p>* 설치신고 시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만 첨부합니다.</p>	수수료 없음
------	--	-----------

210mm ×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지 제6호의 2서식]

안전시설등 설치명세서							
① 건축구조	식 조 층 연면적: m ²						
② 안전시설등 설치내용							
시설 구분	설비명	설치 수량	비고	시설 구분	설비명	설치 수량	비고
③ 영업장의 평면도(복도·계단 등 부수시설 포함)							

210mm×297mm[백상지 (80g/m²) 또는 중질지 (80g/m²)]

[별지 제7호서식]

제 호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안전시설등을 확인한 결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에 적합하게 설치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 소방본부장(소방서장)				직인
※ 알 림 이 증명서에 적힌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관할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업 소 명			소 재 지	
사 업 자			업 종	
규 모	구조	지상 층/지하 층	연면적	㎡
	영업장 설치층: 층	사용면적: ㎡	구획된 실(룸)의 수:	개
안 전 시 설 등 의 설 치 내 용				
시 설 구 분	설 비 명	기 준 수 량	설 치 수 량	적 합 여 부
소 화 설 비	소화기			
	자동화산소화기			
	(간이)스프링클러설비			
경 보 설 비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가스누설경보기			
피 난 설 비	피난기구			
	피난유도선			
	유도등·유도표지 또는 비상조명등			
	휴대용 비상조명등			
비 상 구	방화문			
	비상구			
영업장 내부통로와 창문	내부통로 폭	cm		
	창문크기	설치개수 개	창문크기	가로 cm× 세로 cm
그 밖의 시설	영상음향차단장치			
	누전차단기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 영상물	피난안내도			
	피난안내 영상물			
실내장식물불연화	사용재료:	설치면적:		
내부구획물불연화	사용재료:			
방 염	방염대상물품 사용 여부	물품명: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완비증명 현장 확인 체크리스트

(결과 : O, △, x)

구분	번호	점검항목	결과	비고
소 화 기	1	적응성이 있는 소화기가 배치되어 있는가?		
	2	구획된 실의 소화기배치 등이 적정한가?		
	3	누락된 곳은 없는가?(자동확산소화용구 포함)		
	4	신속히 사용하기에 적합한 장소에 비치되어 있는가?		
	5	배치거리 및 적응 단위수는 적정한가?		
간 이 스 프 링 클 러 설 비	1	확보하여야할 수원은 적절하게 반영되었는지?		
	2	간이스프링클러 소화펌프의 양정 및 유량산정은 적정한가?		
	3	배관자재의 규격, 치수, 사용압력은 적정한가?		
	4	배관의 동파방지대책이 반영되어 있는가?		
	5	수평주행배관, 교차배관, 가지배관의 분기위치는 적절한가?		
	6	템퍼 스위치가 누락된 곳은 없는가?		
	7	배관의 관경은 적정한가?		
	8	시험밸브함의 분기위치와 구성방법은 적절한가?		
	9	행가의 설치위치가 적절한가?		
	10	헤드가 누락되는 곳은 없는가?		
	11	헤드의 설치위치는 적절한가?		
	12	천정유무에 따른 상향, 하향식헤드 선정의 적정성 여부?		
	13	천정내부의 층고에 따른 상향식헤드 추가해당 여부?		
	14	헤드 하나의 방호면적은 적절한가?		
	15	헤드와 헤드사이의 거리는 적절한가?		
	16	간이헤드에서 벽이나 칸막이까지의 거리는 적절한가?		
	17	사용 장소별 특성과 그에 맞는 헤드의 표시온도는 적절한가?		
	18	간이헤드 수별 급수관의 구경은 적절한가?		
	19	상수도직결식의 경우 상수도 흡입관의 구경은 적절한가?		
	20	배관내의 통수상태는 적절한가?		
	21	헤드의 살수장애는 없는가?		
	22	송수구의 설치위치, 구성부품, 개수 등은 적절한가?		

(결과 : O, △, x)

구분	번호	점검항목	결과	비고
간이 S/P	23	간이스프링클러의 배치방법은 적절한가?		
	24	전용헤드 또는 표준형헤드 적용에 대한 용량계산은 적절 한가?		
	25	배관 및 헤드의 접속방법이 적절한가?		
	26	말단시험장치의 시험에 따른 배수가 적절한가?		
	27	헤드말단의 수압은 절절한가?		
	28	비상전원의 용량은 적절한가?		
유도 등	1	피난구유도등이 누락된 곳은 없는가?		
	2	통로유도등이 누락된 곳은 없는가?		
	3	객석유도등이 누락된 곳이 없는가?		
	4	구획된 실에 유도등(유도표지·비상조명등)이 누락된 곳이 없는가?		
	5	유도등의 비상전원은 적절한가?		
	6	유도등은 전기회로에 점멸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항상 점등 상태를 유지(2선식)하는가?		
휴대용 비상조명 등	1	구획된 실 마다 휴대용비상조명등 설치여부?		
	2	방전방지조치(건전지) 및 상시 충전(충전식 배터리)여부?		
	3	사용시 자동으로 점등이 가능한가?		
	4	구획된 실마다 잘 보이는 곳에 설치여부?		
피난 설비	1	건물의 용도와 규모에 맞는 피난기구가 설치되어 있는가?		
	2	피난기구 설치가 누락된 곳은 없는가?		
	3	부속실 또는 발코니는 적절하게 설치되어 있는가?		
	4	완강기의 경우 동일 직선상에 설치되지는 않았는가?		
	5	완강기 설치장소에 표시 및 사용설명서가 부착되었는가?		
	6	완강기 고정지지대는 로프전개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 여부?		
	7	부속실 개구부 창문의 구조는 적절한가?		
비상경보설비	1	구획된 실에 비상경보설비의 발신기Set는 누락된 곳은 없는가?		
	2	구획된 실에 비상경보설비 대신 단독경보형감지기 또는 비상방송설비 스피커가 누락된 곳은 없는가?		
	3	업소의 비상경보설비와 건물전체의 경보설비 연동여부?		
	4	비상전원 및 음향장치의 음량은 적절한가?		

(결과 : ○, △, x)

구분	번호	점검항목	결과	비고
가스 누설 경보 기	1	가스시설을 사용하는 주방 또는 난방시설이 있는 장소에 가스누설경보기 설치여부?		
	2	가스누설감지기 부착위치는 적절한가?		
비상구	1	실내에서 양방향 피난할 수 있는 비상구가 확보되었는가?		
	2	비상구를 주출입구의 반대방향에 설치하였는가?		
	3	건물구조상 불가피한 경우 영업장의 장변의 2분의1 이상 떨어진 위치에 비상구 설치여부?		
	4	피난상 유효한 개구부는 적정하게 설치하였는가?		
	5	부속실을 설치한 경우 부속실의 구조 및 크기는 적절 한가?		
	6	발코니를 설치한 경우 발코니의 구조 및 크기는 적절 한가?		
방화문	1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인 경우 비상구·출입구 방화문 설치여부?		
	2	보일러실과 영업장 사이의 출입문을 방화문으로 설치 여부?		
	3	방화셔터는 피난상 유효한 갑종방화문으로 부터 3m이내에 설치하였는가?		
	4	방화문은 개방 후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설치되었는가?		
영상 음향 차단 장치	1	화재시 자동 또는 수동으로 하나의 스위치로 전체 음향 및 영상이 정지될 수 있는 구조인가?		
	2	수동차단스위치는 관계인이 상시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 여부?		
누전 차단 기	1	부하용량에 맞는 누전차단기(과전류차단기)를 설치하였는가?		
	2	누전차단기는 정상 작동되는가?		
피난 유도 선	1	긴 통로와 복도가 있는 경우 피난유도선 등 Life line 확보여부?		
	2	피난·유도의 사각이 발생하는 곳은 없는지?		
방 염	1	목재·합판 방염후처리 대상물품은 방염처리 되었는가?		
	2	방염후처리된 물품은 방염성능검사를 신청하였는가?		
	3	방염후처리된 목재·합판에 방염성능검사 확인표시가 부착되었는가?		
	4	방염성능검사 신청내용과 현장방염처리물품은 일치한가?		
실내 장식 물	1	목재·합판을 제외한 실내 장식물은 불연재 또는 준불연재로 설치되었는가?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

[시행 2014.8.13] [소방방재청훈령 제365호, 2014.8.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의 소방안전교육 실시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방안전교육계획 수립)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8조 및 규칙 제5조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소방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교육계획은 교육횟수, 교육일정, 교육내용, 교육방법 기타 화재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할 경우에는 교육일시·장소 등 교육계획을 교육일 30일 전까지 해당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3조(교육대상자 등)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8조제1항 및 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교육대상자(이하 “교육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제9조제1항에 따라 교육통지를 하거나 별지 제1호·제3호 서식에 따라 교육신청·연기신청을 받아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삭제
2. 삭제
3. 법 제21조에 따른 안전관리우수업소로 통보 받은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의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규칙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교육대상 종업원의 수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종업원을 포함하여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1. 다중이용업주(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에 기재된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영업주”라 한다)가 미성년, 고령, 질병 또는 국외거주 등의 사유로 영업을 하기 어려운 경우 : 영업을 대신하여 영업장을 관리하는 책임자
2. 동일한 영업주가 둘 이상의 영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영업주가 동일한 건물에 있는 둘 이상의 영업장을 임대하는 사업자인 경우를 포함한다) : 영업을 대신하여 각각의 영업장을 관리하는 책임자

③ 규칙 제5조제2항에 “영업주가 직접 소방안전교육을 받기 곤란한 경우로서 국

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경우”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업주가 소방안전교육을 받기 곤란하거나 영업주로 하여금 소방안전교육을 받게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영업주를 대신하여 소방안전교육을 받게 하는 종업원은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규칙 제5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는 교육대상자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영업주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소방안전교육대상자 확인서를 요구할 수 있다.

제4조(교육 등)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관할구역 이외의 다른 지역에서 영업을 새로이 하고자 하는 영업주 및 영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종업원이 소방안전교육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규칙 제5조제8항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교육이수자의 영업소재지 소방서장에게 소방안전교육이수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 교육실시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다른 지역의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소방안전교육을 받은 영업주 및 종업원은 법 제8조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다중이용업과 관련된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직능단체 또는 민법상의 비영리법인과 협의하여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다중이용업 관련 교육과 소방안전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할 경우에는 제6조의 교육과정 등에 적합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 일시 및 연기 등) ① 규칙 제5조제4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라 교육대상자에게 통보하는 교육 일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다.

1. 신규교육

가. 안전시설등 설치·내부구조변경 신고 대상의 경우에는 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기관의 소방안전교육 실시가 예정된 날

나. 다중이용업소를 지위 승계한 경우와 그 밖의 신규 교육대상자의 경우에는 완비증명 발급신청 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교육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기관의 소방안전교육 실시가 예정된 날

2. 수시교육의 경우에는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기관의 소방안전교육 실시가 예정된 날

② 제1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라 통보된 교육 일시까지 소방안전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교육대상자가 정해진 기간(영업주의 경우 영업을 시작하기 전, 교육대상 종업원의 경우 다중이용업에 종사하기 전까지를 말한다. 이하 “교육이수기간”이라 한다) 안에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규칙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본문 단서에 따라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교육이수기간 안에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소방안전교육을 연기할 수 있다.
1. 업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머물러 있는 경우
 2. 질병이나 부상으로 입원중이거나 거동이 심히 곤란한 경우
 3. 다른 법령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이나 법원 등에의 출석, 증언, 재판을 받기 위한 경우
 4.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의 결혼, 회갑이나 사망시
 5. 다중이용업소를 지위승계한 경우
 6. 그 밖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미리 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한 경우
- ④ 교육대상자는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1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라 통보 받은 교육 일시까지 소방안전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통보 받은 교육 일시까지 별표 제3호 서식의 연기신청서를 교육 일시를 통보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 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4항의 연기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방안전교육 예정일까지 소방안전교육 기간을 연기하고 신청자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 신규 교육대상자는 교육이수기간의 종료일부터 3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기신청 사유가 종료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기관의 소방안전교육 실시가 예정된 날
 2. 수시 교육대상자는 교육이수기간의 종료일부터 3개월의 범위 내에서 해당 기관의 소방안전교육 실시가 예정된 날
- 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소방안전교육 기간을 교육이수기간의 종료일부터 3개월의 범위에서 연기할 수 없는 영업주의 경우에는 영업주의 동의를 받아 제3조제2항제1호를 준용하여 영업장 관리 책임자로 하여금 교육을 받게 하고,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종료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영업주 본인이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 ⑦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교육대상자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교육대상 종업원(영업주가 영업을 개시한 후에 교육대상 종업원으로 된 경우에 한한다)이 교육 일시를 통보 받지 않은 경우에는 소방안전교육 연기 신청을 받아 영업 개시 또는 영업에 종사한 후 3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제6조(교육과정 등)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제3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집교육, 출장교육 또는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이버교육 등 교육대상자의 여건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방안전교육의 교과과정 및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칙 제7조제1항의 교과과정
2. 화재예방 및 초기진압·인명대피 유도 요령
3. 전기·가스·위험물 등의 주요 화재요인 및 예방대책
4. 그 밖에 소방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소방안전교육 시간은 4시간의 범위 내에서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정하되 최소 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의2(사이버교육 시스템 구축과 활용) ① 규칙 제6조제3항에 따른 사이버교육을 위한 시스템에는 교육대상자 본인 여부 확인 및 학사관리 등의 기능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이버교육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방안전협회(이하 이 조에서 “협회”라 한다)와 공동으로 사이버교육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이버교육의 신청, 접수 및 학사관리 등 사이버교육의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은 협회 사이버교육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다.

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교육대상자가 제2항에 따라 구축된 사이버교육 시스템을 활용하여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을 받은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7조(교육인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규칙 제8조에 따른 교육인력 강사 4인 및 교무요원 2인 이상을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시설 등) 교육시설은 규칙 제8조에 따른 시설·장비를 갖추고, 교육대상 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좌석수와 피교육자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갖추고 운영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통지서 송부)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규칙 제5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교육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교육통지서를 교육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신청 또는 연기신청에 따른 경우에는 접수증의 교부로 교육통지서를 갈음할 수 있다.

1. 교육대상자의 성명 및 주소
 2. 교육일시 및 장소
 3. 지참물 등 구체적인 교육안내
 4. 교육예정 일시에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연기 신청의 고지
 5. 교육 불참 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 발생 고지
 6. 그 밖에 교육 참석에 필요한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통지서의 송부는 교육대상자의 여건을 고려하여 우편발송, 전화, 모사전송, 전자우편 등 적절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안전시설등완비 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규교육 이수에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행정지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4조제4항에 따라 직능단체 등에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다중이용업 관련 교육과 소방안전교육의 병행실시에 따른 지원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협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교육비 징수 등 민원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교육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교육불참자에 대한 조치)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교육대상자가 교육통보를 받고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법 제 2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8월 12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365호, 2014.8.13>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편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 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장 제정배경

제2장 총칙

제3장 예방 및 대비

제4장 재난대응 및 지원

제5장 보칙

제6장 벌 칙

제7장 부 칙



제 1 장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

현대화 사회는 대도시로의 인구집중에 따른 그 인원을 수용하기 위해 건축물이 고층화·다양화·복잡화되고, 앞으로는 이러한 건축물들이 더욱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거대하고 복잡화된 건축물 구조를 가진 초고층 건물과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그 자체 의미만으로도 그 지역 문화, 환경속에 차지하는 비중이 지대하다. 아울러, 수많은 유동인구와 상주인구로 인하여 교통, 환경, 안전 등의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에서는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대한 별도의 정의조차 없었으며, 이들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각 개별법에서 일부 관리하고 있어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등 통합적인 재난관리시스템 부재로 화재, 폭발, 테러 등 각종 재난 발생 시 대규모 재난으로의 확산이 우려되어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각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안전기준을 일원화 및 강화하고, 부처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등 궁극적으로 재난으로부터 안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함에 있다.

1. 제정배경

이법의 제정 배경은 부산 “우신골든스위트 화재(2010.10.01.)” 등의 재난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그간 초고층 건축물 등 고위험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가 부처별 개별법에 의해 이루어짐으로써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한 데에서 비롯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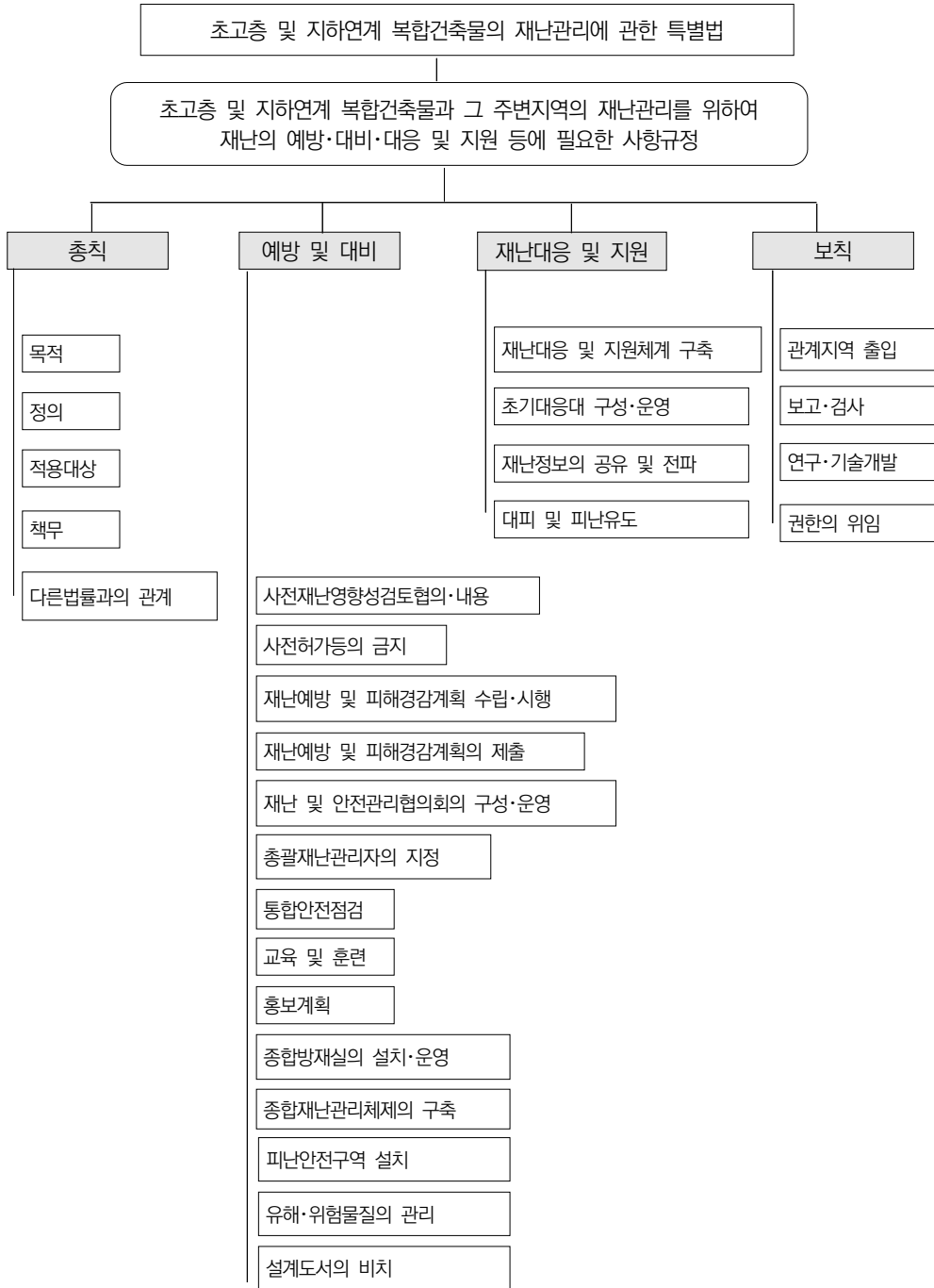
최근 빠르게 증가하는 초고층 건물과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하여 설계단계부터 재난영향성을 검토하고, 관리주체의 일상적인 재난관리 운

영계획 수립 및 시행, 이용자에 대한 재난예방교육 및 훈련과 홍보에 필요한 인적·물적자원을 구축하는 등 종합적인 재난방재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과 그주변지역에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재난 발생 시 거주자 및 이용자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재난관리체계 구축 및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법률10444호, 2011.3.8.제정(시행 2012.3.9.)되어 시행되다가 최근 법률 제13926호, 2016.1.27. 일부개정(시행 2017.1.28.)되어 그간 5차에 걸쳐 개정되었다.

2. 법의 구성

대부분의 법률과 같이 전체적으로 제명·본칙·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칙은 총칙규정, 본칙규정, 보칙규정, 별칙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법은 기존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내용을 토대로 신규 제정되었으며, 전문 5장, 본칙 28조 및 별칙 7조, 부칙 2조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의 내용은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시행, 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의 구성·운영, 총괄재난관리자의 지정, 통합안전점검, 교육훈련·홍보, 종합재난관리체계 구축 및 재난대응 지원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 2 장 | 총 칙

법령의 총칙은 법령 전체에 대한 원칙적·기본적·총괄적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구성의 일부분이다. 이법의 규정내용으로는 목적, 용어의 정의, 적용대상, 국가와 자치단체의 책무와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제1조(목적)

가 법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과 그 주변지역의 재난관리를 위하여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재난관리체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의의

목적규정은 입법목적을 간단명료하게 요약한 문장으로서, 제명과 함께 이법의 입법취지를 명확하게 하고, 법률규정의 운용·해석지침을 제시한다.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목적과 수단

가 법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재난관리를 위하여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일차적으로는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궁극적으로는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함에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고층 건축물”이란 층수가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건축법」 제84조에 따른 높이 및 층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 가. 층수가 11층 이상이거나 1일 수용인원이 5천명 이상인 건축물로서 지하부분이 지하역사 또는 지하도상가와 연결된 건축물
 - 나. 건축물 안에 「건축법」 제2조제2항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같은 항 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 같은 항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같은 항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같은 항 제16호에 따른 위락(慰樂)시설 중 유원시설업(遊園施設業)의 시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시설이 하나 이상 있는 건축물
3. “관계지역”이란 제3조에 따른 건축물 및 시설물(이하 “초고층 건축물 등”이라 한다)과 그 주변지역을 포함하여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수습 등의 활동에 필요한 지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4. “일반건축물 등”이란 관계지역 안에서 초고층 건축물등을 제외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말한다.
5. “관리주체”란 초고층 건축물등 또는 일반건축물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그 건축물등의 소유자와 관리계약 등에 따라 관리책임을 진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6. “관계인”이란 해당 초고층 건축물등 또는 일반건축물등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7. “총괄재난관리자”란 해당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8. “유해·위험물질”이란 유독물·독성가스·가연성가스·위험물 등 사람에게 유해하거나 화재 또는 폭발의 위험성이 있는 물질로서 그 종류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초고층건축물

층수가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건축법」제84조에 따른 높이 및 층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

※건축법 제84조, 건축법시행령 119조[면적등의 산정방법]

5. 건축물의 높이 : 지표면으로부터 그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건축물의 1층 전체에 필로티(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한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제2항을 적용할때 필로티의 층고를 제외한 높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가. 법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는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의 높이로 산정한다. 다만, 전면도로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산정한다.
- 1) 건축물의 대지에 접하는 전면도로의 노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이 접하는 범위의 전면도로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전면도로면으로 본다.
 - 2) 건축물의 대지의 지표면이 전면도로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 고저차의 2분의 1의 높이만큼 올라온 위치에 그 전면도로의 면이 있는 것으로 본다.
- 나. 법 제61조에 따른 건축물 높이를 산정할 때 건축물 대지의 지표면과 인접대지의 지표면 간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표면의 평균 수평면을 지표면(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높이를 산정할 때 해당 대지가 인접대지의 높이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대지의 지표면을 말한다)으로 본다. 다만,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공동주택을 다른 용도와 복합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가장 낮은 부분을 그 건축물의 지표면으로 본다.
- 다.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탑·계단탑·망루·장식탑·옥탑 등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이하인 경우로서 그 부분의 높이가 12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부분만 해당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한다.
- 라. 지붕마루장식·굴뚝·방화벽의 옥상돌출부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옥상돌출 물과 난간벽(그 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공간으로 되어 있는 것만

해당한다)은 그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 층수 : 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의 옥상부분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 이하인 것과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그 건축물의 높이 4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고 그 층수를 산정하며,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그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

2.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가. 층수가 11층 이상이거나 1일 수용인원이 5천명 이상인 건축물로서 지하부분이 지하역사 또는 지하도상가와 연결된 건축물

나. 건축물 안에 「건축법」 제2조제2항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같은 항 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 같은 항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같은 항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같은 항 제16호에 따른 위락(慰樂)시설 중 유원시설업(遊園施設業)의 시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시설이 하나 이상 있는 건축물

- 1) 유원시설업(遊園施設業) : 유기사설(遊技施設)이나 유기기구(遊技機具)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관광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유기사설이나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2) 법제2조제2호나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시설”이란?(시행령 제2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가목 중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을 말한다.

3. 관계지역

제3조에 따른 건축물 및 시설물(이하 “초고층 건축물 등”이라 한다)과 그 주변지

역을 포함하여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수습 등의 활동에 필요한 지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법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시행령 제3조)

- 1) 법 제3조에 따른 건축물 및 시설물(이하 “초고층 건축물등”)이 있는 대지(「건축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지를 말한다.)
- 2) 초고층 건축물등이 있는 대지와 접한 대지로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시·군·구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시·군·구본부장”)이 통합적 재난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지역.

다만, 해당 지역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 시·군·구는 같은 조에 따른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시·도본부장”)이, 특별시·광역시·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이 조에서 “중앙본부장”)이 지정·고시한다.

나. 위 2)에 따라 관계지역을 지정·고시하는 경우 시·군·구본부장은 시·도본부장에게, 시·도본부장은 중앙본부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4. “일반건축물등”이란 관계지역 안에서 초고층 건축물등을 제외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말한다.
5. “관리주체”란 초고층 건축물등 또는 일반건축물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그 건축물등의 소유자와 관리계약 등에 따라 관리책임을 진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6. “관계인”이란 해당 초고층 건축물등 또는 일반건축물등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7. “총괄재난관리자”란 해당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8. 유해·위험물질

가. 유독물·독성가스·가연성가스·위험물 등 사람에게 유해 하거나 화재 또는 폭발의 위험성이 있는 물질로서 그 종류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법제2조제8호에 따른 유해·위험물질의 종류 및 범위(시행령 제4조)

- 1)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사고대비물질
- 2)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위험물별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
-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적용 대상인 가연성가스 및 독성가스
- 4)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에 따른 제조 등의 허가 대상 물질
- 5)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특수가연물 중 품명별 수량 이상의 가연성 고체류, 석탄·목탄류 및 가연성액체류

제3조(적용대상)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건축물 및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고층 건축물
2.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재난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및 시설물

위 제3호의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재난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및 시설물은 시행령에서 정하지 않고 있다. 입법미비보다는 향후 사회환경에 따라 입법여지를 남겨둔 것으로 보인다.

제4조(책무)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초고층 건축물등과 관계지역 안에서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 관리주체는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초고층 건축물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과 그 관계지역에 대한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책임은 관리주체에 있다. 그러나 대규모 재난발생시 엄청난 사회파장을 불러오기 때문에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평상시 예방대책 차원의 안전관리 시책을 강구 하도록 하고 있고, 관리주체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가 법은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본조는 이 법과 다른 법률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이 법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일반법이 아닌 특별법으로 제정되어 입법상 발생할 수 있는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고 있다. 즉,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의하여 타 법령에서 규정된 내용보다 우선 적용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제 3 장 | 예방 및 대비

재난의 예방이란 발생 가능한 재난의 위험성 평가 및 분석, 위험요인의 제거, 관련법 정비, 예방관련 정책수립 등을 통해 재난발생의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하고, 대비란 재난발생시 신속하게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사전 준비활동을 말한다. 이 장에서는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사전허가 등의 금지,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시행, 피해경감계획의 제출, 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 구성·운영, 총괄재난관리자 지정, 통합안전점검 실시, 교육 및 훈련, 홍보계획 수립·시행, 종합방재실의 설치·운영, 종합재난관리체제의 구축, 피난안전구역 설치, 유해·위험물질의 관리, 설계도서의 비치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6조(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초고층 건축물등의 설치에 대한 허가·승인·인가·협의·계획수립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등을 하기 전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시·도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재난영향성 검토에 관한 사전협의(이하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라 한다)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초고층 건축물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건축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전결정을 신청하여 같은 법 제4조의 건축위원회에서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내용을 심의한 경우에는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관리 분야 전문가인 위원수가 그 심의에 참석하는 위원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 ③ 시·도본부장은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를 요청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검토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의견이 허가등 신청서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④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용도변경 또는 수용인원 증가로 인하여 초고층 건

축물등이 되거나, 초고층 건축물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변경되거나 수용인원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⑤ 시·도본부장은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요청사항의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의 대상, 시기, 방법 및 구비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가. 협의요청권자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나. 협의 시기 : 허가등을 하기 전

다. 협의 대상(시행령 제5조)

- 1) 초고층 건축물등의 설치에 대한 허가·승인·계획수립 등의 신청을 받은 경우
- 2) 「건축법」제10조제1항에 따라 초고층 건축물등의 건축에 대한 사전결정 신청을 받은 경우
- 3) 「건축법」제19조제2항에 따라 용도변경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용도변경 또는 용도변경에 따른 수용인원 증가로 초고층 건축물등이 되는 경우
 - 나) 초고층 건축물등이「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로 용도변경되어 거주밀도(별표1에 따라 산정한 거주밀도를 말함)가 증가하는 경우
- 4) 그 밖에 시·도본부장이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를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경우

다. 협의권자 :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장(시·도본부장)

라. 협의 요청시 첨부서류(시행령 제5조)

- 1) 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계획서 및 관련 서류
- 2) 「건축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건축계획서와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형태가 표시된 기본설계도서
- 3) 그 밖에 시·도본부장이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를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을 요구한 자료

마. 검토의견 통보(시행령 제5조)

시·도 본부장은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가 수정·보완할 사항을 포함한 검토 의견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바. 기간연장(시행령 제5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검토 의견을 통보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제외대상

- 가. 건축법 제10조[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제1항에 따른 사전결정을 신청하여 같은 법 제4조의 건축위원회에서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내용을 심의 한 경우

건축법

제10조(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①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그 건축물을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서 허용되는지에 대한 사전결정을 할 수 있다.

- 나. 건축위원회 구성 : 이 경우 재난관리 분야 전문가인 위원수가 그 심의에 참석하는 위원수의 1/4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 건축위원회 참가 재난관리 분야 전문가(시행령 제6조)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의 위원의 조건과 같음(시행령 제7조).

3.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시행령 제7조)

가. 위원회 구성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나. 위원장의 임명

- 1) 위원장 : 시·도에 소속되어 재난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실장·국장·본부장 중에서 시·도본부장이 임명한다.
- 2) 부위원장 :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3) 위원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도본부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단, 4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1. 초고층 건축물 등의 건축·유지, 안전관리, 방재 및 대테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건설, 기계, 전기·전자, 정보통신, 안전관리, 환경·에너지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이나 같은 분야의 박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3.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4. 재난관리, 소방 또는 대테러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다. 위원의 임기 :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라. 간사 :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시·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도본부장이 지명한다.

4. 위원회의 운영(시행령 제8조)

- 가.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라.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마. 가~라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5. 위원회의 제척 등(시행령 제9조)

- 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초고층 건축물등에 대한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를 안건으로 하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제척된다.

※ 위원회의 제척사유

1. 위원이나 위원이 소속된 기관·단체가 해당 위원회의 안건에 대한 용역·자문 또는 연구를 하였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참여한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의 배우자 또는 친족이 해당 위원회의 안건인 초고층 건축물 등의 관리주체이거나 설계자인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초고층 건축물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나. 위원회피 : 위원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위원회 회의의 참여를 회피할 수 있다.

6. 위원의 위촉 해제(시행령 제10조)

시·도본부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를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 받았거나 부정한 청탁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등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
2. 위원회의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를 하지 아니하여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를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7조(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내용)

- ①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를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방재실 설치 및 종합재난관리체제 구축 계획
 2. 내진설계 및 계층설비 설치계획
 3. 공간 구조 및 배치계획
 4. 피난안전구역 설치 및 피난시설, 피난유도계획
 5. 소방설비·방화구획, 방연·배연 및 제연계획, 발화 및 연소확대 방지계획
 6. 관계지역에 영향을 주는 재난 및 안전관리 계획
 7. 방범·보안, 테러대비 시설설치 및 관리계획
 8. 지하공간 침수방지계획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내용

가. 종합방재실 설치 및 종합재난관리체제 구축 계획

나. 내진설계 및 계층설비 설치계획

다. 공간 구조 및 배치계획

라. 피난안전구역 설치 및 피난시설, 피난유도계획

마. 소방설비·방화구획, 방연·배연 및 제연계획, 발화 및 연소확대 방지계획

바. 관계지역에 영향을 주는 재난 및 안전관리 계획

사. 방법·보안, 테러대비 시설설치 및 관리계획

아. 지하공간 침수방지계획

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법 제7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시행령 제11조)

가. 해일(지진해일을 포함) 대비·대응계획(초고층 건축물등이 해안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건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건축물 대테러 설계 계획[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등 대테러 시설 및 장비 설치계획을 포함한다]

다. 관계지역 대지 경사 및 주변 현황

라. 관계지역 전기, 통신, 가스 및 상하수도 시설 등의 매설 현황

3.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였으나, 현재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제8조(사전 허가등의 금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협의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초고층 건축물등에 대한 허가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초고층 건축물등의 설치에 대한 허가·승인·계획수립 등의 신청을 받은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6조의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는 허가등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설계단계에서 재난영향성검토를 철저히 하고,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했다.

제9조(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시행 등)

-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그 건축물등에 대한 재난을 예방하고 피해를 경감하기 위한 계획(이하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재난 유형별 대응·상호응원 및 비상전파 계획
 2. 피난시설 및 피난유도계획
 3. 재난 및 테러 등 대비 교육·훈련 계획
 4. 재난 및 안전관리 조직의 구성·운영
 5. 시설물의 유지관리계획
 6.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피난계획
 7. 전기·가스·기계·위험물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8. 건축물의 기본현황 및 이용계획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사항
- ③ 제1항에 따라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6항의 소방계획서, 「자연재해대책법」 제37조제1항의 비상대처계획을 작성 또는 수립한 것으로 본다.
- ④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시행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그 건축물등에 대한 재난을 예방하고 피해를 경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포함내용

- 가. 재난 유형별 대응·상호응원 및 비상전파 계획

나. 피난시설 및 피난유도계획

다. 재난 및 테러 등 대비 교육·훈련 계획

라. 재난 및 안전관리 조직의 구성·운영

마. 시설물의 유지관리계획

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피난계획

사. 전기·가스·기계·위험물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아. 건축물의 기본현황 및 이용계획

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사항

3. 법제9조제2항제9호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사항”?(시행령 제12조)

가. 초고층 건축물등의 층별·용도별 거주밀도 및 거주인원

나. 법 제11조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 구성·운영계획

다. 법 제16조에 따른 종합방재실 설치·운영계획

라. 법 제17조에 따른 종합재난관리체제 구축·운영계획

마. 재난예방 및 재난발생 시 안전한 대피를 위한 홍보계획

4.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수립한 경우 갈음대상

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6항의 소방계획서

나. 「자연재해대책법」 제37조제1항의 비상대처계획

5.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시행 지침시달(필요시) : 국민안전처장관

제10조(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제출 등)

-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수립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시·군·구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시·군·구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군·구본부장은 그 내용이 적합한지에 대하여 소방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제출받은 시·군·구본부장은 그 내용이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시·도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보고받은 시·도본부장은 그 결과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 ④ 시·도본부장 또는 시·군·구본부장은 관리주체가 수립한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이행 여부를 연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제출시기, 대상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제출 책임 :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

2. 제출시기(시행령 제13조)

「건축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또는 「주택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 등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체 출 처 : 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

4. 시·군·구 본부장 업무

가. 소방서장의 의견수렴 : 적합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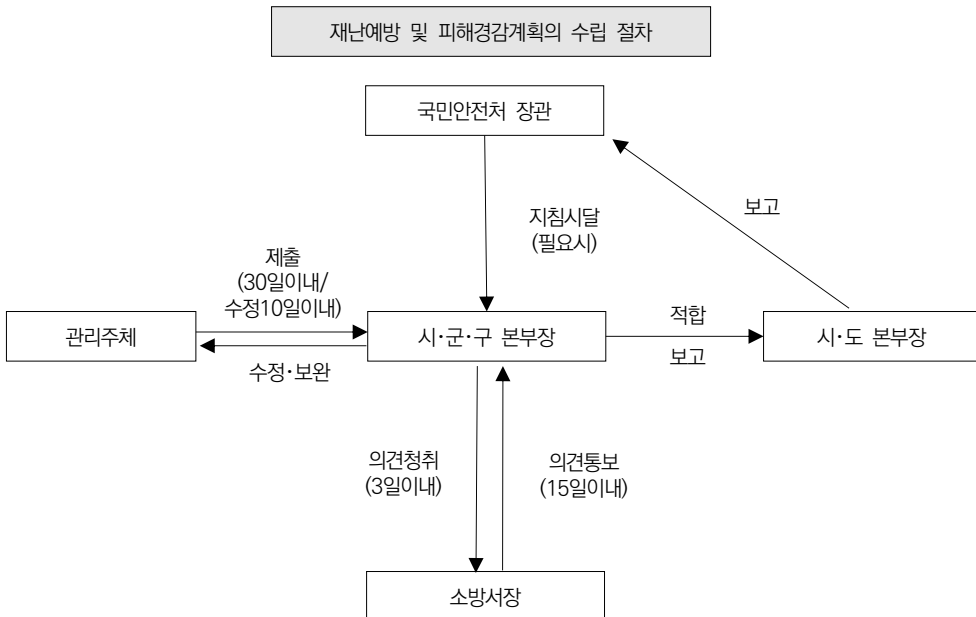
- 소방서장에게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 송부
- 소방서장은 계획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검토의견을 회신

나. 수정하거나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관리주체에게 통보

- 관리주체는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수정하거나 보완하여 시·군·구본부장에게 제출

다. 보고 : 시·도 본부장에게 보고 → 국민안전처장관에게 보고

라. 이행여부확인 : 연1회 이상(시·도본부장 또는 시·군·구본부장)



제11조(재난 및 안전관리협회의 구성·운영)

① 관계지역 안에 관리주체가 둘 이상인 경우 이들 관리주체는 재난 및 안전관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관리주체는 소속 임원중에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제16조에 따른 종합방재실(일반건축물등의 방재실 등을 포함한다) 간 정보망 구축, 경보 및 통신설비 설치에 관한 사항
2. 공동방화관리, 종합재난관리체제 구축 등 안전 및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
3. 제3항에 따른 실무협의회를 대표하는 대표총괄재난관리자의 선임·해임에 관한 사항
4.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시행 및 제출에 관한 사항
5. 재난발생 시 유관기관과 협조할 사항
6.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재난 및 테러 등 대비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 관계지역 안의 재난관리를 위하여 시·도본부장 또는 시·군·구본부장이 협의를 요청한 사항
8. 협의회 운영 및 제3항에 따른 실무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9. 제13조에 따른 통합안전점검의 실시 및 요청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협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협의회는 제2항에 따른 협의·조정 사항의 세부적인 검토를 위하여 총괄재난관리자(일반건축물등의 관리주체가 선임하는 자를 포함한다)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두어야 한다.

④ 제2항제4호에 따라 협의회에서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제출한 때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가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⑤ 초고층 건축물등과 관계지역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가 제6조, 제9조, 제14조, 제15조 및 제23조에 따른 사항을 추진하는 경우 일반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협회 구성대상

관계지역 안에 관리주체가 둘 이상인 경우 이들 관리주체는 재난 및 안전관리협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관리주체는 소속 임원중에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2. 협의회 협의·조정사항

- 가. 제16조에 따른 종합방재실(일반건축물 등의 방재실 등을 포함) 간 정보망 구축, 경보 및 통신설비 설치에 관한 사항
- 나. 공동방화관리, 종합재난관리체제 구축 등 안전 및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
- 다. 제3항에 따른 실무협의회를 대표하는 대표총괄재난관리자의 선임·해임에 관한 사항
- 라.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시행 및 제출에 관한 사항
- 마. 재난발생 시 유관기관과 협조할 사항
- 바.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재난 및 테러 등 대비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사. 관계지역 안의 재난관리를 위하여 시·도본부장 또는 시·군·구본부장이 협의를 요청한 사항
- 아. 협의회 운영 및 제3항에 따른 실무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자. 제13조에 따른 통합안전점검의 실시 및 요청에 관한 사항
- 차. 그 밖에 협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3. 실무협의회

협의회는 제2항에 따른 협의·조정 사항의 세부적인 검토를 위하여 총괄재난관리자(일반건축물등의 관리주체가 선임하는 자를 포함한다)로 구성한다.

4.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 제출 같음

제2항제4호에 따라 협의회에서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제출한 때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가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5. 일반건축물등의 관리주체의 협조의무

초고층 건축물등과 관계지역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가 제6조, 제9조, 제14조, 제15조 및 제23조에 따른 사항을 추진하는 경우 일반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총괄재난관리자의 지정 등)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관리하기 위하여 총괄재난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다만, 총괄재난안전관리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27.>

1. 재난 및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9조에 따른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제13조에 따른 통합안전점검 실시에 관한 사항
 4. 제14조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5. 제15조에 따른 홍보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6. 제16조에 따른 종합방재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7. 제17조에 따른 종합재난관리체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8. 제18조에 따른 피난안전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9. 제19조에 따른 유해·위험물질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10. 제22조에 따른 초기대응대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1. 제24조에 따른 대피 및 피난유도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한 사항
- ② 총괄재난관리자는 해당 초고층 건축물등의 시설·전기·가스·방화 등의 재

난·안전관리 업무 종사자를 지휘·감독한다.

③ 총괄재난관리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신설 2016.1.27.>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총괄재난관리자가 제3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교육을 받을 때까지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신설 2016.1.27.>

⑤ 총괄재난관리자의 자격, 교육, 등록, 업무정지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27.>

1. 총괄재난관리자의 업무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관리하기 위하여 총괄재난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나. 제9조에 따른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다. 제13조에 따른 통합안전점검 실시에 관한 사항

라. 제14조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마. 제15조에 따른 홍보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바. 제16조에 따른 종합방재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사. 제17조에 따른 종합재난관리체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아. 제18조에 따른 피난안전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자. 제19조에 따른 유해·위험물질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차. 제22조에 따른 초기대응대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카. 제24조에 따른 대피 및 피난유도에 관한 사항

타.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한 사항

2. 이 법 제12조제1항제12호의 “총리령으로 정한 사항”이란?(시행규칙 제3조)

가. 법 제3조에 따른 건축물 및 시설물(이하“초고층 건축물 등”)의 유지·관리 및 점검, 보수 등에 관한 사항

나. 방법, 보안, 테러 대비·대응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총괄재난관리자의 지휘·감독권

총괄재난관리자는 해당 초고층 건축물등의 시설·전기·가스·방화 등의 재난·안전 관리 업무 종사자를 지휘·감독한다.

4. 총괄재난관리자의 자격(시행규칙 제2조)

가.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와「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계·전기·토목 또는 안전관리 분야 기술사

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제1항에 따라특 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계·전기·토목 또는 안전관리 분야 기사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계·전기·토목 또는 안전관리 분야 산업기사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마. 「주택법」에 따른 주택관리사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5. 총괄재난관리자의 지정 및 등록(시행규칙 제3조)

가.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30일 이내에 총괄재난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① 초고층 건축물등을 건축한 경우: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 또는 「주택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 등을 받은 날
- ② 용도변경 또는 용도변경에 따른 수용인원 증가로 초고층 건축물등이 된 경우: 용도변경 사실을 건축물대장에 기록한 날
- ③ 초고층 건축물등을 양수하거나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초고층 건축물등을 인수한 경우: 양수 또는 인수한 날. 다만, 초고층 건축물등을 양수 또는 인수한 관리주체가 종전의 총괄재난관리자를 다시 지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 ④ 총괄재난관리자를 해임하였거나 총괄재난관리자가 퇴직한 경우: 해임한 날 또는 퇴직한 날

나.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총괄재난관리자를 지정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총괄재난관리자 지정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시·군·구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시·군·구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① 지정한 총괄재난관리자가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건축사인 경우 : 건축사 자격증 사본
 - ② 지정한 총괄재난관리자가 제2조제2항제2호에(특급소방안전관리자) 해당하는 경우 : 소방시설관리사증 사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수첩 또는 해당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③ 지정한 총괄재난관리자가 제2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④ 지정한 총괄재난관리자가 제2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 주택관리사 자격증 사본,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4. 총괄재난관리자의 자격 참조 : 제1호 ~ 제5호

다. 제2항에 따라 총괄재난관리자 지정 등록 신청을 받은 시·군·구본부장은「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정된 총괄재난관리자의 국가기술자격증[총괄재난관리자가 제2조제2항제1호(건축사는 제외한다),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호(소방시설관리사는 제외한다)·제2호·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및 이 규칙 제2조제2항제3호·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라. 제2항에 따라 총괄재난관리자 지정 등록 신청을 받은 시·군·구본부장은 지정된 총괄재난관리자가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총괄재난관리자 지정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마. 시·군·구본부장은 제4항에 따라 총괄재난관리자 지정 등록증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3호서식의 총괄재난관리자 지정 등록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총괄재난관리자 지정에 관한 내용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긴급구조기관(해양경찰청·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는 제외하며, 이하 제12조제2항제5호에서 “긴급구조기관”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시·도본부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 총괄재난안전관리자에 대한 교육(시행규칙 제4조, 처 고시 교육운영기준)

가. 기본교육 : 총괄재난관리자로 지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

나. 보수교육 : 그 후 2년마다 1회 이상

다. 교육내용

- ① 재난관리 일반
- ② 법 및 하위법령의 주요 내용
- ③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④ 관계인, 상시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재난 및 테러 등에 대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 ⑤ 종합방재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⑥ 종합재난관리체제의 구축에 관한 사항
- ⑦ 피난안전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⑧ 유해·위험물질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 ⑨ 그 밖에 국민안전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라. 교육기관 : 국민안전처장관이 실시하거나 국민안전처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 초고층건물등 총괄재난관리자 교육운영기준(처 고시) : 중앙소방학교

마. 교육일정 및 방법

- ① 교육기관의 장은 기본교육과정을 연 2회, 보수교육과정을 연 1회 이상 운

영 하여야 한다.

- ② 교육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0일까지 교육과정별 운영일정을 수립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교육운영 세부계획을 교육개시 60일 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교육운영 세부계획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초고층 및 지하연계복합 건축물의 관리주체 등에게 알려야 한다.
- ④ 교육기관의 장은 제3조제1항 각 호의 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별지서식의 수수료증을 발급하고, 수수료증 발급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⑤ 교육기관의 장이 제3조제1항 각 호의 교육운영을 마친 때에는 21일 이내에 국민안전처장관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⑥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과정의 3분의 1 범위 이내에서 교육과목 중 일부를 사이버교육으로 운영할 수 있다.

바. 교육일정의 변경 및 취소 :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신청자가 현저히 적어 교육운영이 어려운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의 승인을 받아 교육일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기관의 장은 총괄재난관리자가 변경된 교육과정 또는 취소 후 가장 먼저 운영되는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사. 교육과정별 시간 및 교육내용

과정구분	교육시간	교육내용
기본교육과정	21시간 이상	· 규칙 제4조제1항 각호에서 정한 사항
보수교육과정	5시간 이상	· 규칙 제4조제1항 각호의 내용과 관련된 재난관리 환경변화 및 기술개발 동향 · 재난관리와 관련하여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중앙소방학교장이 정하는 사항

7. 총괄재난안전관리자의 교육 미 이수자의 조치

가. 조치권자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나. 조치내용 : 교육을 받을 때까지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 조치사항 통보 : 업무정지사실을 시·도 또는 시·군·구의 공보에 공고하고, 중앙 소방학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통합안전점검의 실시)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안전점검을 통합안전점검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계획을 수립하여 시·도본부장 또는 시·군·구본부장에게 시행을 요청할 수 있다.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6조의2에 따른 정기검사
2.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에 따른 정기검사
3. 「전기사업법」 제65조에 따른 정기검사와 같은 법 제66조의2에 따른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4.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에 따른 정기검사
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에 따른 검사
6.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정기시설검사

② 시·도본부장 또는 시·군·구본부장은 관리주체로부터 제1항에 따라 통합안전점검 시행 요청이 있는 경우 관계 기관과 협의·조정을 거쳐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합안전점검에 응하여야 한다.

③ 통합안전점검의 범위, 실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1. 통합안전점검의 계획수립 및 시행요청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안전점검을 통합안전점검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계획을 수립하여 시·도본부장 또는 시·군·구본부장에게 시행을 요청할 수 있다.

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6조의2에 따른 정기검사

나.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에 따른 정기검사

다. 「전기사업법」 제65조에 따른 정기검사와 같은 법 제66조의2에 따른 여러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라.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에 따른 정기검사

마.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에 따른 검사

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정기시설검사

2. 통합안전점검의 요청(시행규칙 제5조)

시·도본부장 또는 시·군·구본부장은 관리주체로부터 통합안전점검 시행 요청이 있는 경우 관계 기관과 협의·조정을 거쳐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합안전점검에 응하여야 한다.

가. 통합안전점검 신청서 제출시기 : 통합안전점검을 희망하는 날 30일 전까지

나. 실시여부 통보 :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다. 통합안전점검에 응할 수 없는 경우 : 통합안전점검에 관한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은 통합안전점검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도본부장 또는 시·군·구본부장에게 그 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교육 및 훈련)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관계인, 상시근무자 및 거주자에게 재난 및 테러 등에 대한 교육·훈련(입점자의 피난유도와 이용자의 대피에 관한 훈련을 포함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가 상시 근무자나 거주

자를 대상으로 소화·피난 등의 훈련과 방화관리상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소방 훈련 또는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② 국민안전처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방법·테러 등의 교육·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③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종류, 횟수, 방법,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1. 교육·훈련의 주체 :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

2. 교육·훈련의 대상 : 관계인, 상시근무자 및 거주자

3. 교육·훈련의 내용(시행규칙 제6조)

가. 관계인 및 상시근무자에 대한 교육 및 훈련

- ① 재난 발생 상황 보고·신고 및 전파에 관한 사항
- ② 입점자, 이용자 및 거주자 등(장애인 및 노약자 포함)의 대피 유도에 관한 사항
- ③ 현장 통제와 재난의 대응 및 수습에 관한 사항
- ④ 재난 발생 시 임무, 재난 유형별 대처 및 행동 요령에 관한 사항
- ⑤ 2차 피해 방지 및 저감(低減)에 관한 사항
- ⑥ 외부기관 출동 관련 상황 인계에 관한 사항
- ⑦ 테러 예방 및 대응 활동에 관한 사항

나. 거주자 등에 대한 교육 및 훈련

- ① 피난안전구역의 위치에 관한 사항
- ②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피난안전구역을 말함)으로의 대피요령 등에 관한 사항

- ③ 피해 저감을 위한 사항
- ④ 테러 예방 및 대응 활동에 관한 사항(입점자의 경우만 해당)

4. 교육·훈련 시기 : 매년 1회 이상 (시행규칙 제6조)

5. 다음연도 교육 및 훈련계획 수립(시행규칙 제6조)

가. 주요내용 : 교육 및 훈련의 종류·내용·시기·횟수 및 참여 대상 등

나. 시·군·구본부장에게 제출 : 관리주체는 매년 12월 15일까지

다. 시·도본부장에게 보고 : 시·군·구본부장은 같은 해 12월 30일까지

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보고 : 시·도본부장은 다음 해 1월 10일까지

6. 소방서장과의 협의(시행규칙 제6조)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교육 및 훈련계획에 법 제14조제1항 후단에 따른 소화·피난 등의 훈련과 방화관리상 필요한 교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교육 및 훈련 예정일 14일 전까지 관할 소방서장과 교육 및 훈련의 내용·시기·방법 및 대상 등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7. 결과보고 및 보관 등(시행규칙 제6조)

가. 결과보고 :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교육 및 훈련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 교육·훈련 실시 결과서를 시·군·구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결과보고서 보관 : 1년

다.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 : 시·군·구본부장은 관리주체로부터 재난 및 테러 등에 대한교육·훈련 실시 결과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통보 하여야 한다.

8. 교육 및 훈련지원(시행규칙 제6조)

국민안전처장관이나 시·도본부장은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가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9. 교육준비물(시행규칙 제6조)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장비 및 교재 등을 갖추어야 한다.

10. 교육·훈련 갈음

관리주체가 상시 근무자나 거주자를 대상으로 소화·피난 등의 훈련과 방화관리상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소방훈련 또는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1. 지도·감독

국민안전처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교육·훈련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방법·테러 등의 교육·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홍보계획의 수립·시행)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그 건축물등의 상시근무자, 거주자 및 이용자에 대한 재난예방 및 피난유도를 위한 홍보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홍보계획의 수립·시행 주체** :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

2. **대상** : 상시근무자, 거주자 및 이용자

3. 내용 : 재난예방 및 피난유도를 위한 홍보계획

제16조(종합방재실의 설치·운영)

-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그 건축물등의 건축·소방·전기·가스 등 안전관리 및 방법·보안·테러 등을 포함한 통합적 재난관리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종합방재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관리주체 간 종합방재실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종합방재실은 「소방기본법」 제4조에 따른 종합상황실과 연계되어야 한다.
- ③ 관계지역 내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종합방재실(일반건축물등의 방재실 등을 포함한다) 간 재난 및 안전정보 등을 공유할 수 있는 정보망을 구축하여야 하며, 유사시 서로 긴급연락이 가능한 경보 및 통신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④ 종합방재실의 설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종합방재실이 제4항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신설 2016.1.27.>

1. 종합방재실의 설치·운영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그 건축물등의 건축·소방·전기·가스 등 안전관리 및 방법·보안·테러 등을 포함한 통합적 재난관리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종합방재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관리주체 간 종합방재실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종합상황실과 연계

종합방재실은 「소방기본법」 제4조에 따른 종합상황실과 연계되어야 한다.

제16조(종합방재실의 설치·운영)

-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그 건축물등의 건축·소방·전기·가스 등 안전관리 및 방법·보안·테러 등을 포함한 통합적 재난관리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종합방재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관리주체 간 종합방재실

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방재실은 「소방기본법」 제4조에 따른 종합상황실과 연계되어야 한다.

③ 관계지역 내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종합방재실(일반건축물등의 방재실 등을 포함한다) 간 재난 및 안전정보 등을 공유할 수 있는 정보망을 구축하여야 하며, 유사시 서로 긴급연락이 가능한 경보 및 통신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종합방재실의 설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종합방재실이 제4항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신설 2016.1.27.>

3. 재난 및 안전정보 등의 공유

관계지역 내 관리주체는 종합방재실(일반건축물등의 방재실 등을 포함) 간 재난 및 안전정보 등을 공유할 수 있는 정보망을 구축하여야 하며, 유사시 서로 긴급연락이 가능한 경보 및 통신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종합방재실의 설치기준(시행규칙 제7조)

가. 종합방재실의 개수: 1개 다만, 100층 이상인 초고층 건축물등[「건축법」제2조 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의 관리주체는 종합방재실이 그 기능을 상실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종합방재실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관계지역 내 다른 종합방재실에 보조종합재난관리체제를 구축하여 재난관리 업무가 중단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종합방재실의 위치

① 1층 또는 피난층. 다만, 초고층 건축물등에 「건축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특별피난계단(이하 “특별피난계단”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고, 특별피

난계단 출입구로부터 5미터 이내에 종합방재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2층 또는 지하 1층에 설치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내에 설치할 수 있다.

- ② 비상용 승강장, 피난 전용 승강장 및 특별피난계단으로 이동하기 쉬운 곳
- ③ 재난정보 수집 및 제공, 방재 활동의 거점(據點) 역할을 할 수 있는 곳
- ④ 소방대(消防隊)가 쉽게 도달할 수 있는 곳
- ⑤ 화재 및 침수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을 우려가 적은 곳

다. 종합방재실의 구조 및 면적

- ①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防火區劃)으로 설치할 것. 다만, 다른 제어실 등의 감시를 위하여 두께 7밀리미터 이상의 망입(網入)유리(두께 16.3밀리미터 이상의 접합유리 또는 두께 28밀리미터 이상의 복층유리를 포함한다)로 된 4제곱미터 미만의 불박이창을 설치할 수 있다.
- ② 제2항에 따른 인력의 대기 및 휴식 등을 위하여 종합방재실과 방화구획된 부속실(附屬室)을 설치할 것
- ③ 면적은 20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 ④ 재난 및 안전관리, 방법 및 보안, 테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장비의 설치와 근무 인력의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 재난 발생 시 소방대원의 지휘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할 것
- ⑤ 출입문에는 출입 제한 및 통제 장치를 갖추어 것

라. 종합방재실의 설비 등

- ① 조명설비(예비전원을 포함한다) 및 급수·배수설비
- ② 상용전원과 예비전원의 공급을 자동 또는 수동으로 전환하는 설비
- ③ 급기(給氣)·배기(排氣) 설비 및 냉방·난방 설비
- ④ 전력 공급 상황 확인 시스템
- ⑤ 공기조화·냉난방·소방·승강기 설비의 감시 및 제어시스템
- ⑥ 자료 저장 시스템

- ⑦ 지진계 및 풍향·풍속계
- ⑧ 소화 장비 보관함 및 무정전(無停電) 전원공급장치
- ⑨ 피난안전구역, 피난용 승강기 승강장 및 테러 등의 감시와 방법·보안을 위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5. 상주인원(시행규칙 제7조)

종합방재실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인력을 3명 이상 상주하도록 하여야 한다.

6. 종합방재실의 점검 및 결과보관(시행규칙 제7조)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종합방재실의 기능이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종합방재실의 시설 및 장비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관하여야 한다.

7. 종합방재실의 점검결과 보완조치

가. 조치권자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나. 대 상 자 : 관리주체

제17조(종합재난관리체제의 구축)

-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관계지역 안에서 재난의 신속한 대응 및 재난정보 공유·전파를 위한 종합재난관리체제를 종합방재실에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종합재난관리체제의 구축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재난대응체제
 - 가. 재난상황 감지 및 전파체제
 - 나. 방재의사결정 지원 및 재난 유형별 대응체제
 - 다. 피난유도 및 상호응원체제
 - 2. 재난·테러 및 안전 정보관리체제
 - 가. 취약지역 안전점검 및 순찰정보 관리

- 나. 유해·위험물질 반출·반입 관리
- 다. 소방 시설·설비 및 방화관리 정보
- 라. 방법·보안 및 테러대비 시설관리
- 3. 그 밖에 관리주체가 필요로 하는 사항

1. 종합재난관리체제의 구축 및 운영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관계지역 안에서 재난의 신속한 대응 및 재난정보 공유·전파를 위한 종합재난관리체제를 종합방재실에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2. 종합재난관리체제의 구축 시 포함해야 할 내용

가. 재난대응체제

- ① 재난상황 감지 및 전파체제
- ② 방재의사결정 지원 및 재난 유형별 대응체제
- ③ 피난유도 및 상호응원체제

나. 재난·테러 및 안전 정보관리체제

- ① 취약지역 안전점검 및 순찰정보 관리
- ② 유해·위험물질 반출·반입 관리
- ③ 소방 시설·설비 및 방화관리 정보
- ④ 방법·보안 및 테러대비 시설관리

다. 그 밖에 관리주체가 필요로 하는 사항

제18조(피난안전구역 설치)

-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그 건축물등에 재난발생 시 상시근무자, 거주자 및 이용자가 대피할 수 있는 피난안전구역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는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피난안전구역의 설치·운영 기준 및 규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피난안전구역의 설치·운영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그 건축물등에 재난발생 시 상시근무자, 거주자 및 이용자가 대피할 수 있는 피난안전구역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 피난안전구역의 유지관리

피난안전구역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는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난안전구역의 설치 형태(시행령 제14조제1항)

가. 초고층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제34조제3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할 것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

③ 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건축물의 피난·안전을 위하여 건축물 중간층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30개 층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나. 16층 이상 29층 이하인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지상층별 거주밀도가 제곱미터당 1.5명을 초과하는 층은 해당 층의 사용형태별 면적의 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을 피난안전구역으로 설치할 것

다. 초고층 건축물등의 지하층이 법 제2조제2호나목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해당 지하층에 별표 2의 피난안전구역 면적 산정기준에 따라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거나, 선린[지표 아래에 있고 외기(外氣)에 개방된 공간으로서 건축물 사용자 등의 보행·휴식 및 피난 등에 제공되는 공간을 말한다.]을 설치할 것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거주밀도

(제5조제1항제3호, 제12조제2항제1호 및 제14조제1항제2호 관련)

건축 용도	사용형태별	거주밀도 (명/㎡)	비고
1. 문화·집회 용도	가. 좌석이 있는 극장·회의장·전시장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n	1. n은 좌석 수를 말한다. 2. 극장·회의장·전시장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에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마목의 공연장을 포함한다. 3. 극장·회의장·전시장에는 로비·홀·전실(前室)을 포함한다.
	1) 고정식 좌석	1.30	
	2) 이동식 좌석	2.60	
	3) 입석식	1.80	
	나. 좌석이 없는 극장·회의장·전시장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1.80	
	다. 회의실	1.50	
	라. 무대	0.70	
	마. 게임제공업	1.00	
	바. 나이트클럽	1.70	
사. 전시장(산업전시장)	0.70		
2. 상업용도	가. 매장	0.50	연속식 점포: 벽체를 연속으로 맞대거나 복도를 공유하고 있는 점포수가 둘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나. 연속식 점포		
	1) 매장	0.50	
	2) 통로	0.25	
	다. 창고 및 배송공간	0.37	
라. 음식점(레스토랑)·바·카페	1.00		
3. 업무용도	가. 사무실이 높이 60m 초과하는 부분에 위치	1.25	
	나. 사무실이 높이 60m 이하 부분에 위치	0.25	
4. 주거 용도	가. 공동주택	R+1	R은 세대별 방의 개수를 말한다.
	나. 호텔	0.05	
5. 교육용도	가. 도서관		
	1) 서고·통로	0.10	
	2) 열람실	0.21	
	나. 학교		
	1) 교실	0.52	
2) 그 밖의 시설	0.21		
6. 운동 용도	운동시설	0.21	
7. 의료 용도	가. 입원치료구역	0.04	
	나. 수면구역(숙소 등)	0.09	
8. 보육 용도	보호시설(아동 관련 시설, 노인복지시설 등)	0.30	

※ 비고: 둘 이상의 사용형태로 사용되는 층의 거주밀도는 사용형태별 거주밀도에 해당 사용형태의 면적이 해당 층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반영하여 각각 산정한 값을 더하여 산정한다.

시행령[별표 2]

피난안전구역 면적 산정기준

(제14조제1항제3호 관련)

1. 지하층이 하나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text{피난안전구역 면적} = (\text{수용인원} \times 0.1) \times 0.28\text{m}^2$$

2. 지하층이 둘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text{피난안전구역 면적} = (\text{사용형태별 수용인원의 합} \times 0.1) \times 0.28\text{m}^2$$

비고

1. 수용인원은 사용형태별 면적과 거주밀도를 곱한 값을 말한다. 다만, 업무용도와 주거용도의 수용인원은 용도의 면적과 거주밀도를 곱한 값으로 한다.
2. 건축물의 사용형태별 거주밀도는 다음 표와 같다.

건축 용도	사용형태별	거주밀도 (명/㎡)	비고
가. 문화집회 용도	1) 좌석이 있는 극장·회의장·전시장 및 기타 이와 비슷한 것	n	1. n은 좌석 수를 말한다. 2. 극장·회의장·전시장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에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마목의 공연장을 포함한다. 3. 극장·회의장·전시장에는 로비·홀·전실을 포함한다.
	가) 고정식 좌석	1.30	
	나) 이동식 좌석	2.60	
	다) 입석식	1.80	
	2) 좌석이 없는 극장·회의장·전시장 및 기타 이와 비슷한 것	1.80	
	3) 회의실	1.50	
	4) 무대	0.70	
	5) 게임제공업	1.00	
나. 상업용도	6) 나이트클럽	1.70	연속식 점포: 벽체를 연속으로 맞대거나 복도를 공유하고 있는 점포 수가 둘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7) 전시장(산업전시장)	0.70	
	1) 매장	0.50	
	2) 연속식 점포		
다. 업무 용도	가) 매장	0.50	
	나) 통로	0.25	
라. 주거 용도	3) 창고 및 배송공간	0.37	
	4) 음식점(레스토랑)·바·카페	1.00	
마. 의료 용도	다. 업무 용도	0.25	
	라. 주거 용도	0.05	
마. 의료 용도	1) 입원치료구역	0.04	
	2) 수면구역	0.09	

5. 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시행령 제14조제2항)

가. 「건축법 시행령」제34조제5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의 규모와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하여야 한다.

나. 다음 각 호의 소방시설(「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에 따른 소방시설을 말한다)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소방시설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 ① 소화설비 중 소화기구(소화기 및 간이소화용구만 해당), 옥내소화전설비 및 스프링클러설비
- ② 경보설비 중 자동화재탐지설비
- ③ 피난설비 중 방열복, 공기호흡기(보조마스크를 포함), 인공소생기, 피난유도선(피난안전구역으로 통하는 직통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을 포함), 피난안전구역으로 피난을 유도하기 위한 유도등·유도표지,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비상조명등
- ④ 소화활동설비 중 제연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6. 선 큰의 설치기준(시행령 제14조제3항)

선큰의 정의

자동차 교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교통 소음을 방지하고, 보다 폐쇄성이 있는 외부공간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표면 아래에 정원을 조성하는 방식을 말한다

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용도(「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용도)별로 산정한 면적을 합산한 면적 이상으로 설치할 것

- ①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집회장 및 관람장은 해당 면적의 7퍼센트 이상
- ②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은 해당 면적의 7퍼센트 이상
- ③ 그 밖의 용도는 해당 면적의 3퍼센트 이상

나.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맞게 설치할 것

- ① 지상 또는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제1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으로 통하는 너비 1.8미터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하거나, 너비 1.8미터 이상 및 경사도 12.5퍼센트 이하의 경사로를 설치할 것
- ② 거실(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한다) 바닥면적 100제곱미터마다 0.6미터 이상을 거실에 접하도록 하고, 선큰과 거실을 연결하는 출입문의 너비는 거실 바닥면적 100제곱미터 마다 0.3미터로 산정한 값 이상으로 할 것

다.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맞는 설비를 갖추는 것

- ① 빗물에 의한 침수 방지를 위하여 차수판(遮水板), 집수정(集水井), 역류방지기를 설치할 것
- ② 선큰과 거실이 접하는 부분에 제연설비(드렌처(수막)설비 또는 공기조화설비와 별도로 운용하는 제연설비를 말한다)를 설치할 것. 다만, 선큰과 거실이 접하는 부분에 설치된 공기조화설비가「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설치되어 있고, 화재발생 시 제연설비 기능으로 자동 전환되는 경우에는 제연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7. 기타설비(시행규칙 제8조)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피난안전구역에 시행령 제14조(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등)제1항 내지 제3항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의 예방·대응 및 지원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설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총리령으로 정하는 설비 다음과 같다.

가. 자동제세동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

나.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수량의 방독면

- ① 초고층 건축물에 설치된 피난안전구역 : 피난안전구역 위층의 재실자 수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의2에 따라 산정된

재실자 수를 말한다)의 10분의 1 이상

- ②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설치된 피난안전구역 : 피난안전구역이 설치된 층의 수용인원(령 별표 2에 따라 산정된 수용인원을 말함)의 10분의 1 이상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의2]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산정기준

(제8조의2제3항제7호 관련)

1. 피난안전구역의 면적은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피난안전구역 윗층의 재실자 수 × 0.5) × 0.28㎡

가. 피난안전구역 윗층의 재실자 수는 해당 피난안전구역과 다음 피난안전구역 사이의 용도별 바닥면적을 사용 형태별 재실자 밀도로 나눈 값의 합계를 말한다. 다만, 문화·집회용도 중 벤치형 좌석을 사용하는 공간과 고정좌석을 사용하는 공간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피난안전구역 윗층의 재실자 수를 산정한다.

- 1) 벤치형 좌석을 사용하는 공간: 좌석길이 / 45.5cm
- 2) 고정좌석을 사용하는 공간: 휠체어 공간 수 + 고정좌석 수

나. 피난안전구역 설치 대상 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사용 형태별 재실자 밀도는 다음 표와 같다.

용도	사용 형태별		재실자 밀도
문화·집회	고정좌석을 사용하지 않는 공간		0.45
	고정좌석이 아닌 의자를 사용하는 공간		1.29
	벤치형 좌석을 사용하는 공간		-
	고정좌석을 사용하는 공간		-
	무대		1.40
	게임제공업 등의 공간		1.02
운동	운동시설		4.60
교육	도서관	서고	9.30
		열람실	4.60
	학교 및 학원	교실	1.90
보육	보호시설		3.30
의료	입원치료구역		22.3
	수면구역		11.1
교정	교정시설 및 보호관찰소 등		11.1
주거	호텔 등 숙박시설		18.6
	공동주택		18.6
업무	업무시설, 운수시설 및 관련 시설		9.30
판매	지하층 및 1층		2.80
	그 외의 층		5.60
	배송공간		27.9
저장	창고, 자동차 관련 시설		46.5
산업	공장		9.30
	제조업 시설		18.6

※ 계단실, 승강로, 복도 및 화장실은 사용 형태별 재실자 밀도의 산정에서 제외하고, 취사장·조리장의 사용 형태별 재실자 밀도는 9.30으로 본다.

제19조(유해·위험물질의 관리 등)

-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그 건축물등의 유해·위험물질 반출·반입 관리를 위한 위치정보 등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는 유해·위험물질의 방치 등으로 재난발생이 우려될 경우에는 즉시 제거하거나 반출을 명할 수 있다. 또한 유해·위험물질을 이용한 테러 등이 예상될 경우 차량 등에 대한 출입제한을 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가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였을 경우 관할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는 지하공간에 화기를 취급하는 시설이 있을 때에는 유해·위험물질의 누출을 감지하고 자동경보를 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⑤ 유해·위험물질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1.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 의무 및 권한

- 가.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 : 그 건축물등의 유해·위험물질 반출·반입 관리를 위한 위치정보 등
- 나. 유해·위험물질의 즉시제거 및 반출명령 : 방치 등으로 재난발생이 우려될 경우
- 다. 차량 등의 출입제한 : 유해·위험물질을 이용한 테러 등이 예상될 경우
- 라. 관할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 : 즉시제거 및 반출명령, 출입제한을 취하였을 경우
- 마. 유해·위험물질의 누출을 감지, 자동경보를 할 수 있는 설비 설치의무 : 관리주체는 지하공간에 화기를 취급하는 시설이 있을 때

2. 유해·위험물질의 관리(시행규칙 제9조)

- 가.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그 건축물등에 유해·위험물질이 반출·반입 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5호서식의 유해·위험물질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① 반출·반입 목적

- ② 유해·위험물질의 종류, 수량, 용도 및 구입처
- ③ 유해·위험물질 운반자 및 관리책임자
- ④ 유해·위험물질 운반차량 종류

나.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유해·위험물질의 반출·반입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다.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유해·위험물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유해·위험물질 운반 차량을 위한 별도의 진입로 및 출입로를 설치하거나 진입 및 출입 시간을 통제하여야 한다.

제20조(설계도서의 비치 등)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제16조에 따른 종합방재실에 재난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를 비치하여야 하며, 관계 기관이 열람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1. 설계도서의 비치 및 관계기관과의 협조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종합방재실에 재난예방 및 대응을 위해서 설계도서를 비치하여야 하며, 관계 기관이 열람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비치 도서 : 법 제20조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 란 다음과 같다.

가. 「건축법 시행규칙」별표 2의 설계도서[건축계획서 및 시방서는 제외한다]

「건축법 시행규칙」별표 2의 설계도서

건축허가신청에 필요한 설계도서

(건축법시행규칙[별표 2])

도서의 종류	도서의축척	표시하여야 할 사항
건축계획서	임의	1. 개요(위치·대지면적 등) 2. 지역·지구 및 도시계획사항 3. 건축물의 규모(건축면적·연면적·높이·층수 등) 4. 건축물의 용도별 면적 5. 주차장규모

도서의 종류	도서의축척	표시하여야 할 사항
		6. 에너지절약계획서(해당건축물에 한한다) 7. 노인 및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계획서(관계법령에 의하여 설치의무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배치도	임의	1. 축척 및 방위 2. 대지에 접한 도로의 길이 및 너비 3. 대지의 종·횡단면도 4. 건축선 및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의 거리 5. 주차동선 및 옥외주차계획 6. 공개공지 및 조경계획
평면도	임의	1. 1층 및 기준층 평면도 2. 기둥·벽·창문 등의 위치 3. 방화구획 및 방화문의 위치 4. 복도 및 계단의 위치 5. 승강기의 위치
입면도	임 의	1. 2면 이상의 입면계획 2. 외부마감재료 3. 간판 및 건물번호판의 설치계획(크기·위치)
단면도	임의	1. 종·횡단면도 2. 건축물의 높이, 각층의 높이 및 반자높이
구조도 (구조안전 확인 또는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	임의	1.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의 평면 및 단면 2. 주요부분의 상세도면 3. 구조안전확인서
구조계산서 (구조안전 확인 또는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	임의	1.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의 응력 및 단면 산정 과정 2. 내진설계의 내용(지진에 대한 안전 여부 확인 대상 건축물)
시방서	임의	1. 시방내용(국도교통부장관이 작성한 표준시방서에 없는 공법인 경우에 한한다) 2. 흙막이공법 및 도면
실내마감도	임의	벽 및 반자의 마감의 종류
소방설비도	임의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관서의 장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건축물의 해당소방 관련 설비
건축설비도	임의	냉·난방설비, 위생설비, 환경설비, 전기설비, 통신설비, 승강설비 등 건축설비
토지굴착 및 옹벽도	임의	1. 지하매설구조물 현황 2. 흙막이 구조(지하 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3. 단면상세 4. 옹벽구조

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설계도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건축허가등의 동의 요구) ②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은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요구하는 때에는 동의요구서
(전자문서로 된 요구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하
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2. 다음 각 목의 설계도서. 다만, 가목 및 다목의 설계도서는「소방시설공사업
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착공신고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

가. 건축물의 단면도 및 주단면 상세도(내장재료를 명시한 것에 한한다)

나. 소방시설(기계·전기분야의 시설)의 층별 평면도 및 층별 계통도(시설별
계산서를 포함한다)

다. 창호도

제 4 장 | 재난대응 및 지원

재난의 대응 및 지원이란 재난이 발생 또는 발생 임박시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를 위한 일련의 활동과 대응에 필요한 인적·물적자원의 지원활동을 말한다. 이 장에서는 재난대응 및 지원체계의 구축, 초기대응대 구성·운영, 재난정보의 공유 및 전파, 대피 및 피난유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21조(재난대응 및 지원체계의 구축)

- ① 시·도본부장과 시·군·구본부장은 초고층 건축물등(일반건축물등을 포함한다)에서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예방·대비·대응·지원 및 긴급구조·화재진압·구호 등 지원체계(이하 “재난대응 및 지원체계”라 한다)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② 재난대응 및 지원체계의 구축·운영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1. 재난대응 및 지원체계의 구축·운영

시·도본부장과 시·군·구본부장은 초고층 건축물등(일반건축물등을 포함)에서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예방·대비·대응·지원 및 긴급구조·화재진압·구호 등 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2. 재난대응 및 지원체계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시행규칙 제11조)

가.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대책

나. 초고층 건축물등의 총괄재난관리자·종합방재실, 소방관서, 유관기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초기대응대 등과의 비상연락망체계

- 다. 피난안전구역의 위치 및 비치 장비 목록 등 현황
- 라. 초고층 건축물등의 건축물대장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각 호의 설계도서
- 마. 초고층 건축물등의 층별 용도, 거주인원 및 위험요인
- 바. 초기대응대의 구성·운영 현황
- 사. 긴급구조·화재진압 등을 위한 소방관서와의 직통전화 구축
- 아. 그 밖에 시·도본부장 및 시·군·구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지도점검 및 유지관리(시행규칙 제11조)

- 가. 시·도본부장 또는 시·군·구본부장은 반기별 1회 이상 제1항 각 호의 현황을 점검하고, 그 변동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 나. 국민안전처장관은 매년 1회 이상 재난대응 및 지원체계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 및 관련 기관 등을 지도하여야 한다.

제22조(초기대응대 구성·운영)

-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하여 초기대응대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 ② 초기대응대의 구성·운영, 교육·훈련 및 장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1. 초기대응대의 구성·운영

- 가.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하여 초기대응대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나. 초기대응대 구성(시행규칙 제12조)

- ① 초고층 건축물등에 상주하는 5명 이상의 관계인으로 구성
- ② 다만, 공동주택은 3명 이상의 관계인으로 구성

2. 초기대응대의 역할(시행규칙 제12조)

가. 재난 발생 장소 등 현황 파악, 신고 및 관계지역에 대한 전파

나. 거주자 및 입점자 등의 대피 및 피난 유도

다. 재난 초기 대응

라. 구조 및 응급조치

마. 긴급구조기관에 대한 재난정보 제공

바. 그 밖에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교육 및 훈련(시행규칙 제12조)

총괄재난관리자는 초기대응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교육 및 훈련을 매년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기대응대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은 제6 조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과 함께 할 수 있다.

가. 재난 발생 장소 확인 방법

나. 재난의 신고 및 관계지역 전파 등의 방법

다. 초기 대응 및 신체 방호 방법

- 라. 총별 거주자 및 입점자 등의 피난 유도 방법
- 마. 응급구호 방법
- 바. 소방 및 피난 시설 작동 방법
- 사. 불을 사용하는 설비 및 기구 등의 열원(熱源) 차단 방법
- 아. 위험물품 응급조치 방법
- 자. 소방대 도착 시 현장 유도 및 정보 제공 등
- 차. 안전 방호 방법
- 카. 그 밖에 재난 초기 대응에 필요한 사항

4. 필요장비 구축(시행규칙 제12조)

초기대응대는 거주자 등의 피난 유도, 구조 및 응급조치, 불을 사용하는 설비 및 기구 등의 열원 차단 등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23조(재난정보의 공유 및 전파)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그 건축물등의 재난에 관한 정보를 관계지역 안의 상시근무자, 거주자 및 이용자에게 신속하게 전파 및 공유하여야 한다.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에 관한 정보를 관계지역 안의 상시근무자, 거주자 및 이용자에게 신속하게 전파 및 공유의무를 관리주체에게 주고 있으며, 재난시 신속한

대응 및 피난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24조(대피 및 피난유도)

- ① 대표총괄재난관리자 및 총괄재난관리자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0조에 따른 대피명령 이전에 현장상황이 긴급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상시근무자, 거주자 및 이용자에 대한 대피조치를 할 수 있고, 입점자 및 안전요원으로 하여금 피난종료시까지 피난유도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대피조치 및 피난유도를 받은 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③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그 건축물등의 상시근무자, 거주자 및 이용자가 신속한 위치정보를 파악하여 대피할 수 있도록 위치정보알림판, 피난유도 안내시설 및 영상물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1. 대피 및 피난유도 의무

대표총괄재난관리자 및 총괄재난관리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대피명령 이전에 현장상황이 긴급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상시근무자, 거주자 및 이용자에 대한 대피조치를 할 수 있고, 입점자 및 안전요원으로 하여금 피난종료 시까지 피난유도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제40조(강제대피조치) ① 시장·군수·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지역 주민이나 그 지역 안에 있는 사람에게 대피하거나 선박·자동차 등을 대피시킬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대피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2.2.22.>
- ② 제1항에 따른 대피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명령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2.2.22.>

2. 복종의 의무

제1항의 대피조치 및 피난유도를 받은 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안내시설 등의 제공의 의무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그 건축물등의 상시근무자, 거주자 및 이용자가 신속한 위치정보를 파악하여 대피할 수 있도록 위치정보알림판, 피난유도 안내시설 및 영상물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 5 장 | 보 칙

보칙규정은 일반적으로 실제적 규정을 실현하는데 부수적인 절차적 사항이나 보충적인 사항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이 장에서 관계지역의 출입, 보고·검사,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에 대한 연구·기술개발, 권한의 위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25조(관계지역의 출입 등)

- ① 국민안전처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관리 및 안전점검 등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초고층 건축물등(일반건축물등을 포함한다)에 출입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7일 전까지 이를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재난발생 우려가 뚜렷하여 긴급하다고 판단되거나 안전점검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에 따른 출입·점검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출입·점검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출입·점검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통지의 의무

국민안전처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관리 및 안전점검 등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초고층 건축물등(일반건축물등을 포함)에 출입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7일 전까지 이를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예외) 재난발생 우려가 뚜렷하여 긴급하다고 판단되거나 안전점검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권한증표 제시의 의무

제1항에 따른 출입·점검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

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3. 비밀누설금지의 의무

제1항에 따라 출입·점검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출입·점검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보고·검사 등)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초고층 건축물등(일반건축물등을 포함한다)의 관계인, 시공사 및 시행자 등에 대하여 해당 시설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제출 자료에 대한 검토 결과 현장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지역에 출입하여 현장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관계지역의 출입 시에는 제25조를 준용한다.

1. 자료제출 및 보고의 의무

시장·군수·구청장은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초고층 건축물등(일반건축물등을 포함)의 관계인, 시공사 및 시행자 등에 대하여 해당 시설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

2. 출입 및 현장조사 권한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제출 자료에 대한 검토 결과 현장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지역에 출입하여 현장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3. 법규준용

제2항에 따른 관계지역의 출입 시에는 제25조(관계지역출입 등)를 준용한다.

제27조(재난예방 및 피해경감에 대한 연구·기술개발)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을 위한 조사, 연구 및 기술개발을 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예방대책을 연구하고 피해를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에게 재난 및 안전관리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조사, 연구 및 개발의 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을 위한 조사, 연구 및 기술개발을 하여야 한다.

2. 자료제공요청 권한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예방대책을 연구하고 피해를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에게 재난 및 안전관리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8조(권한의 위임)

- ① 시·도본부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본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시·도본부장 또는 시·군·구본부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시·도본부장 → 시·군·구본부장에게 권한위임(시행령 제15조)

→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통합안전점검에 관한 업무

2. 시·도본부장 또는 시·군·구본부장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위임

→ 동법 시행령에 제15조(권한위임)에서 위임사항이 없음

제 6 장 | 벌 칙

벌칙이란 법률상의 의무위반자에게 일정한 행정형벌 또는 행정질서벌을 과하게 됨을 알려줌으로써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여 법률상의 의무위반을 예방하고, 위반자에 대한 형벌 및 질서벌의 부과 근거가 된다. 즉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의무위반자에 대한 처벌근거가 된다. 이 법은 제29조부터 32조까지 행정형벌의 벌칙 중 징역과 벌금에 대하여 규정하고, 제33조부터 34조까지는 행정질서벌인 과태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35조에서는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1. 벌칙

제29조(벌칙)

제18조를 위반하여 피난안전구역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자 또는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조(벌칙)

제20조를 위반하여 설계도서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5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점검업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26조를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업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3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7.20.>

1.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총괄재난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2.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출입·점검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2. 과태료

제33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를 구성 또는 운영하지 아니한 자
3.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초기대응대를 구성 또는 운영하지 아니한 자

제34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6.1.27.>

1. 삭제 <2015.7.20.>
1의2. 제12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단서를 위반하여 겸직을 한 자
2.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 또는 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 2의2. 제16조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자

3. 과태료 부과·징수권자

제35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시행령[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6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 나. 과태료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처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해당 초고층 건축물등을 법 또는 이 영에 따라 모범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재난으로 인하여 심각한 재산상 손실을 입었거나 사업 여건이 악화되어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 4)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5) 위반행위자가 같은 위반행위로 다른 법령에 따라 과태료·벌금 및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 6)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였거나 해소한 경우
 - 7)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가. 법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1) 제출 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2) 제출 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3) 제출 지연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법 제33조제1호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나. 법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를 구성 또는 운영하지 않은 경우	법 제33조제2호		500만원	
다.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총괄재난관리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법 제34조제1호		300만원	
라. 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 또는 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34조제2호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 거주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 또는 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2) 상시근무자를 대상으로 교육 또는 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		
3) 1)과 2)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300만원		
마. 법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34조제3호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바. 법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초기대응대를 구성 또는 운영하지 않은 경우	법 제33조제3호	500만원		

제 7 장 부 칙 <제13926호, 2016.1.27.>

부칙이란 법률 또는 규칙을 보충하기 위해 맨 끝에 덧붙이는 규정이나 규칙 내용이다. 여기에 규정할 사항으로는 일반적으로 본칙 규정에 부수되거나 보충적,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게 된다. 부칙에 규정할 주요사항을 들면 법령의 시행기일에 관한 규정, 기존법령의 폐지에 관한 규정, 그 법령의 시행에 따르는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 다른 법령의 개정에 관한 규정,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기타 용어의 정리,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에 관한 규정이며 배열도 위의 열거한 순서에 의한다

이 법은 법률의 시행일과 업무정지에 관한 적용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2개의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률의 시행일이란 적법한 입법과정을 거쳐 제·개정된 법률의 효력이 규율하는 대상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시기를 말한다. 즉 법률의 효력발생시기를 말한다. 법률의 시행은 그 시행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가 중요하며, 통상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두어야 한다. 이법은 2016년 1월 27일 일부개정 되어 1년의 시간적 여유를 두어 하위법령의 정비 및 국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2조(업무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위반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은 법률을 제·개정할 때 종전의 상태에서 계속 존속시키거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구법의 효력을 신법에서 존속시키거나 구법의 상태를 신법에서 용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한다. 이법은 업무정지에 관한 적용례에 대하여 경과조치를 두고 있다.

참여한 사람들

집필위원

강원소방학교 소방위 김관해
소방경 이상기
부산소방학교 소방위 김상진

검토위원

서울소방학교 소방경 권기백
소방경 김창섭
인천소방안전학교 소방위 김철

심의위원

최재용 허명도
권혁 이중희
김원형 김성집
안우석 손대규

소방법령 III

발행일 : 2016년 12월

| 감 수 : 소방교육훈련발전위원회

| 발 행 : 중앙소방학교

| 인쇄처 : 알래스카인디고(주)

| 전 화 : 02)2277-5553

※이 책의 내용은 저자와 협의 없이 無斷再製 또는 轉載를 금합니다.

